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21호
2017. 8. 3.(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7-1725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
제2017-1735호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 5
제2017-177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제2017-1771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

◈ 고 시

제2017-278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 8
제2017-279호 관악구 난곡동(굴참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9
제2017-280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1
제2017-281호 신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7
제2017-282호 양천구 신월5동(해오름마을)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43
제2017-283호 동작구 상도동(성대골)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58
제2017-284호 도봉구 방학2동(숲 속 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 66
제2017-285호 진관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75
제2017-28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89
제2017-287호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미한변경) ····· 90
제2017-288호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96
제2017-289호 종로구 교남동·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08
제2017-290호 도시계획시설(광장,주차장,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30
제2017-291호 무교·다동구역 제2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34
제2017-293호 도시관리계획[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38

◈ 공 고

제2017-1705호 측량업 등록 공고 ····· 146
제2017-1707호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지원 계획 공고 ····· 146

제2017-1708호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 이자지원 계획 공고 ····· 150
제2017-1710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공고 ····· 153
제2017-1711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 153
제2017-1723호 측량업 등록 공고 ····· 153
제2017-1724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공고 ····· 154
제2017-1731호 2017년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154
제2017-174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 166
제2017-1741호 공인 폐기 공고 ····· 166
제2017-1743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167
제2017-1746호 2017년 제1차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 공고 ····· 168
제2017-1752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172
제2017-1755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173
제2017-1759호 강서구 염창동 274-17 역세권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174
제2017-1773호 서초구 양재동 1365-8번지 일원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 179

◈ 구 고 시

제2017-78호 도시관리계획(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광진구) ····· 183
제2017-107호 도시관리계획(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성북구) ····· 184
제2017-108호 도시관리계획(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성북구) ····· 186
제2017-10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북구) ····· 188
제2017-92호 도시계획시설[둘리(쌍문)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도봉구) ····· 191
제2017-81호 수락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노원구) ····· 193
제2017-81호 도시관리계획(불광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은평구) ····· 194
제2017-116호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서대문구) ····· 196
제2017-117호 도시계획시설(경의제2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서대문구) ····· 197
제2017-58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강서구) ····· 203
제2017-69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서구) ····· 204
제2017-7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강서구) ····· 205
제2017-72호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서구) ····· 206

제2017-55호 도시관리계획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관악구) ····· 207
제2017-56호 도시관리계획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관악구) ····· 210
제2017-57호 도시관리계획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관악구) ····· 212
제2017-58호 도시관리계획 [서울대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관악구) ····· 214

◈ 구 공 고

제2017-558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중구) ····· 216
제2017-670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성동구) ····· 218
제2017-973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성북구) ····· 219
제2017-66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노원구) ·· 219
제2017-97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안) 재열람 공고 (은평구) ····· 224
제2017-93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조성)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양천구) ····· 225

◈ 사업소고시

제2017-16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228
제2017-16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228
제2017-16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229
제2017-16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229
제2017-17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230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725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행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기점검일 기준 2일 이내의 기간으로는 계량기 정기점검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정기점검일에 점검할 수 없는 때에는 정기점검일 전후로 5일 이내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정기점검 허용기간을 정기점검일 전후 2일 이내에서 정기점검일 전후 5일 이내로 확대하여 개정함(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장,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3146-1183, Fax : 3146-1209
   - E-mail : cjy3777@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735호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시민의 일상에서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디자인을 통해 사회문제를 사전예방 할 수 있는 사업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안 제3조~제6조)
- 시민의 요구 파악, 시민과의 협력, 디자인을 통한 해결방안 제시를 핵심으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을 정의
- 인구변화에 대응, 위험예방, 생활환경 개선, 정서적 안정감 증진, 서비스 향상 등 7가지를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적용범위로 규정
- 시장의 책무로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

나. 기본계획 수립,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목표 및 추진방향, 단계별·부문별 추진계획, 주요시책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 시민, 자치구 등 다양한 주체가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사업 완료 후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체계 구축

다. 시민참여,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사업 추진 과정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참여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술기관,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규정을 둠
- 교육·홍보를 통해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의 필요성 및 우수사례 확산 노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디자인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우편번호 045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디자인정책과(전화 : 02-2133-2722, FAX : 02-2133-1065, E-mail: nayoung8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77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실국 소관업무 조정 및 현장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소 신설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수행 책임성 강화를 위한 소관업무 조정
- 식품정책과 먹거리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업무 명시
- 기후환경본부 부서 직제순 변경·업무이관 반영을 위한 업무 조정
나. 사업소 신설 및 변동사항 현행화
- 기록물보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위한 서울기록원 신설
- 문화비축기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소 신설
- 성동소방서·서울식물원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소재지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2133-6732, FAX : 2133-0822, E-mail : jspark3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771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장 역량 강화를 통해 시정 주요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시 총 정원을 17,603명에서 17,771명으로 168명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안사업 추진 및 주요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인력 증원
   -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시책에 따른 현업인력 보강(+106명)
   - 현안 시책사업의 시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인력 보강(+62명)

   나. 행정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직급별 기준비율 조정
   -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전문성 및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일반직 직급별 정원기준 변경
     ※ 4급이상 [3% → 3.5% 이내] / 5급[13% → 14% 이내]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2133-6732, FAX : 2133-0822, E-mail : jspark3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8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단위 : 천원)

연 번	회 계 별	예 산 액
계		31,869,840,809
1	일 반 회 계	22,518,827,027
2	기타특별회계	8,561,013,782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593,580,862
	(2) 교통사업특별회계	1,241,368,667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8,376,613
	(4) 주택사업특별회계	1,671,654,501
	(5) 도시개발특별회계	1,268,172,543
	(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91,003,670
	(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67,662,123
	(8)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8,594,003
	(9) 소방안전특별회계	760,600,800
3	공기업특별회계	790,000,000
	(10) 수도사업특별회계	790,000,0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9호

관악구 난곡동(굴참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관악구 신림동 71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주민참여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위한 주거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관악구 신림동 710번지 일대	-	증) 51,398.1	51,398.1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1,398.1	-	51,398.1	100.0	
주택용지 (개별건축)			39,542.8	-	39,542.8	76.9	
기타			2,774.0	-	2,774.0	5.4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9,081.3	-	9,081.3	17.7	
	도 로	소 계	8,886.3	-	8,886.3	17.3	
		도시계획도로	5,424,7	-	5,424,7	10.6	
		현황도로	3,461.5	-	3,461.5	6.7	
사회복지시설			195.0	-	195.0	0.4	

2)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1,398.1	-	51,398.1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50,441.0	-	50,441.0	98.1	
제2종일반주거지역	768.6	-	768.6	1.5	도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188.5		188.5	0.4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해당사항 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9	8	-	395	신림동 706-2	신림동 산111-1	일반도로	-	서고207호 (1973.12.24.)	난곡로35길
기정	소로	3	-	6	-	270	난곡 진입로	신림동 713-23	일반도로	-	서고613호 (1983.11.18.)	난곡로31길
기정	소로	3	-	6	-	35	신림동 산112-5	신림동 산112-11	일반도로	-	서고301호 (1991.10.23.)	난곡로35길

나)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사회복지시설 (난곡경로당)	신림동712-7외1 필지	195	-	195	관고2008-10호 (2008.03.10.)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층수	시행방법	비 고
			부지면적	연면적			
신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관악구 신림동 710-1	126	192.45	지하1층~2층	부지매입	부지매입 계약 완료
		관악구 신림동 701-11	132	164.07	지하1층~2층		

※ 현재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임시 사랑방으로 활용 중임
※ 설치계획(규모, 시행방법 등)은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결정 예정

5)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대상건축물	정비·개량계획	지원계획	비 고
신설	262동	존치 (신축, 개보수 등)	주택개량·신축비용 융자지원 (서울특별시 주택 개량 융자지원제도 적용)	-

※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제도 (서울시 관련부서의 지원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나) 건축물의 주용도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대지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51,398.1	가구1	42,316.8	난곡동 710번지 일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관계법령에 따름			-

6)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도시경관	- 골목길 환경개선, 담장정비, 휴게공간 조성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마을 경관 향상을 위한 정비사업 시행
환경보존	- 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권장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 조성
재난방지	- 가급적 자연토양을 유지하고, 포장 정비 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 유출량 최대한 억제

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관악구청장	해당사항 없음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및 신축하는 방법	계획수립 이후	토지등소유자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교육환경 현황	- 반경500m 이내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입지 - 사업대상지의 대부분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동법 제9조에 의거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

9)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 환경	1. 생태면적률	일반주택 20% 이상 공동주택 30% 이상	○	- 운영시 생태면적률 기준에 따름	- 조경녹지 및 투수면적 최대 확보	-
	2.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지표1	○	- 시가화지역이며, 특별한 식물상은 없음	-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녹지 확보	-
	3.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 미만	○	- 절·성토 비율 미비	- 지형을 고려한 건축계획으로 절·성토량 최소화	-
		지형변동비율 30% 미만	○	- 일부 지역의 단차가 심해 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필요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지하수위보전	○	- 저층주거지이므로 지하수위 영향 미비	- 지하공간 최소화	-
	4. 비오톱	3등급	○	- 비오톱유형 평가등급 4등급 - 특별한 식생 분포 없음	- 화단 등의 추가 조성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생활 환경	5.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 사업대상지는 대부분 4층 이하의 단독 및 다세대 밀집 주거지역	- 건축물 신축시 관련규정 준수	-
	6.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 사업대상지는 대부분 4층 이하의 단독 및 다세대 밀집 주거지역으로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 미비	- 기존 건축물 개발 규모 유지	-
	7. 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수립	○	-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민 관심 높음	-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연계 및 홍보	-
		신재생에너지사용	○	- 일부 주택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	- 에너지절약계획 수립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권장으로 연료 사용량 최소화	-
	8. 경관	Skyline 보전	○	- 저층주거지로 낮은 스카이라인 형성	- 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시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물 스카이라인 계획	-
		조망권 확보	○	- 고층건물 미입지	- 주변지역과의 연속적 경관에 위배되지 않는 경관계획 수립	-
		가로녹시율 35%	○	- 현재 내부도로가 협소하여 가로녹화는 열악한 실정	- 화단조성 및 조경공간의 가로변 조성유도 등을 통해 가로녹시율 향상	-
	9.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사업대상지내 주민을 위한 휴식, 여가공간 부족	- 공원 및 쌈지공간 개선 등을 통한 휴식공간 조성	-
	10.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 보차분리된 곳이 있으나 전신주가 보도를 차지해 통행 불편	- 보차혼용도로 및 보도를 확폭하여 보행공간 확보	-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X	- 사업대상지내 도로가 협소하여 자전거 도로 확보 불가	-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X	- 사업대상지 내 자전거 보관소 전무	-	-
추가	11. 소음진동	소음환경기준이하	○	- 향후 공사 중 인근지역에 공사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발생 예상	- 공사시 저감대책 수립	-
	12. 폐기물	건설폐기물재활용	○	- 건설폐기물, 폐유 발생 예상	- 건설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 및 위탁처리하며, 서울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

10)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연번	수종	나무둘레(cm)	본수	활용계획	비 고
1	굴참나무	2.86m	1	·굴참나무 주변 진입로 개선 및 안내표지 설치	천연기념물 제271호 대상지 외 건영아파트 내 위치

11)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자연감시	•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신주 및 노후 보안등 정비 및 교체계획 수립 • 담장은 주변감시와 골목길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낮은 높이의 담장을 권장함	–
접근통제	• 창문에는 파손이나 훼손이 어려운 재질의 방범창 설치 • 측벽에 노출된 가스배관은 침입도구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방범시설 설치	–
영역성 강화	• 우범지역 및 저활용 공지 등에 지역주민을 위한 쌈지공간을 조성하여 영역성 강화 및 활용성 증대 • 가로시설물은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여 계획	–
활동의 활성화	• 우범지대 및 통행이 적은 골목길에 화단을 조성하여 활성화 유도	–
유지관리	• 도로, 쌈지공간, 화단 등 정비되는 기반시설 등의 유지 관리는 주민협의체(주민공동체 운영회)에서 주도적으로 관리	–
방범용 CCTV와 비상벨 설치	• 방범용 CCTV는 주택가에서 범죄취약공간을 중심으로 감시의 효율성(감시범위, 주변 인지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 방범용 CCTV는 위치번호를 표시하여 위험시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제공	–
커뮤니티시설 조성	•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서 방범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	–

12)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주민공동체 운영회 구성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 관련법령에 의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 (예정)	–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답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계획 수립 (서울시 : 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등) ·주택의 보전·정비·개량계획 중 협정사항의 내용 및 범위 내에서 민간건축물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주민협정으로 정하여 운영	–

2. 관련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도면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관련된 자세한 세부내용은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과) 및 관악구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1)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담당자 박준성 / ☎ 02-2133-7256)
   2) 관악구 도시계획과(담당자 신용빈 / ☎ 02-879-6373)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 정비구역 결정도

관악구 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결정(안)도
범 례
주거환경관리구역
Scale = NONE
0 20 50 100m
N

■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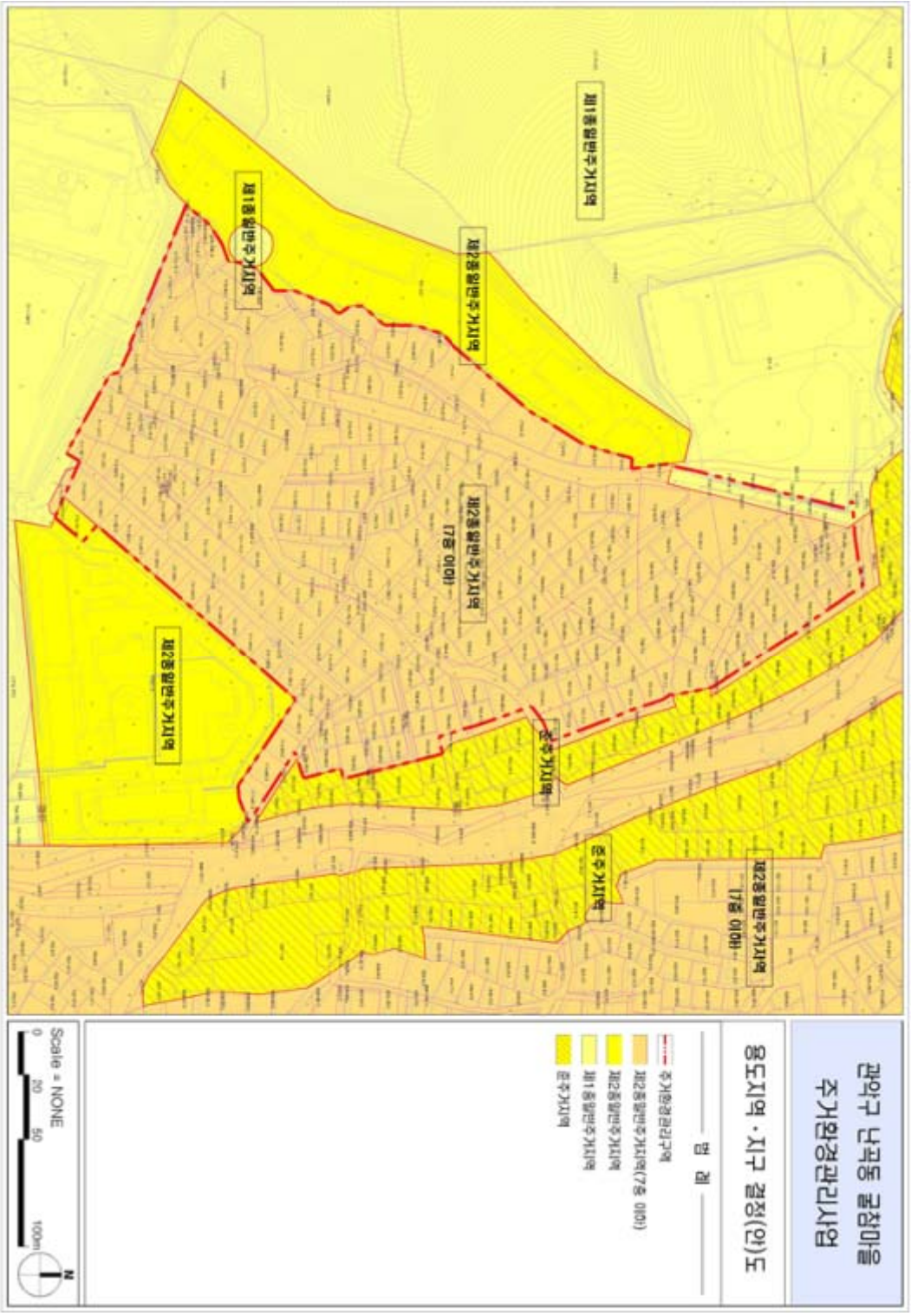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정비계획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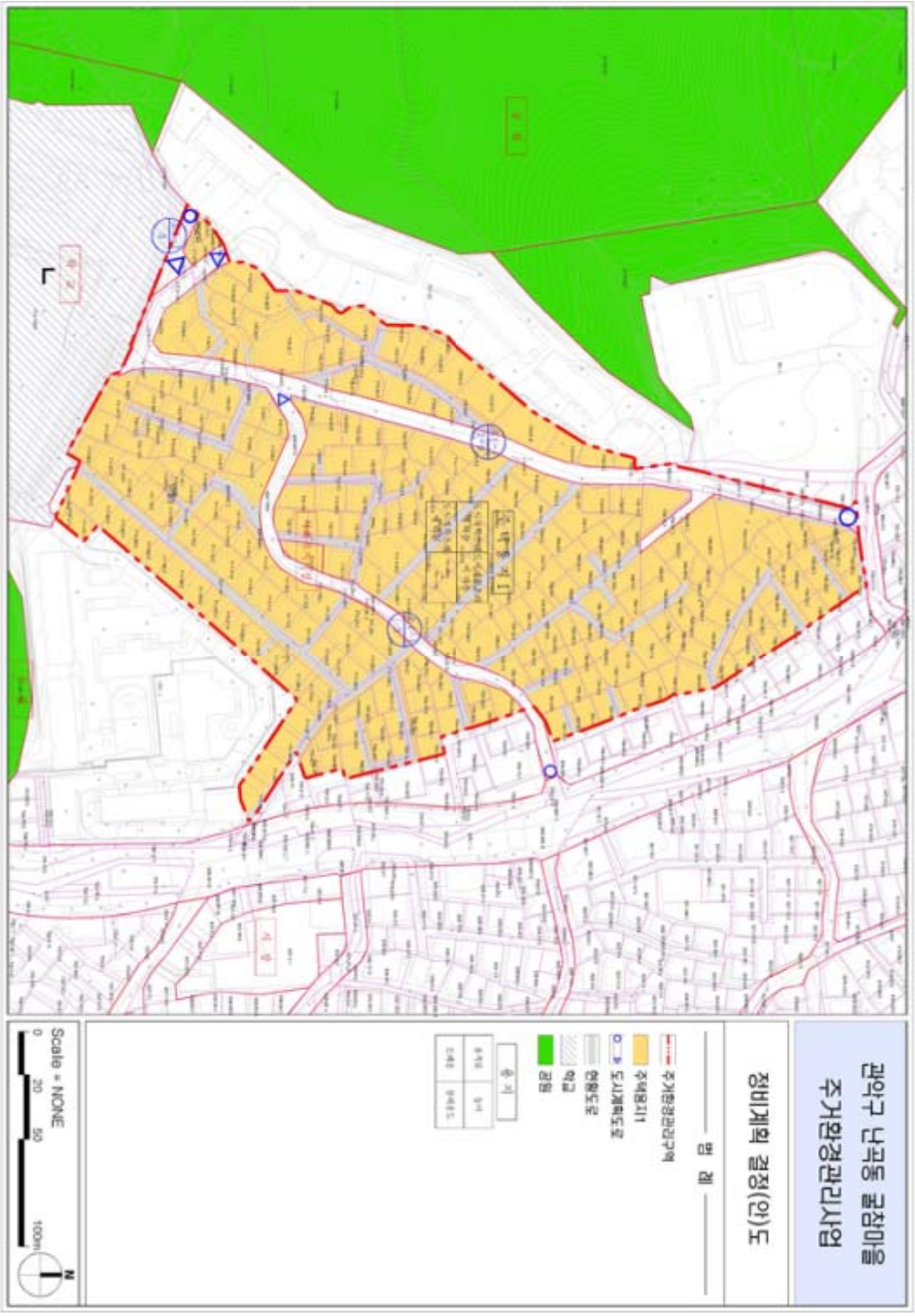
관악구 난곡동 굴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결정(안)도
범 례
주거환경관리구역
주택지
도시계획도로
완충녹지
공원
공지
Scale = NONE
0 20 50 100m
N

■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종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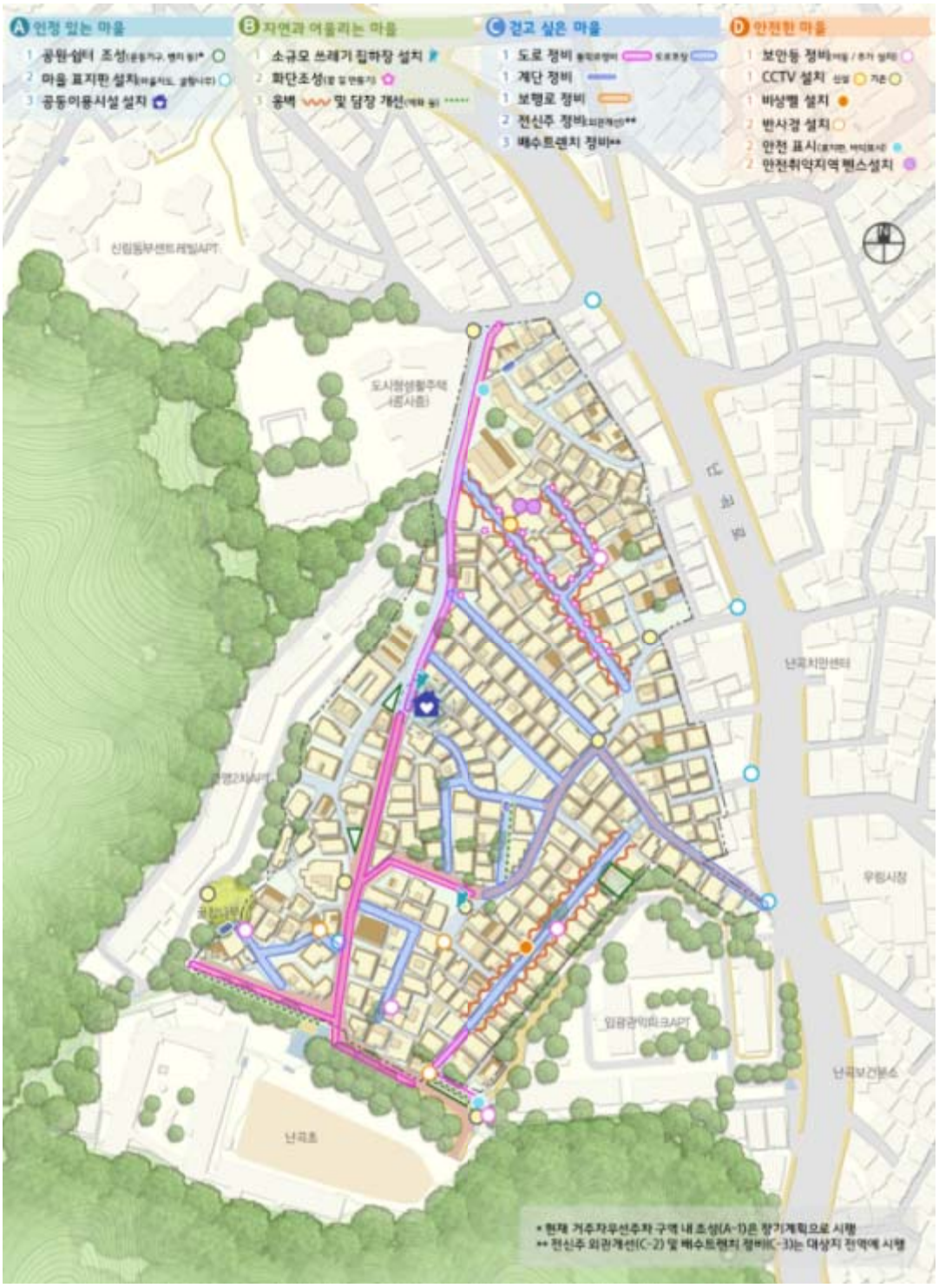

※ 상기 정비사업계획도는 추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0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1호(2005.12.22.)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영등포지역) 변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호(2010.01.21.)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71호(2013.01.03.)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6호(2015.07.30.)로 정비구역 해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8호(2016.01.14.)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8호(2017.04.27.)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7호(2017.05.25.)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영등포구 영등포동 2·5·7가 일원	144,507.7	

나. 재정비촉진계획의 목적 (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변경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44,507.7	-	144,507.7	100.0	-
도시계획시설	소 계	49,461.0	감) 5.1	49,455.9	34.2	-
	도 로	37,849.0	증) 24.9	37,873.9	26.2	-
	광 장	1,446.0	-	1,446.0	1.0	-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도시계획시설	공 원	8,427.3	-	8,427.3	5.8	-
	공공공지	1,738.7	감) 30.0	1,708.7	1.2	-
주 상 복 합		59,791.6	증) 5.1	59,796.7	41.4	-
상 업 복 합		32,257.1	-	32,257.1	22.3	-
종 교 시 설		2,998.0	-	2,998.0	2.1	-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2)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없음)
3)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 로	16	37,849.0	증) 24.9	37,873.9	
공 원	2	8,427.3	-	8,427.3	
광 장	1	1,446.0	-	1,446.0	
공공공지	1	1,738.7	감) 30.0	1,708.7	
주차장(환원)	1	860.8	-	860.8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 (변경없음)
5) 교통계획 (변경없음)
6) 경관계획 (변경없음)
7)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사업의 종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개 구역)			144,507.7	-	144,507.7	-	-
재정비 촉진 구역	영등포1-2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7가 76-5일대	5,392.0	-	5,392.0	도시환경 정비사업	-
	영등포1-3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7가 29-1일대	8,407.0	-	8,407.0	도시환경 정비사업	-
	영등포1-4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7가 145-8일대	58,340.9	감) 5.1	58,335.8	도시환경 정비사업	-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사업의 종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재정비 촉진 구역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5가 30일대	17,391.8	-	17,391.8	도시환경 정비사업	-
	영등포1-12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5가 22-3일대	16,256.0	-	16,256.0	도시환경 정비사업	-
	영등포1-13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5가 32-8일대	27,060.0	증) 5.1	27,065.1	도시환경 정비사업	-
	영등포1-14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5가 34-16일대	11,660.0	-	11,660.0	도시환경 정비사업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8)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

구 역 명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계	144,507.7	-	144,507.7	100.0	-
	준주거지역	103,699.9	-	103,699.9	71.8	
	일반상업지역	40,807.8	-	40,807.8	28.2	
영등포1-2 재정비촉진구역	계	5,392.0	-	5,392.0	100.0	-
	준주거지역	433.0	-	433.0	8.0	
	일반상업지역	4,959.0	-	4,959.0	92.0	
영등포1-3 재정비촉진구역	계	8,407.0	-	8,407.0	100.0	-
	준주거지역	1,017.2	-	1,017.2	10.6	
	일반상업지역	7,389.8	-	7,389.8	89.4	
영등포1-4 재정비촉진구역	계	58,340.9	감) 5.1	58,335.8	100.0	-
	준주거지역	58,340.9	감) 5.1	58,335.8	100.0	
	일반상업지역	-	-	-	-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계	17,391.8	-	17,391.8	100.0	-
	준주거지역	2,743.9	-	2,743.9	8.9	
	일반상업지역	14,647.9	-	14,647.9	91.1	
영등포1-12 재정비촉진구역	계	16,256.0	-	16,256.0	100.0	-
	준주거지역	2,444.9	-	2,444.9	8.7	
	일반상업지역	13,811.1	-	13,811.1	91.3	
영등포1-13 재정비촉진구역	계	27,060.0	증) 5.1	27,065.1	100.0	
	준주거지역	27,060.0	증) 5.1	27,065.1	100.0	
	일반상업지역	-	-	-	-	
영등포1-14 재정비촉진구역	계	11,660.0	-	11,660.0	100.0	
	준주거지역	11,660.0	-	11,660.0	100.0	
	일반상업지역	-	-	-	-	

※ 용도지역 변경은 사업시행을 전제로 계획된 사항이므로, 용도지역 변경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고시 예정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가) 기정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건축시설계획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주된용도	용적률 (%)	건폐율 (%)	층수(지하) /높이	주거 연면적 비율(%)
기정	합계	144,507.7	-	95,046.7	-	-	520이하	54이하	-	-
	1-2	5,392.0	-	3,930.4	영등포동7가 76-5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610이하	52이하	32F(4)/120m	50미만
	1-3	8,407.0	-	5,767.1	영등포동7가 29-1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610이하	55이하	31F(5)/120m	50미만
	1-4	58,340.9	1-4-1	35,507.2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근린생활, 업무, 주거	370이하	52이하	35F(3)/120m	90미만
			1-4-2	2,998.0	영등포동7가 148-18 일대	종교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
	1-11	17,391.8	-	11,981.1	영등포동5가 30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770이하	58이하	38F(5)/130m	50미만
	1-12	16,256.0	-	10,578.5	영등포동5가 22-3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750이하	59이하	38F(5)/130m	50미만
	1-13	27,060.0	-	17,229.8	영등포동5가 32-8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398이하	59이하	33F(4)/99m	70미만
	1-14	11,660.0	-	7,054.6	영등포동5가 34-16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380이하	55이하	24F(4)/80m	70미만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수 × 60% 이상 - 주거연면적 × 50% 이상 • 임대주택 (200세대 이상) - 전용면적 40㎡ 이상 - 세대수 × 17% × 주거연면적비율 이상 또는 주거연면적 × 10% × 주거연면적비율 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30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5m 후퇴지정 • 20m이하 도로변 건축한계선 2~3m 후퇴지정(1-9호선 보행자전용도로 제외. 단, 중2-5호선 건축한계선 지정) • 진입광장 인접 보행자 도로변 1층 벽면지정선 지정 • 보행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구역에 1층 벽면한계선 5m 지정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세대)	비율 (%)	비고
합계		3,546	100.0	-
임대		841	23.7	-
분양	60㎡ 이하	996	28.1	-
	60 ~ 85㎡ 이하	1,615	45.5	-
	85㎡ 초과	94	2.7	-

※ 1. 주용도는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
2. 주용도의 비율은 건축물에 도입되는 용도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용도일 경우 50% 이상, 3가지일 경우 34% 이상으로 도입 용도 중 가장 많은 비율로 계획하여야함.
3. 층수는 최고층수이며, 높이는 최고높이 기준으로, 다양한 높이계획을 권장함.
4. 최고 높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층수 조정 가능
5. 1-4구역은 사업시행인가된 주거연면적 이내에서 주거연면적 비율 90% 미만 적용
6. 1-4구역 임대주택은 최소 200세대 이상으로 계획 (단, 계획세대수 증가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준용하여 임대주택 추가 적용)
7. 오피스텔 설치시 주거연면적 비율에 포함하여 산정(단, 뉴타운 추진구역 지원계획에 따른 '비주거시설내 오피스텔 10% 허용' 사항은 주거연면적비율 산정시 제외함)
8.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의거 주용도가 업무시설일 경우 오피스텔 불허
9. 주거연면적비율 외에 '재정비촉진지구 상업 및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완화 기준'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7.5%, 장기전세주택 2.5% 추가 가능하며 준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비율 산정시 전체 연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
(단, '뉴타운 추진구역 지원계획'에 따른 비주거시설내 오피스텔 10%는 준공공임대주택 7.5%, 장기전세주택 2.5%로 공급 가능함)

나) 변경

결정구분	구역구분 명칭	구역구분 면적(㎡)	가구 또는 획지 구분 명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면적(㎡)	위치	건축시설계획 주된용도	용적률(%)	건폐율(%)	층수(지하)/높이	주거연면적비율(%)
변경	합계	144,507.7	-	95,051.8 (증 5.1)	-	-	520이하	54이하	-	-
	1-2	5,392.0	-	3,930.4	영등포동7가 76-5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610이하	52이하	32F(4)/120m	50미만
	1-3	8,407.0	-	5,767.1	영등포동7가 29-1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610이하	55이하	31F(5)/120m	50미만
	1-4	58,335.8 (감 5.1)	1-4-1	35,507.2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근린생활, 업무, 주거	370이하	52이하	35F(3)/120m	90미만
			1-4-2	2,998.0	영등포동7가 148-18 일대	종교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
	1-11	17,391.8	-	11,981.1	영등포동5가 30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770이하	58이하	38F(5)/130m	50미만
	1-12	16,256.0	-	10,578.5	영등포동5가 22-3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750이하	59이하	38F(5)/130m	50미만
	1-13	27,065.1 (증 5.1)	-	17,234.9 (증 5.1)	영등포동5가 32-8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398이하	59이하	33F(4)/99m	70미만
	1-14	11,660.0	-	7,054.6	영등포동5가 34-16 일대	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	380이하	55이하	24F(4)/80m	70미만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수 × 60% 이상 - 주거연면적 × 50% 이상 • 임대주택 (200세대 이상) - 전용면적 40㎡ 이상 - 세대수 × 17% × 주거연면적비율 이상 또는 주거연면적 × 10% × 주거연면적비율 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30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5m 후퇴지정 • 20m이하 도로변 건축한계선 2~3m 후퇴지정(1-9호선 보행자전용도로 제외. 단, 중2-5호선 건축한계선 지정) • 진입광장 인접 보행자 도로변 1층 벽면지정선 지정 • 보행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구역에 1층 벽면한계선 5m 지정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세대)	비율(%)	비고
합계		3,546	100.0	-
임대		841	23.7	-
분양	60㎡ 이하	996	28.1	-
	60 ~ 85㎡ 이하	1,615	45.5	-
	85㎡ 초과	94	2.7	-

※ 1. 주용도는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
2. 주용도의 비율은 건축물에 도입되는 용도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용도일 경우 50% 이상, 3가지일 경우 34% 이상으로 도입 용도 중 가장 많은 비율로 계획하여야함.
3. 층수는 최고층수이며, 높이는 최고높이 기준으로, 다양한 높이계획을 권장함.
4. 최고 높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층수 조정 가능
5. 1-4구역은 사업시행인가된 주거연면적 이내에서 주거연면적 비율 90% 미만 적용
6. 1-4구역 임대주택은 최소 200세대 이상으로 계획 (단, 계획세대수 증가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 준용하여 임대주택 추가 적용)
7. 오피스텔 설치시 주거연면적 비율에 포함하여 산정(단, 뉴타운 추진구역 지원계획에 따른 '비주거시설내 오피스텔 10% 허용' 사항은 주거연면적비율 산정시 제외함)
8.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의거 주용도가 업무시설일 경우 오피스텔 불허
9. 주거연면적비율 외에 '재정비촉진지구 상업 및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완화 기준'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7.5%, 장기전세주택 2.5% 추가 가능하며 준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비율 산정시 전체 연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
(단, '뉴타운 추진구역 지원계획'에 따른 비주거시설내 오피스텔 10%는 준공공임대주택 7.5%, 장기전세주택 2.5%로 공급 가능함)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10)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현황(㎡)		계획(㎡)		공공용지부담	
	명칭	면적(㎡)	대지(㎡)	공공용지(㎡)	대지(㎡)	공공용지(㎡)	면적(㎡)	비율(%)
기정	합계	144,507.7	111,688.7	32,819.0	95,046.7	49,461.0	16,642.0	14.9
변경		144,507.7 (-)	111,688.7 (-)	32,819.0 (-)	95,051.8 (증 5.1)	49,455.9 (감 5.1)	16,636.9 (감 5.1)	14.9 (-)
기정	1-2	5,392.0	4,334.2	1,057.8	3,930.4	1,461.6	403.8	9.3
기정	1-3	8,407.0	6,775.2	1,631.8	5,767.1	2,639.9	1,008.1	14.9
기정	1-4	58,340.9	45,019.6	13,321.3	38,505.2	19,835.7	6,514.4	14.5
변경		58,335.8 (감 5.1)	45,019.6 (-)	13,316.2 (감 5.1)	38,505.2 (-)	19,830.6 (감 5.1)	6,514.4 (-)	14.5 (-)
기정	1-11	17,391.8	14,232.7	3,159.1	11,981.1	5,410.7	2,251.6	15.8
기정	1-12	16,256.0	12,677.6	3,578.4	10,578.5	5,677.5	2,099.1	16.6
기정	1-13	27,060.0	20,501.0	6,559.0	17,229.8	9,830.2	3,271.2	16.0
변경		27,065.1 (증 5.1)	20,501.0 (-)	6,564.1 (증 5.1)	17,234.9 (증 5.1)	9,830.2 (-)	3,266.1 (감 5.1)	15.9 (감 0.1)
기정	1-14	11,660.0	8,148.4	3,511.6	7,054.6	4,605.4	1,093.8	13.4

※ 향후 각 구역별 사업시행시 추가 용적률 적용에 대한 공공시설 기부채납 기준제시를 통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방안 검토 (사업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11)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12)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3)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 (변경없음)

마. 재정비촉진구역 지정(변경) 결정 조서 (변경)
가) 영등포1-2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나) 영등포1-3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다) 영등포1-4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영등포1-4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58,340.9	감) 5.1	58,335.8	-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58,340.9	감) 5.1	58,335.8	100.0	-
도시계획시설	소 계	19,835.7	감) 5.1	19,830.6	34.0	-
	역사공원	2,962.8	-	2,962.8	5.1	-
	공공공지	1,738.7	감) 30.0	1,708.7	2.9	-
	도 로	15,134.2	증) 24.9	15,159.1	26.0	-
택 지	소 계	38,505.2	-	38,505.2	66.0	-
	1-4-1	35,507.2	-	35,507.2	60.9	-
	1-4-2	2,998.0	-	2,998.0	5.1	종교시설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

○ 도로 (변경없음)

○ 철도 (변경없음)

○ 공원 (변경없음)

○ 공공공지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공공공지	영등포동2가 435-4 일대	1,738.7	감) 30.0	1,708.7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2005.12.22)	-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변경없음)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5)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없음)

(나)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축시설계획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지하) /높이	계획 세대수 (세대)
기정	1-4	58,340.9	1-4-1	35,507.2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근린생활, 업무, 주거	52이하	370이하	35F(3) /120m	90미만
			1-4-2	2,998.0	영등포동7가 148-18일대	종교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수 × 60% 이상 - 주거연면적 × 50% 이상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세대)	비 율 (%)	비 고
합계		1,221	100.0	
임대	60㎡ 이하	200	16.4	
분양	60㎡ 이하	249	20.4	
	60~85㎡ 이하	681	55.8	
	85㎡ 초과	91	7.4	

결정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축시설계획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지하)/높이	계획세대수(세대)
변경	1-4	58,335.8 (감 5.1)	1-4-1	35,507.2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근린생활, 업무, 주거	52이하	370이하	35F(3)/120m	90미만
			1-4-2	2,998.0	영등포동7가 148-18일대	종교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수 × 60% 이상 - 주거연면적 × 50% 이상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세대)	비 율(%)	비 고
합계		1,221	100.0	
임대	60㎡ 이하	200	16.4	
분양	60㎡ 이하	249	20.4	
	60~85㎡ 이하	681	55.8	
	85㎡ 초과	91	7.4	

※ 1. 주용도는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
2. 주용도의 비율은 건축물에 도입되는 용도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용도일 경우 50% 이상, 3가지일 경우 34% 이상으로 도입용도 중 가장 많은 비율로 계획하여야함.
3. 층수는 최고층수이며, 높이는 최고높이 기준으로, 다양한 높이계획을 권장함.
4. 최고 높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 층수 조정
5. 오피스텔 설치시 주거연면적 비율에 포함하여 산정
6.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의거 주용도가 업무시설일 경우 오피스텔 불허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6)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7)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8)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라)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마) 영등포1-12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바) 영등포1-13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영등포1-13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동5가 32-8 일대	27,060.0	증) 5.1	27,065.1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27,060.0	증) 5.1	27,065.1	100.0	
도시계획시설	소 계	9,830.2	-	9,830.2	36.3	
	문화공원	2,255.9	-	2,255.9	8.3	
	도 로	7,574.3	-	7,574.3	28.0	
택 지		17,229.8	증)5.1	17,234.9	63.7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5)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없음)

(나) 건축시설계획 (변경)

<table>
<tr><th rowspan="2">결정 구분</th><th colspan="2">구 역 구 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colspan="5">건축시설계획</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h>주된용도</th><th>건폐율 (%)</th><th>용적률 (%)</th><th>층수(지하) /높이</th><th>계획 세대수 (세대)</th></tr>
<tr><td rowspan="2">기정</td><td>1-13</td><td>27,060.0</td><td>-</td><td>17,229.8</td><td>영등포동5가 32-8 일대</td><td>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td><td>59이하</td><td>398이하</td><td>33F(4) /99m</td><td>70미만</td></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td><td colspan="9">•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수 × 60% 이상
- 주거연면적 × 50% 이상
• 임대주택 (200세대 이상)
- 전용면적 40㎡ 이상
- 세대수 × 17% × 주거연면적비율 이상 또는 주거연면적 × 10% × 주거연면적비율 이상
<table><tr><th>구분</th><th>전용면적</th><th>세대수 (세대)</th><th>비 율 (%)</th><th>비 고</th></tr><tr><td colspan="2">합계</td><td>636</td><td>100.0</td><td></td></tr><tr><td>임대</td><td>60㎡ 이하</td><td>236</td><td>37.1</td><td></td></tr><tr><td rowspan="3">분양</td><td>60㎡ 이하</td><td>67</td><td>10.5</td><td></td></tr><tr><td>60~85㎡ 이하</td><td>330</td><td>51.9</td><td></td></tr><tr><td>85㎡ 초과</td><td>3</td><td>0.5</td><td></td></tr></table></td></tr>
<tr><th rowspan="2">결정 구분</th><th colspan="2">구 역 구 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colspan="5">건축시설계획</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h>주된용도</th><th>건폐율 (%)</th><th>용적률 (%)</th><th>층수(지하) /높이</th><th>주거 연면적 비율(%)</th></tr>
<tr><td rowspan="2">변경</td><td>1-13</td><td>27,065.1 (증 5.1)</td><td>-</td><td>17,234.9 (증 5.1)</td><td>영등포동5가 32-8 일대</td><td>판매, 근린생활, 업무, 주거</td><td>59이하</td><td>398이하</td><td>33F(4) /99m</td><td>70미만</td></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td><td colspan="9">•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수 × 60% 이상
- 주거연면적 × 50% 이상
• 임대주택 (200세대 이상)
- 전용면적 40㎡ 이상
- 세대수 × 17% × 주거연면적비율 이상 또는 주거연면적 × 10% × 주거연면적비율 이상
<table><tr><th>구분</th><th>전용면적</th><th>세대수 (세대)</th><th>비 율 (%)</th><th>비 고</th></tr><tr><td colspan="2">합계</td><td>636</td><td>100.0</td><td></td></tr><tr><td>임대</td><td>60㎡ 이하</td><td>236</td><td>37.1</td><td></td></tr><tr><td rowspan="3">분양</td><td>60㎡ 이하</td><td>67</td><td>10.5</td><td></td></tr><tr><td>60~85㎡ 이하</td><td>330</td><td>51.9</td><td></td></tr><tr><td>85㎡ 초과</td><td>3</td><td>0.5</td><td></td></tr></table></td></tr>
</table>

※ 1. 주용도는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
2. 주용도의 비율은 건축물에 도입되는 용도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용도일 경우 50% 이상, 3가지일 경우 34% 이상으로 도입 용도 중 가장 많은 비율로 계획하여야함.
3. 층수는 최고층수이며, 높이는 최고높이 기준으로, 다양한 높이계획을 권장함.
4. 최고 높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고 층수 조정
5. 오피스텔 설치시 주거연면적 비율에 포함하여 산정 (단, 뉴타운 추진구역 지원계획에 따른 '비주거시설내 오피스텔 10% 허용' 사항은 주거연면적비율 산정시 제외함)
6.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의거 주용도가 업무시설일 경우 오피스텔 불허
7. 주거연면적비율 외에 '재정비촉진지구 상업 및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완화 기준'에 따라 전체 연면적 20%의 임대주택 추가 적용 (준공공임대주택 15% / 장기전세주택 5%)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6)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7)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구 분	위 치	면 적(㎡)	
기 정	1-13	17,229.8	-	영등포동5가 32-8 일대	17,229.8	
변 경		17,234.9 (증 5.1)			17,234.9 (증 5.1)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8)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사) 영등포1-14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변경)
(1) 광장 (변경없음)
(2) 공원 (변경없음)
(3) 공공공지 (변경)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공공공지	영등포동2가 435-4 일대	1,738.7	감) 30.0	1,708.7	서울시고시 제2005-411호 (2005.12.22)	-

※ 변경사유 : 영등포1-4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변경없음)

사. 광고물 관리 계획 (변경없음)
아.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자. 친환경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차.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카.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타.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파. 유비쿼터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하.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3.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 참조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 02-2133-7224) 및 영등포구 도시재생과(☎02-2670-3528)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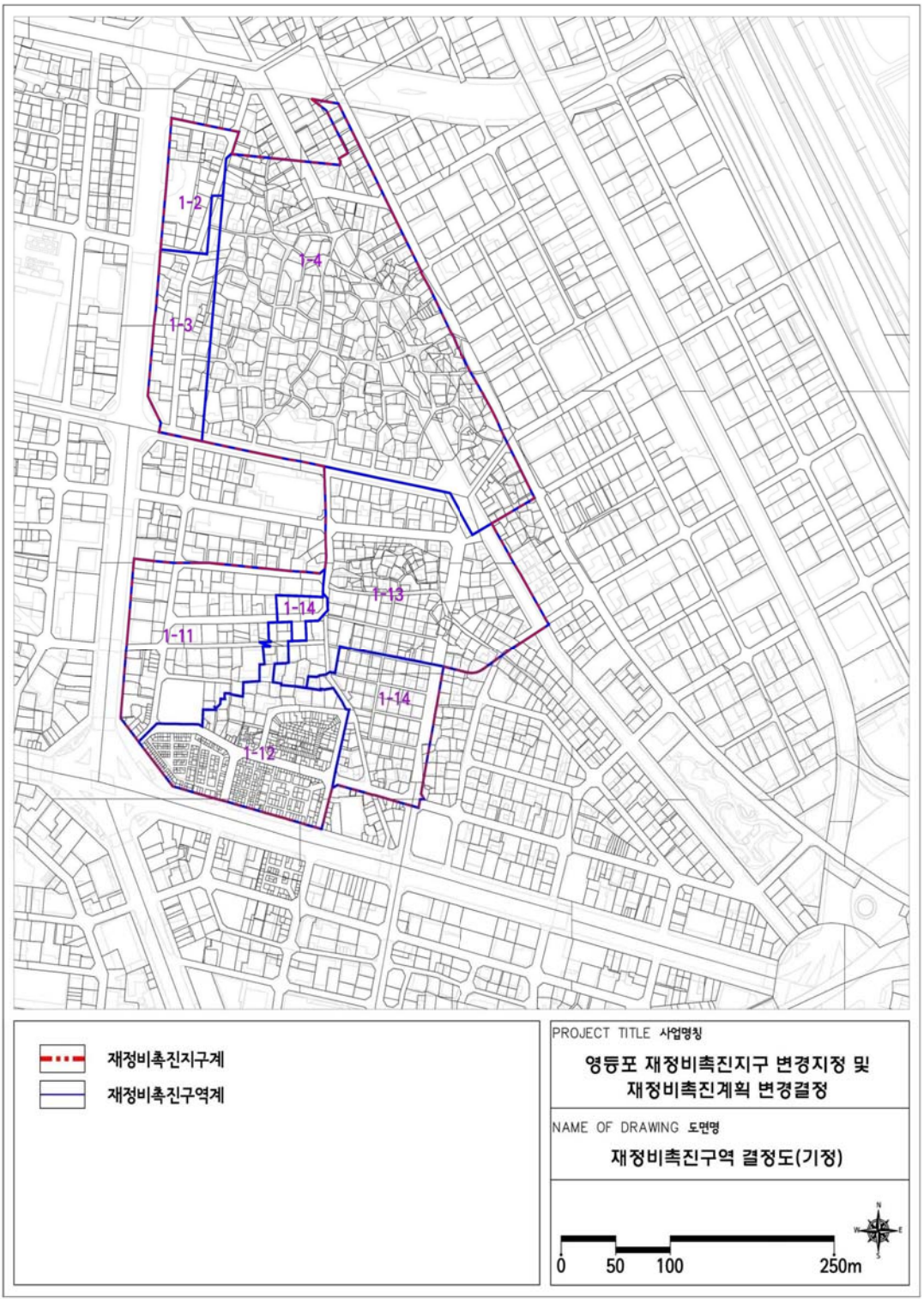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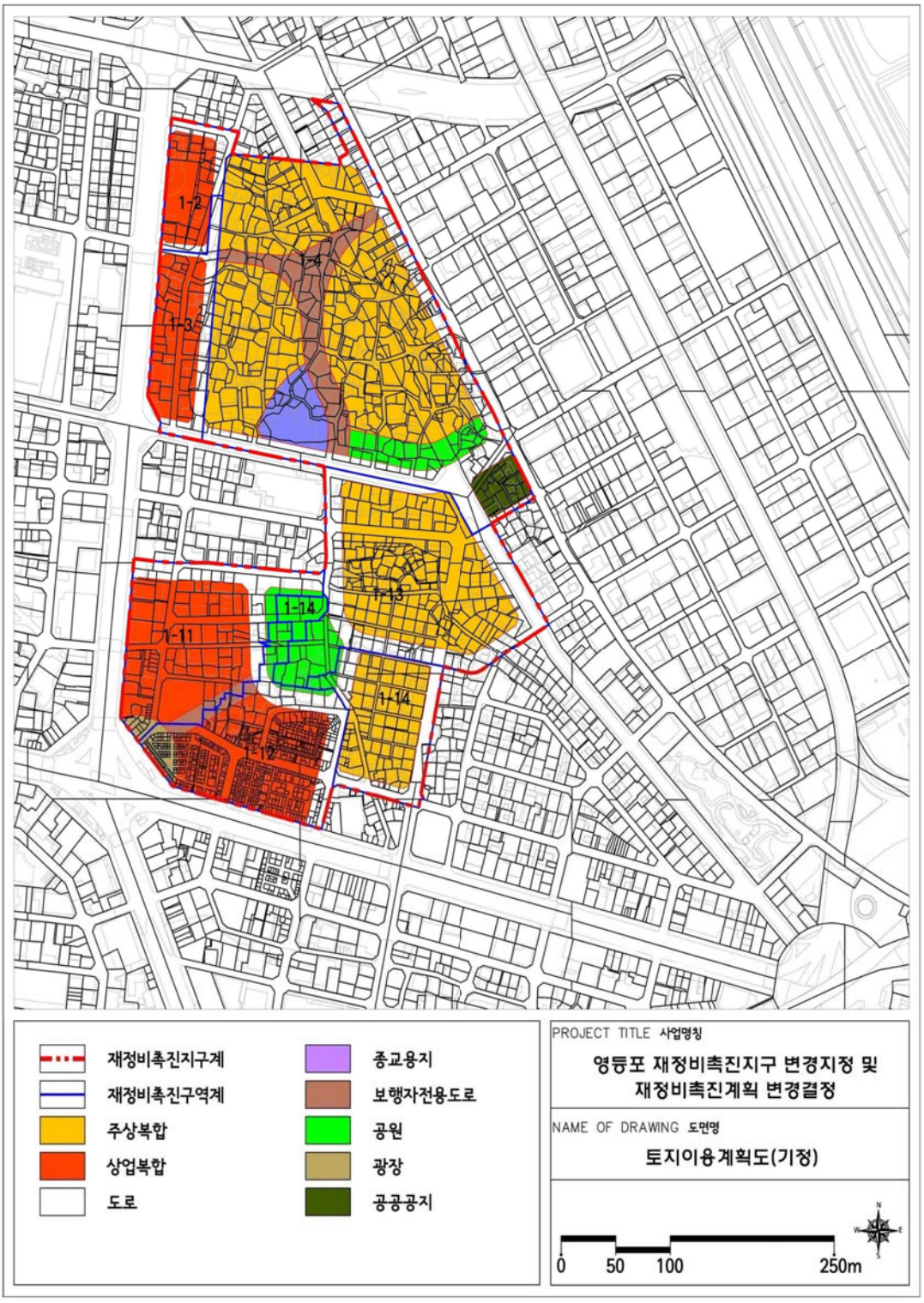

❑ 용도지역 및 지구 변경계획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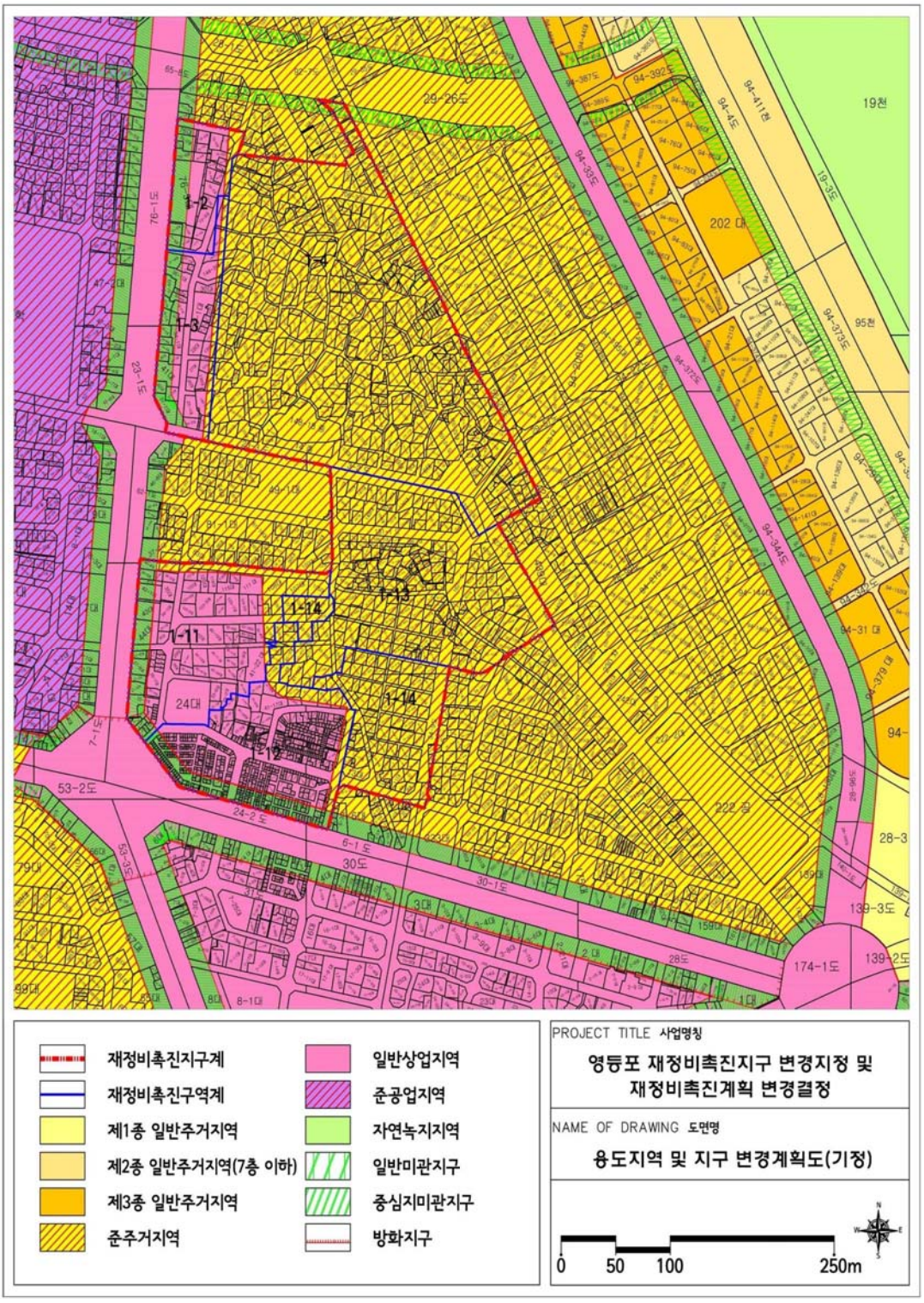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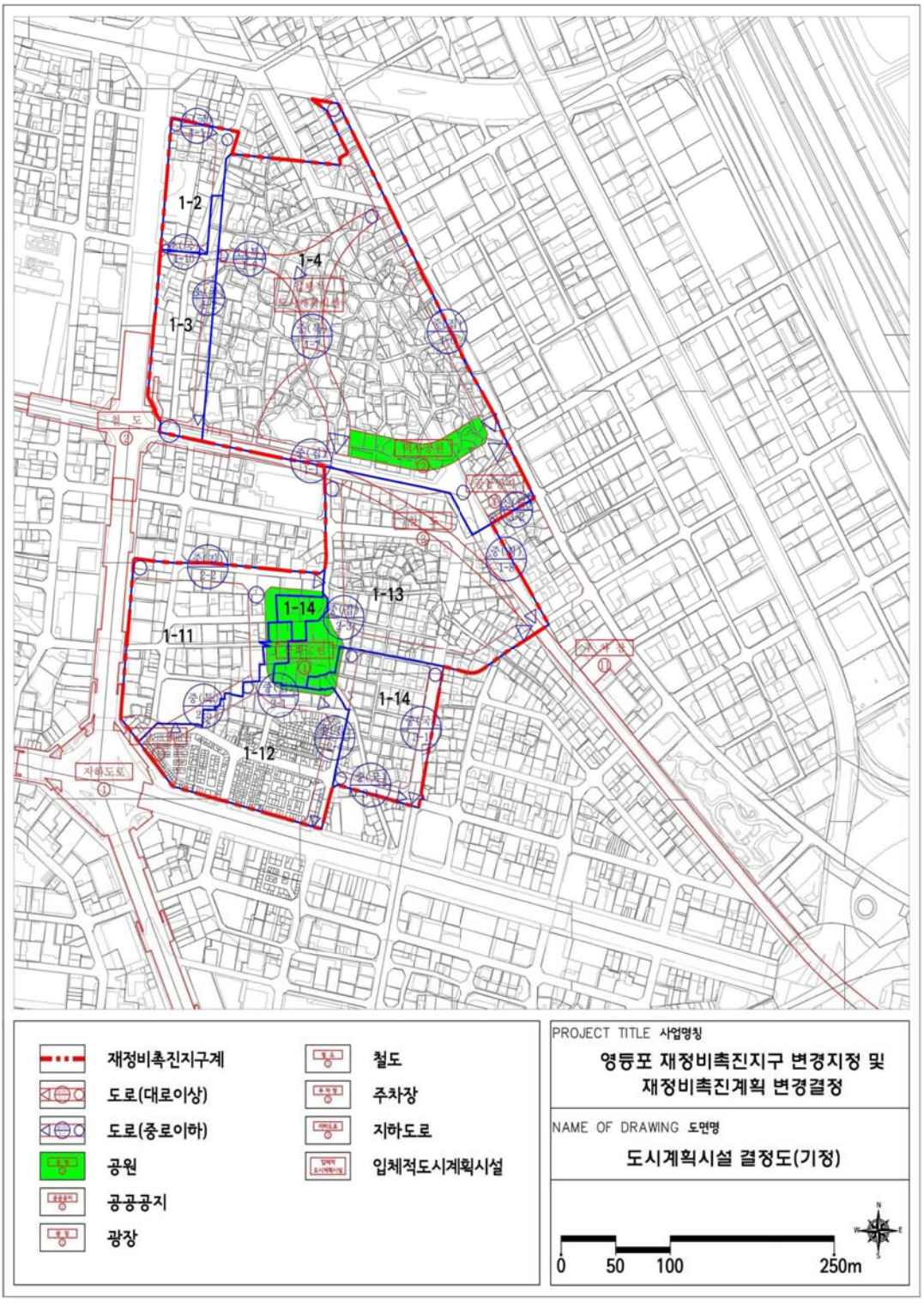

❑ 건축배치계획도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1호

신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138호(1977.7.14.)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4호(2011.8.1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신사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 내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함
2. 위 치 : 은평구 신사동 산80-4번지 일대
3. 면 적 : 111,650㎡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외 세부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33-2090)
은평구 공원녹지과(☏02-351-8004)

신사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조서

가. 총 괄 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11,650.0	8,482.4	1	59.57	59.57	99	111,650.0	9,244.4	1	693.94	1982.58	90	
기반시설	소계	5,788.4	5,788.4					5,588.4	5,588.4					감 200㎡
	광장	1,151.0	1,151.0					1,151.0	1,151.0					
	도로	4,637.4	4,637.4					4,437.4	4,437.4					감 200㎡
조경시설		194.0	194.0				10	174.0	174.0				9	감 20㎡
휴양시설		597.0	597.0				34	449.0	449.0				26	감 148㎡
유희시설		243.0	243.0				1	243.0	243.0				1	
운동시설		556.0	556.0				17	556.0	556.0				17	
편익시설		115.0	115.0		59.57	59.57		45.0	45.0					감 70㎡
교양시설		989.0	989.0					2,189.0	2,189.0	1	693.94	1982.58		증 1,200㎡
관리시설							37						37	
녹지 및 기타		103,167.6						102,405.6						감 762㎡
공원시설율		8,482.4/111,650x100=7.59%(법정40%이하)						9,244.4/111,650x100=8.28%(법정40%이하)						
건폐율		59.57/111,650x100=0.05%(법정10%이하)						693.94/111,650x100=0.62%(법정10%이하)						

나. 시 설 조 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부호	변경전 위치	변경전 부지면적(㎡)	변경전 시설면적(㎡)	변경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전 건축물(㎡) 연면적(㎡)	변경전 공작물(기)	변경후 부호	변경후 위치	변경후 부지면적(㎡)	변경후 시설면적(㎡)	변경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후 건축물(㎡) 연면적(㎡)	변경후 공작물(기)	비고
합 계				111,650.0	8,482.4	59.57	59.57	99			111,650.0	9244.4	693.94	1982.58	90	
기반시설	소 계			5,788.4	5,788.4						5,588.4	5,588.4				
	광 장	가	6개소	1,151	1,151				가	6개소	1,151	1,151				
	진입광장1	가-1	산 93-1	39	39				가-1	산 93-1	39	39				
	진입광장2	가-2	산 93-1	39	39				가-2	산 93-1	39	39				
	진입광장3	가-3	98-22	48	48				가-3	98-22	48	48				
	진입광장4	가-4	산 80-17	37	37				가-4	산 80-17	37	37				
	어린이놀이터 광장	가-5	산 80-58 일대	192	192				가-5	산 80-58 일대	192	192				
	다목적 광장	가-6	산 93-19일대	796	796				가-6	산 93-19일대	796	796				
	도로	나	전지역	4,637.4	4,637.4				나	전지역	4,437.4	4,437.4				감 200㎡
조경시설	소 계			194	194			10			174	174			9	
	그늘시렁	①	7개소	165	165			10	①	7개소	145	145			9	
		①-1	98-4	18	18			1	①-1	98-4	18	18			1	
		①-2	98-4	18	18			1	①-2	98-4	18	18			1	
		①-3	산 80-58일대	60	60			3	①-3	산 80-58일대	40	40			2	감 20㎡
		①-4	산 93-1	11	11			1	①-4	산 93-1	11	11			1	
		①-5	98-21	18	18			1	①-5	98-21	18	18			1	
		①-6	98-51	20	20			1	①-6	98-51	20	20			1	
		①-7	산 80-62	9	9			1	①-7	산 80-62	9	9			1	
		①-8	98-46일대	11	11			1	①-8	98-46일대	11	11			1	
	데 크	②	산 80-59	29	29				②	산 80-59	29	29				
휴양시설	소 계			597	597			34			449	449			26	
		다	7개소	597	597				다	6개소	449	449				
	휴게소1	다-1	산 93-1	31	31				다-1	산 93-1	31	31				
	휴게소2	다-2	98-51	194	194				다-2	98-51	194	194				
	휴게소3	다-3	98-20	86	86				다-3	98-20	86	86				
	휴게소4	다-4	산 80-62	14	14				다-4	산 80-62	14	14				

구분	시설명	변경전 부호	변경전 위치	변경전 부지면적(㎡)	변경전 시설면적(㎡)	변경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전 건축물(㎡) 연면적(㎡)	변경전 공작물(기)	변경후 부호	변경후 위치	변경후 부지면적(㎡)	변경후 시설면적(㎡)	변경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후 건축물(㎡) 연면적(㎡)	변경후 공작물(기)	비고
휴양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다-5	산 80-58일대	148	148											폐지
	다목적광장 휴게소	다-6	산 93-18일대	110	110				다-6	산 93-18일대	110	110				
	전망 휴게소	다-7	산 80-59	14	14				다-7	산 80-59	14	14				
	장의자	③	전지역					26	③	전지역					26	
	야외탁자	④	산 80-58일대					8								폐지
유희시설	소 계			243	243			1			243	243			1	
	어린이놀이터	라	산 80-58 일대	243	243				라	산 80-58 일대	243	243				
	조합놀이대	⑤	산 80-58 일대					1	⑤	산 80-58 일대					1	
운동시설	소 계			556	556			17			556	556			17	
	배드민턴장	마	98-4	556	556				마	98-4	556	556				
	체력단련시설	⑥	시설부지내					17	⑥	시설부지내					17	
편익시설	소 계			115.0	115.0	59.57	59.57				45	45				
	샘 터	바	98-30	45	45				바	98-30	45	45				
	화 장 실	1	산 80-5	70.0	70.0	59.57	59.57									폐지
교양시설	소 계			989	989						2,189	2,189	693.94	1,982.58		
	자연학습장	사	98-46일대	989	989				사	98-46일대	989	989				
	공공도서관								아	산 80-58일대	1,200	1,200	693.94	1,982.58 지하1 929.93 자료실 지상1 736.18 자료실 지상2 316.47 열람실		신설
관리시설	소 계							37							37	
	안 내 판	⑦	전지역					24	⑦	전지역					24	
	공 원 등	⑧	전지역					13	⑧	전지역					13	
녹지 및 기타	소 계			103,167.6							102,405.6					감 762㎡
	전 지 역	전지역		103,167.6					전지역		102,405.6					감 762㎡

다. 도 로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4,637.4				
변경						4,437.4				감 200㎡
당초	산책로	4	1	3	295	885	진입,산책	진입광장3	자연학습장	
당초		4	2	2	424	848	산책,등산	98-56잡	자연학습장	
당초		4	3	2	53	106	산책,연결	자연학습장	98-46잡	
당초		4	4	2	140	280	산책,등산	산80-61임	진입광장4	
당초		4	5	2	226	452	산책,등산	산80-17임	어린이놀이터	
당초		4	6	2	102	204	산책,등산	산80-60임	산80-9임	
당초		4	7	2	135	270	산책,등산	산80-4임	어린이놀이터	
당초		4	8	1.5~3	187	308	진입,연결	산80-9임	어린이놀이터	감 187.6
변경					72	120.4				
당초		4	9	2	28	56	산책,연결	98-56잡	98-4잡	
당초		4	10	2	68	136	산책,등산	98-4잡	배드민턴장	
당초		4	11	2	45	90	산책,등산	배드민턴장	98-51잡	
당초		4	12	2	108	216	산책,등산	배드민턴장	다목적광장	
당초		4	13	1~2	83	98	산책,연결	다목적광장	다목적광장	
당초		4	14	2	52	104	산책,등산	다목적광장	휴게소2	
당초		4	15	2	81	162	산책,등산	휴게소2	98-50잡	
당초		4	16	2	172	344	진입,산책	다목적광장	입구1	
당초		4	17	2	33	66	진입,산책	휴게소1	입구2	
폐지		4	18	6.5	2.0	12.4	화장실진입	어린이놀이터휴게소	산-8	

조성계획도 (변경전)

신사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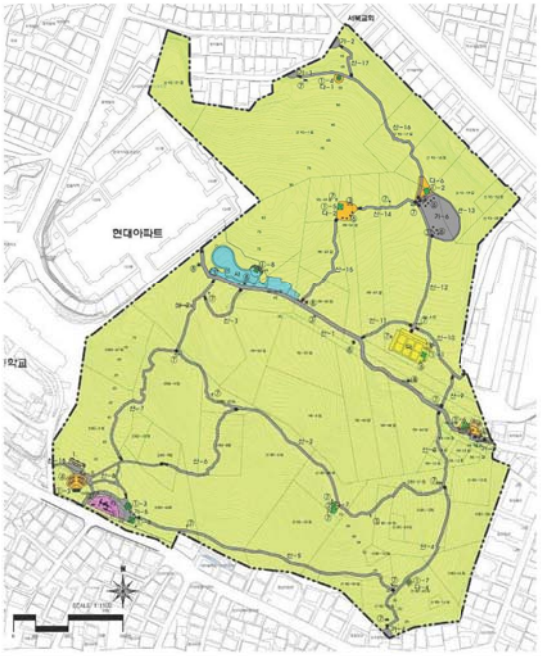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기호	위치	부지면적	비고
계				111,650.0 m2	
기반시설	소계			5,788.4 m2	
	광장	가	6개소	1,151 m2	
	전입광장1	가-1	산 93-1	39 m2	
	전입광장2	가-2	산 93-1	39 m2	
	전입광장3	가-3	96-22	48 m2	
	전입광장4	가-4	산 80-17	37 m2	
	어린이놀이터 광장	가-5	산 80-65일대	192 m2	
	다목적 광장	가-6	산 93-19일대	796 m2	
	도로		전지역	4,637.4 m2	
조경시설	소계			194 m2	
	그늘시렁	①	7개소	165 m2	
		①-1	98-4	18 m2	배드민턴장
		①-2	98-4	18 m2	다목적광장
		①-3	산 80-58일대	60 m2	어린이놀이터
		①-4	산 93-1	11 m2	휴게소1
		①-5	96-21	18 m2	휴게소2
		①-6	96-51	20 m2	휴게소3
		①-7	산 80-62	9 m2	휴게소4
		①-8	산 98-46일대	11 m2	자연학습장
	데크	②	산 80-59	29 m2	전망휴게소
휴양시설	소계			597 m2	
	휴게소	다	7개소	597 m2	
	휴게소1	다-1	산 93-1	31 m2	
	휴게소2	다-2	96-51	194 m2	
	휴게소3	다-3	96-20	86 m2	
	휴게소4	다-4	산 80-62	14 m2	
	어린이놀이터휴게소	다-5	산 80-58일대	148 m2	
	다목적광장휴게소	다-6	산 93-18일대	110 m2	
	전망휴게소	다-7	산 80-59	14 m2	
	장의자	③	전지역	26개소	
	야외탁자	④	산 80-58일대	8개소	어린이놀이터휴게소
유희시설	소계			243 m2	
	어린이놀이터	라	산 80-58일대	243 m2	
	조합놀이대	⑤	산 80-58일대	1개소	
운동시설	소계			556 m2	
	배드민턴장	마	98-4	556 m2	
	체력단련시설	⑥	사설부지내	20개소	
편익시설	소계			115 m2	
	쉼터	바	96-30	45 m2	
	화장실	1	산 80-5	70 m2	
교양시설	소계			989 m2	
	자연학습장	사	98-46일대	989 m2	
관리시설	소계				
	안내판	⑦	전지역	24개소	
	공원등	⑧	전지역	13개소	
녹지 및 기타			전지역	103,167.6 m2	

조성계획도 (변경후)

신사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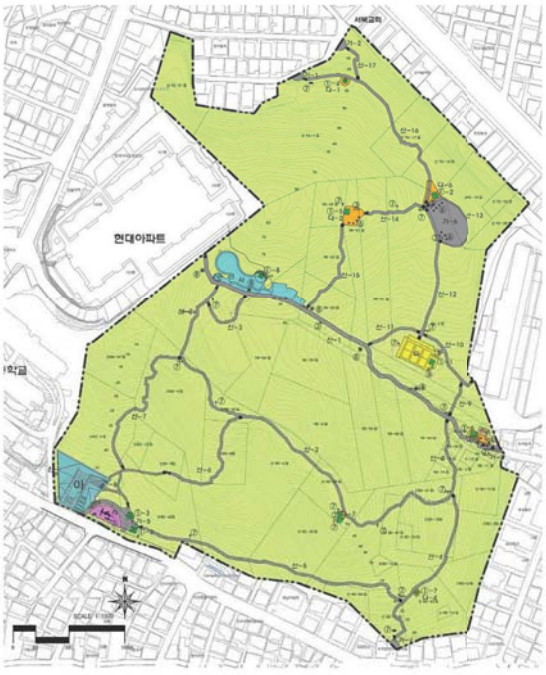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기호	위치	부지면적	비고
계				111,650.0 m2	
기반시설	소계			5,588.4 m2	
	광장	가	6개소	1,151 m2	
	전입광장1	가-1	산 93-1	39 m2	
	전입광장2	가-2	산 93-1	39 m2	
	전입광장3	가-3	96-22	48 m2	
	전입광장4	가-4	산 80-17	37 m2	
	어린이놀이터 광장	가-5	산 80-65일대	192 m2	
	다목적 광장	가-6	산 93-19일대	796 m2	
	도로		전지역	4,437.4 m2	
조경시설	소계			174 m2	
	그늘시렁	①	7개소	145 m2	
		①-1	98-4	18 m2	배드민턴장
		①-2	98-4	18 m2	다목적광장
		①-3	산 80-58일대	40 m2	어린이놀이터
		①-4	산 93-1	11 m2	휴게소1
		①-5	96-21	18 m2	휴게소2
		①-6	96-51	20 m2	휴게소3
		①-7	산 80-62	9 m2	휴게소4
		①-8	산 98-46일대	11 m2	자연학습장
	데크	②	산 80-59	29 m2	전망휴게소
휴양시설	소계			449 m2	
	휴게소	다	6개소	449 m2	
	휴게소1	다-1	산 93-1	31 m2	
	휴게소2	다-2	96-51	194 m2	
	휴게소3	다-3	96-20	86 m2	
	휴게소4	다-4	산 80-62	14 m2	
	다목적광장휴게소	다-6	산 93-18일대	110 m2	
	전망휴게소	다-7	산 80-59	14 m2	
	장의자	③	전지역	26개소	
유희시설	소계			243 m2	
	어린이놀이터	라	산 80-58일대	243 m2	
	조합놀이대	⑤	산 80-58일대	1개소	
운동시설	소계			556 m2	
	배드민턴장	마	98-4	556 m2	
	체력단련시설	⑥	사설부지내	20개소	
편익시설	소계			45 m2	
	쉼터	바	96-30	45 m2	
교양시설	소계			2189 m2	
	자연학습장	사	98-46일대	989 m2	
	공원도서관	아	80-65일대	1,200 m2	
관리시설	소계				
	안내판	⑦	전지역	24개소	
	공원등	⑧	전지역	13개소	
녹지 및 기타			전지역	102,405.6 m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2호

양천구 신월5동(해오름마을)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주민참여를 통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 보전·정비·개량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구역의 명칭 : 양천구 신월5동(해오름마을)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구역
2)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규	신월5동(해오름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	증) 37,551.0	37,551.0	

2. 정비계획의 수립
1)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사업내용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양천구청장	해당 없음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및 신축하는 방법	기한 없음	토지등소유자		

2)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
①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변경 없음)

구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37,551.0	-	37,551.0	100.0	-
주택 용지	소계			32,763.5	-	32,763.5	87.3	-
	주택용지(개별건축)			32,763.5	-	32,763.5	87.3	-
정비 기반 시설	소계			4,787.5	-	4,787.5	12.7	-
	도로	도시계획도로		3,126.2	-	3,126.2	8.3	-
		현황 도로	구유지	135.7	-	135.7	0.4	-
			사유지	1,525.6	-	1,525.6	4.0	

②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	37,551	-	37,551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14,471	-	14,471	38.5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3,080	-	23,080	61.5	-

③ 용도지구 결정 조서 (변경 없음)

□ 최고고도지구 결정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김포국제 공항주변지구	최 고 고도지구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표교 57.86m미만	80,193,000 (37,551)	서고 120 (1977.04.22)	-

※ ( )는 주거환경관리구역 내 사항임.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① 도로 결정조서 (변경 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207	주차장	소로3-6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51	소로2-2	소로3-6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97	소로3-5	소로3-6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98	소로3-3	소로2-1	일반 도로	-	-	

②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3개 부문 10개 공정)

■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관련 협의내용			
구 분	세부구분	공정	규모
1. 함께하는 마을	공동이용시설 및 마을마당	공동이용시설 조성, 마을마당 연계 (순환용주택 포함)	1개소 (28㎡)
	함께하는 골목길	이면도로(6m) 아스콘 포장 (적색, 황색, 흰색)	355m
		담장허물기 및 담장리모델링	
		화단 및 쉼터, 녹지조성	
2. 안전한 마을	안전한 골목길	아스콘 포장(적색, 황색, 흰색) 바닥 도색	310m
	안전시설물 신설 및 개선	CCTV 신설	2개소
		보안등 개량	10개소
	안내판, 게시판 설치(시인성 향상)	안내판, 게시판 설치	3개소
3. 경관 좋은 마을	화단 개량	화단 리모델링, 쉼터 조성	1개소
	담장 개선	담장허물기 및 담장리모델링	160m

※ 상기 구상(안)은 추후 주민협의, 주민동의,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층수	시행방법	비고
			부지면적	연면적			
신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양천구 신월5동 79-18번지	340.2	357.65	지상3층	부지매입	부지매입 (`16.04.26.)

※ 주민공동이용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17.03.30.)
※ 주민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은 추후 주민협의,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자문 이후 확정 예정.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①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대상건축물	정비 · 개량계획	지원계획수립	비고
144동	별도 지정 없음 (개별 건축, 리모델링 등 가능)	주택개발/신축비용 융자 지원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융자지원 제도 적용)	-

②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체 등에 관한 사항 (권장사항)

적용범위	계획내용
건축물 방향성 및 배치	• 건축물 방향 : 건축물 신축 시 가급적 이웃 건축물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여 가로경관의 통일감 및 연속성 유지 • 건축물 배치 : 이웃 건축물과 벽면선이 나란히 정렬되도록 하여 시각적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벽면한계선	• 벽면한계선 : 도로에 면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m 후퇴 • 벽면한계선으로 후퇴한 부분의 그린 존 형성 • 조경식재 및 휴게공간 조성 권장
대지 안의 조경	• 건축물 신축 시 마을 내부의 주요 수목인 감나무 식재 권장
녹색주차장	• 주차장을 투수성 재료로 개선함으로써 마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녹색주차장 설치를 권장하며, 녹색주차의 설치 기준은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의 기준을 따름
옥상녹화	• 건축물 건축 시, 평지붕으로 조성되는 구간은 친환경적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옥상녹화를 권장함 • 옥상녹화 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시스템 설계지침 및 관련도서 작성지침」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권장함
건축물 외벽	• 대상지에 주로 사용된 적벽돌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자연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 • 저채도 색상 사용할 것을 권장
지붕 형태	• 지붕의 재료는 과도한 반사성 재료를 지양하고 자연재료의 사용을 권장함 • 지붕의 색채는 원색계열 사용을 지양하고, 저채도 중명도 색상을 사용하여 통일감을 형성

6)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대지 또는 획지 구분		위치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신월5동 주거환경 관리구역	37,551	획지계획 없음		신월5동 77번지 일대	관련 법령에 따름	관련 법령에 따름	관련 법령에 따름
용 도			관련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관련법령에 따름.					
심의완화 사항			관련법령에 따름.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련법령에 따름.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마을에 중심이 되는 도로 주변의 환경개선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주택, 마당, 골목 등 마을 고유의 경관을 개선하고 커뮤니티 특성 강화 •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담장 등에 대하여 권장사항으로 제시하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을 경관을 개선토록 유도	• 골목길 환경개선 : 5개 도로(665m) • 담장허물기 : 2개소(60m) • 공동이용시설 설치 : 1개소 • 건축에 관한 사항 : 구역전체(권장)
환경보전	• 기존 수목 보전 및 녹지공간 확보, 화단개량, 벽걸이 화분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벽면녹화 등을 유도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 조성 • 공동이용시설 조성 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지역 조성	• 화단개량, 벽걸이화분 : 구역 전체 • 옥상정원 및 정원조성 지원 등 - 공동이용시설 내 정원지원실 운영
재난방지	• 지상부에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가로환경정비사업 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 최대한 억제 ※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 `17.6.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연계한 노후 하수관거 정비 완료 (화곡로8길, 가로공원로 67길)	• 도로포장 개선 : 5개 도로(665m)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기존 법령을 따름

구분	계획내용	비고
교육환경 현황	• 대상구역 반경 500m 내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3개소 위치 • 대상구역 일부 지역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함 (해당면적 : 약 2,60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상대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9)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 시행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결정(' 14. 5.13.) 이후, 단일 대상구역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10)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11)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세부사업 및 위치	규모
자연감시	• 담장은 주변시선의 연결확대를 도모코자 투시형담장 (낮은 담장) 또는 담장 허물기 등의 구조로 계획	• 담장허물기(신반도연립) • 담장리모델링(한숙연립)	• 길이 100m • 길이 60m
	• 마을 내 도로포장의 개선으로 가로환경 향상 및 통행 안전성을 제고하고,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신주·통신주 정비 및 노후된 보안등 교체 등 보행자, 노약자를 위한 공간 조성 등 함께하는 골목길로 조성	• 도로포장 개선, 공중선 정비 등 함께하는 골목길 조성 (화곡로6길 외 4개 도로)	• 5개 도로 (665m)

구분	계획내용	세부사업 및 위치	규모
접근 통제	• 창문에는 파손이나 훼손이 어려운 재질의 방범창 설치 • 측벽에 노출된 가스배관은 침입도구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방범시설 설치	-	• 구역전체 (권장사항)
영역성 강화	• 바닥을 활용한 위치 및 방향안내 사인, 주요 결절부 주민소통 및 마을소식 전달, 기타 안전기능을 목적으로 주요 골목길 진입부에 마을 게시판 설치 등으로 시인성 향상	• 마을소식 게시판 (신월5동 75-5 외 2개소)	• 3개소
	• 가로경관 연속성, 장소성, 개방감, 건축적 통일감 확보 등 안전한 지역이미지 확보 및 가시범위 확대를 위한 건축물 가이드라인 지침 마련	-	• 구역전체 (권장사항)
활동의 활성화	• 기존 보행환경개선구간과 연계하여 포장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건축물 전면 화단, 벽걸이 화분 및 투시형 담장 설치 등을 통해 가로에서의 주민 활동성 강화	• 자연감시 계획 위치와 동일	
유지 관리	• 도로, 화단 등 정비되는 기반시설 등의 유지 관리는 주민협의체(주민공동체운영회)에서 주도적으로 관리	-	• 구역전체
방범용 CCTV와 비상벨 설치	• 방범용 CCTV는 주택가에서 안전 병목대지 및 주요 골목을 중심으로 감시의 효율성(감시범위, 주변 인지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 통합 방범용 CCTV 지주대 설치(CCTV, 비상벨, 경보기, 스피커, 경관등, 안내표지판, 위치번호)	• 신월5동 77-18 외 1개소	• 2개소
커뮤니티 시설	•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서 방범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	• 신월5동 79-18	• 1개소

13)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14)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이며 대상지 내 역사·문화자원 해당사항 없음.

15)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분	계획내용	비고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 관련 법령에 의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 - 양천구 관내 행정 및 소셜벤쳐 등의 지원조직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 - 마을 특성에 맞는 분과별 활동 강화	
마을정원 만들기	• 구역 내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공동체 정원 조성 • 정원교육, 목공교실, 정원조성 및 유지관리 실습 프로그램 운영 • 공원녹지에 관한 골목 반상회, 문학(시, 수필 등) 행사 진행 • 새싹, 밀싹 등 판매, 도시농업 수경재배실 및 체험교육장 운영	
녹색힐링프로그램	•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해 마을 녹색공간 창출 및 주변 트래킹 코스 개발 •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과 마을에 대한 애정을 고취하고 자체적인 마을 공동체 활동 및 마을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주말농장, 수경재배사업, 동네 한바퀴 대청소, 화단정비, 마을꽃길 조성 및 꽃모종 나눔 프로그램 운영	
마을사업 운영	• 마을 수익 증대사업으로 지역발전 재투자,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 내 주민 식생활 개선 및 여성공동체 인식 강화를 위한 마을 장담그기 행사 진행 및 판매, 반찬사업, 유기순환농 텃밭 사업, 알뜰장터 등	
재능나눔학교	•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한자교실, 천연비누 만들기 프로그램, 건강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주민화합 모임 및 교류	• 지역 계층 간 소통의 기회와 문화예술 소외 인식 해소, 지역재능 기부자 발굴 및 대가족 소통을 위한 주민영화제, 학생동아리 활동, 방아다리 벚꽃축제, 마을밥상 등	

1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17)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 대상지 내 기존 수목은 대부분 사유지 내에 위치하며 존치됨.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와 관련된 자세한 세부내용은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과) 및 양천구(균형개발과)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1)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45)
   2) 양천구 균형개발과(☎ 02-2620-3502)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 정비구역 결정도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구역
(구역면적 : 37,551㎡)
■ 범 례
주거환경관리구역
지적선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해오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결정(안)도

■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없음)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없음)

■ 건축물에 대한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층수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관한 결정도

■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종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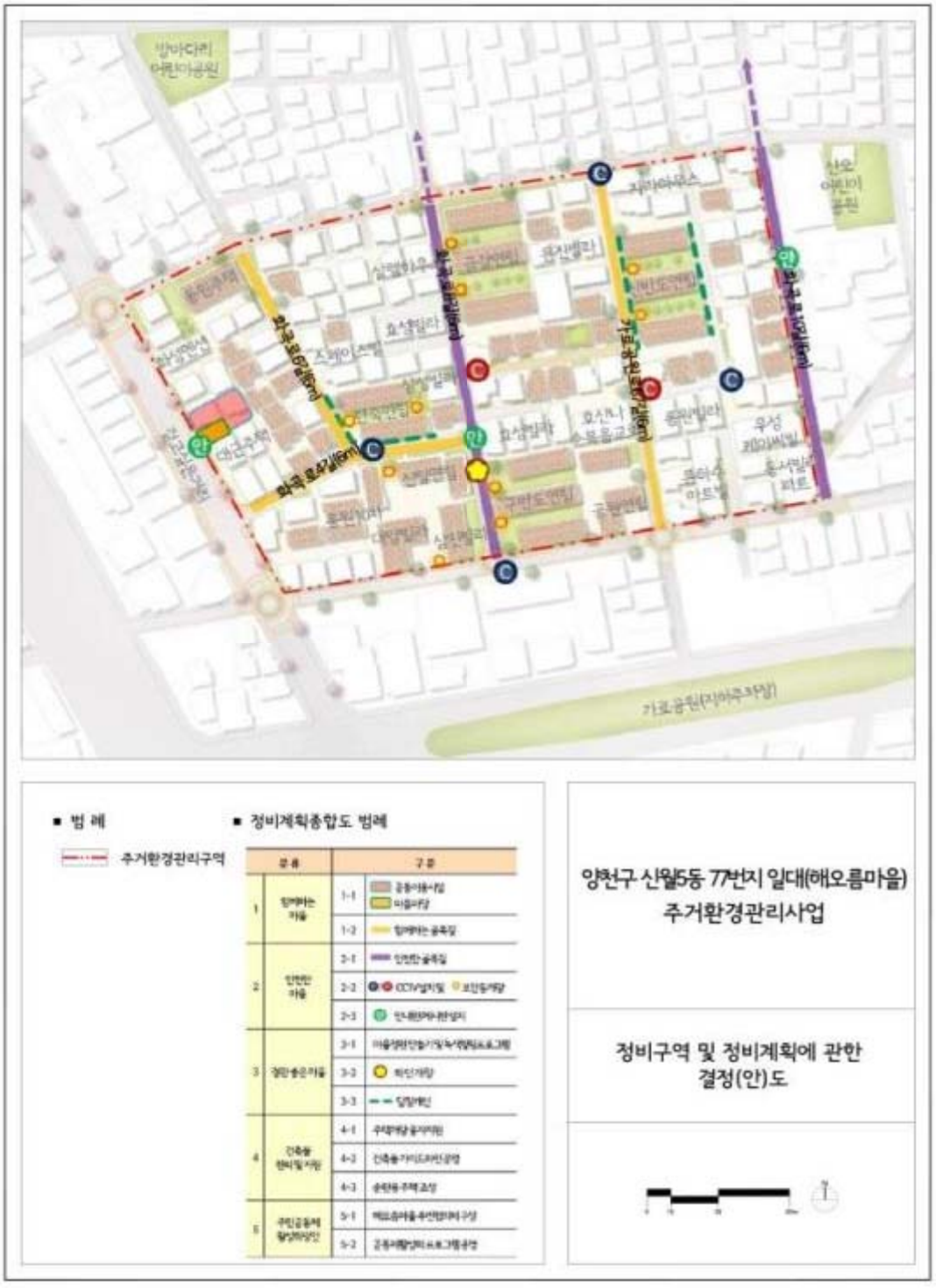

※ 상기 정비사업계획도는 추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3호

동작구 상도동(성대골)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88호(2015.7.2.)로 정비구역 지정 및 결정도면 고시된 동작구 상도동(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동작구 상도동(성대골) 주거환경관리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동작구 상도동(성대골) 주거환경관리사업	동작구상도동(성대골) 259-40번지 일대	47,580	-	47,580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47,580.0	-	47,580.0	100.00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7,412.0	-	7,412.0	15.58	
	도 로	5,317.0	-	5,317.0	11.17	
	공 원	112.0	-	112.0	0.23	
	수도공급시설	277.0	-	277.0	0.60	
	주차장	1,048.0	-	1,048.0 (1,706.0)[1]	2.20	주차장 일부 구간 공간적 범위 결정
	공공공지	658.0	-	658.0	1.38	지하 주차장 / 지상 공공공지 중복결정
주택용지(개별건축)		40,168.0	-	40,168.0	84.42	

※ (1,706.0)[1] : 지하 주차장 시설결정 면적(주차장 1,048㎡ + 공공공지 658㎡)

2)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나)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수도공급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변경내용				최 초 결정일	비고
				구분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주차장	주차장	동작구 상도동 275	면적(㎡)	1,048.0	–	1,048.0	–	공간적범위 결정
				높이(m)	–	평균해수면 기준 +43.8m 이하	평균해수면 기준 +43.8m 이하	–	

※ 공간적 범위 결정 : 지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지상) 비도시계획시설(청년공공주택, 공동이용시설)

마)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신설	공공공지	공공공지	동작구 상도동 275	658.0	–	658.0	–	중복결정

※ 중복결정 : 지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지상)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 변경내용

시설명	기정			변경			비고
	위치	용도	면적(㎡)	위치	용도	면적(㎡)	
주차장	지상1층	주차장	1,048.0	지하1층	주차장	1,048.0	공간적범위결정
				지상1~5층	비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지상1층	공공공지	658.0	지하1층	주차장	658.0	중복결정
				지상1층	공공공지	658.0	

※ 비도시계획시설(청년공공주택, 공동이용시설)의 건축층수/규모 등 세부 건축계획은 향후 진행 중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 : 청년 주거안정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거점 공간 확보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없음.)

8) 주민공동체활성화 방안(변경없음.)
9)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변경없음.)

2. 관련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도면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관련된 자세한 세부내용은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과) 및 동작구(도시전략사업과)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1)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담당자 박용구 / ☎ 02-2133-7261)
2) 동작구 도시전략사업과(담당자 변상의 / ☎ 02-820-1137)

[붙임]

■ 용도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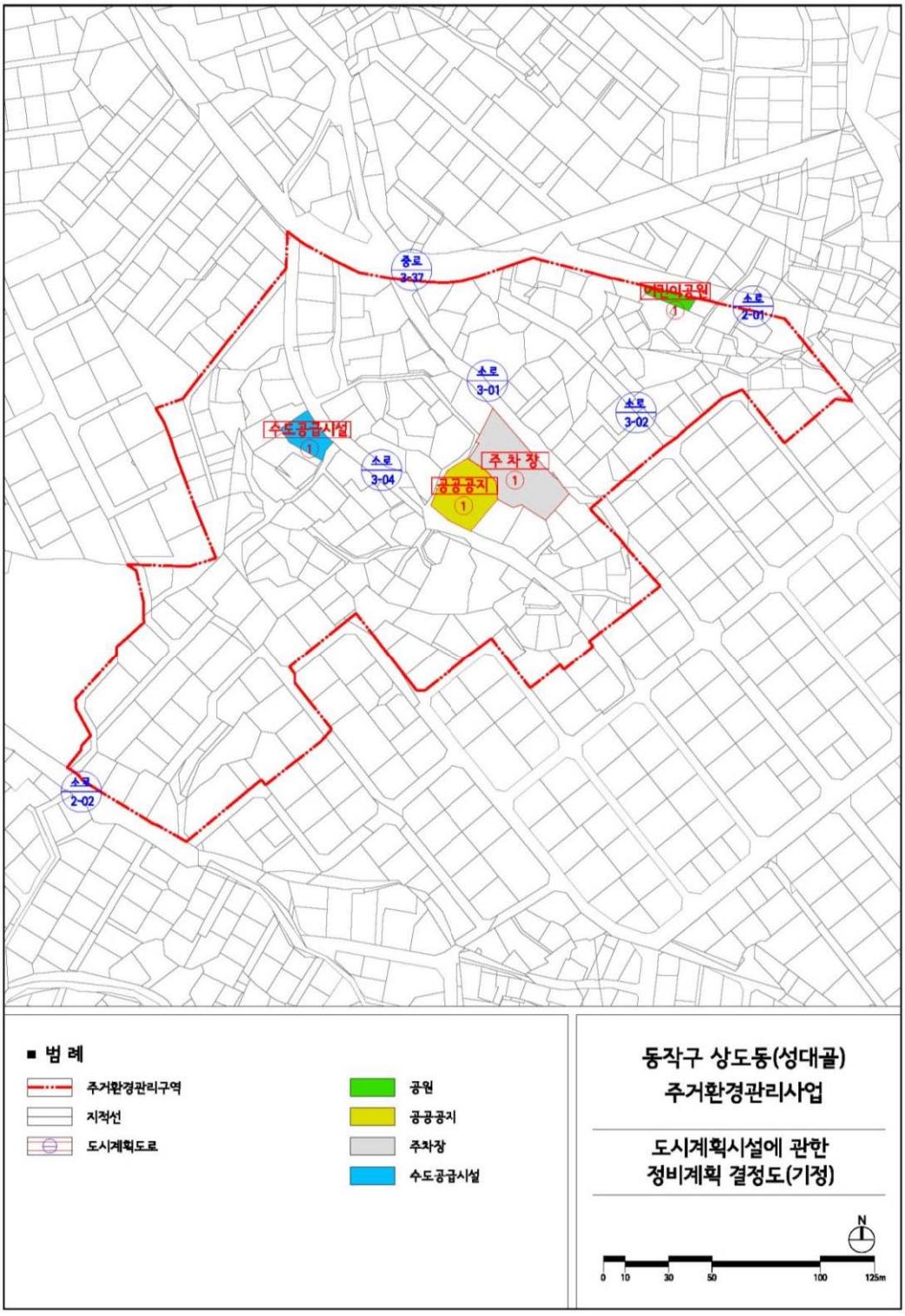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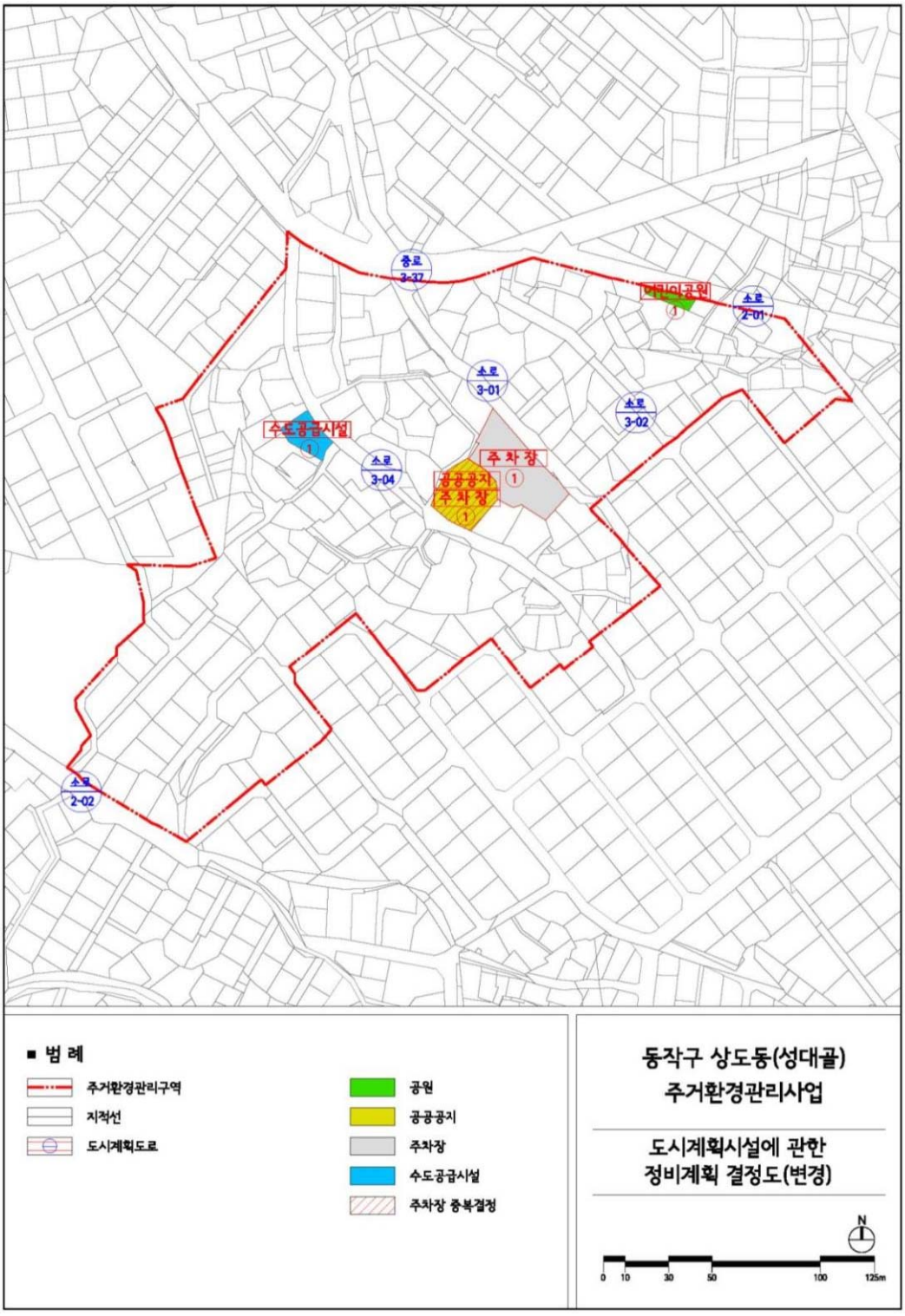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간적범위 결정도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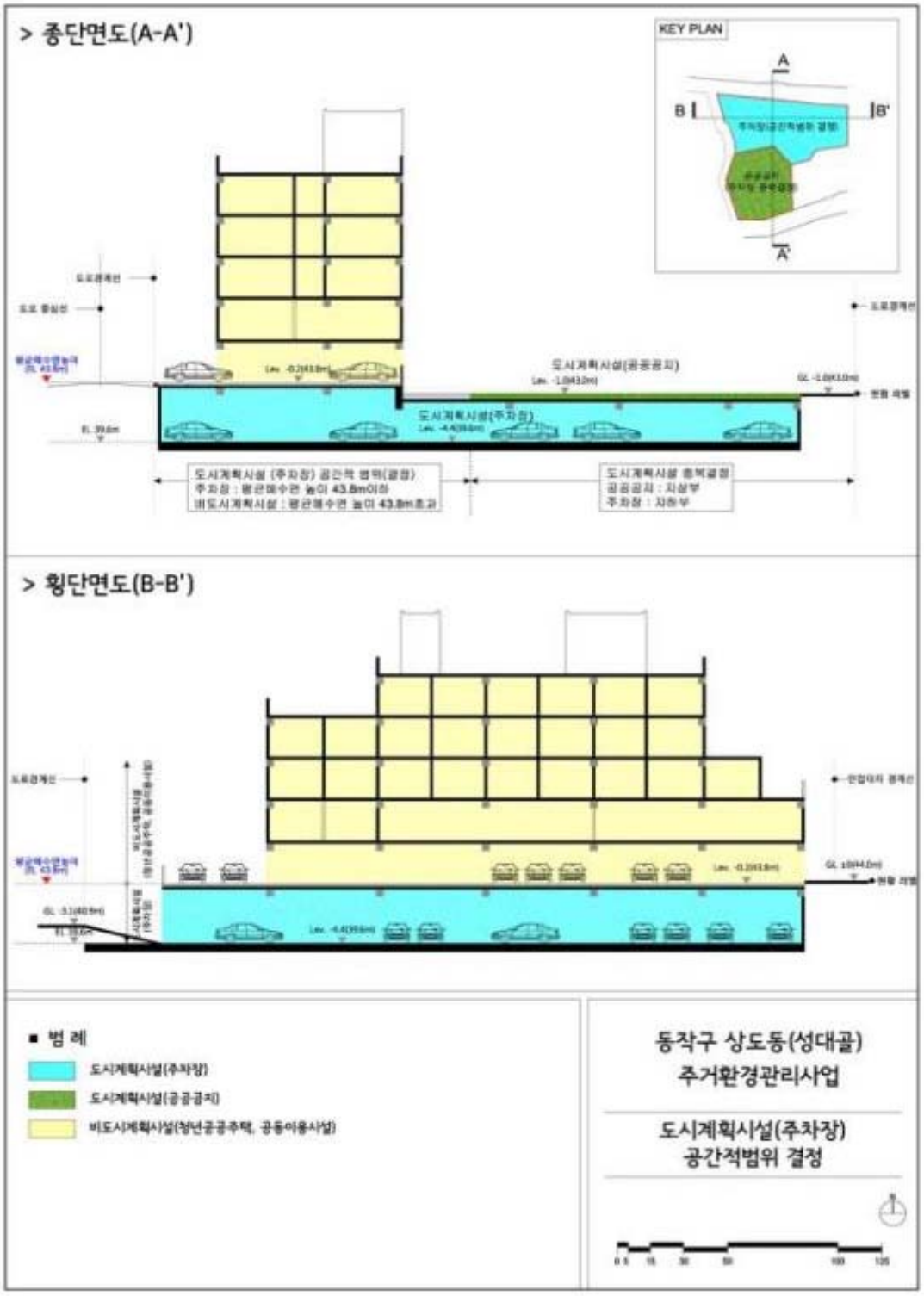

■ 건축물에 대한 용도 · 용적률 · 건폐율 · 높이 · 층수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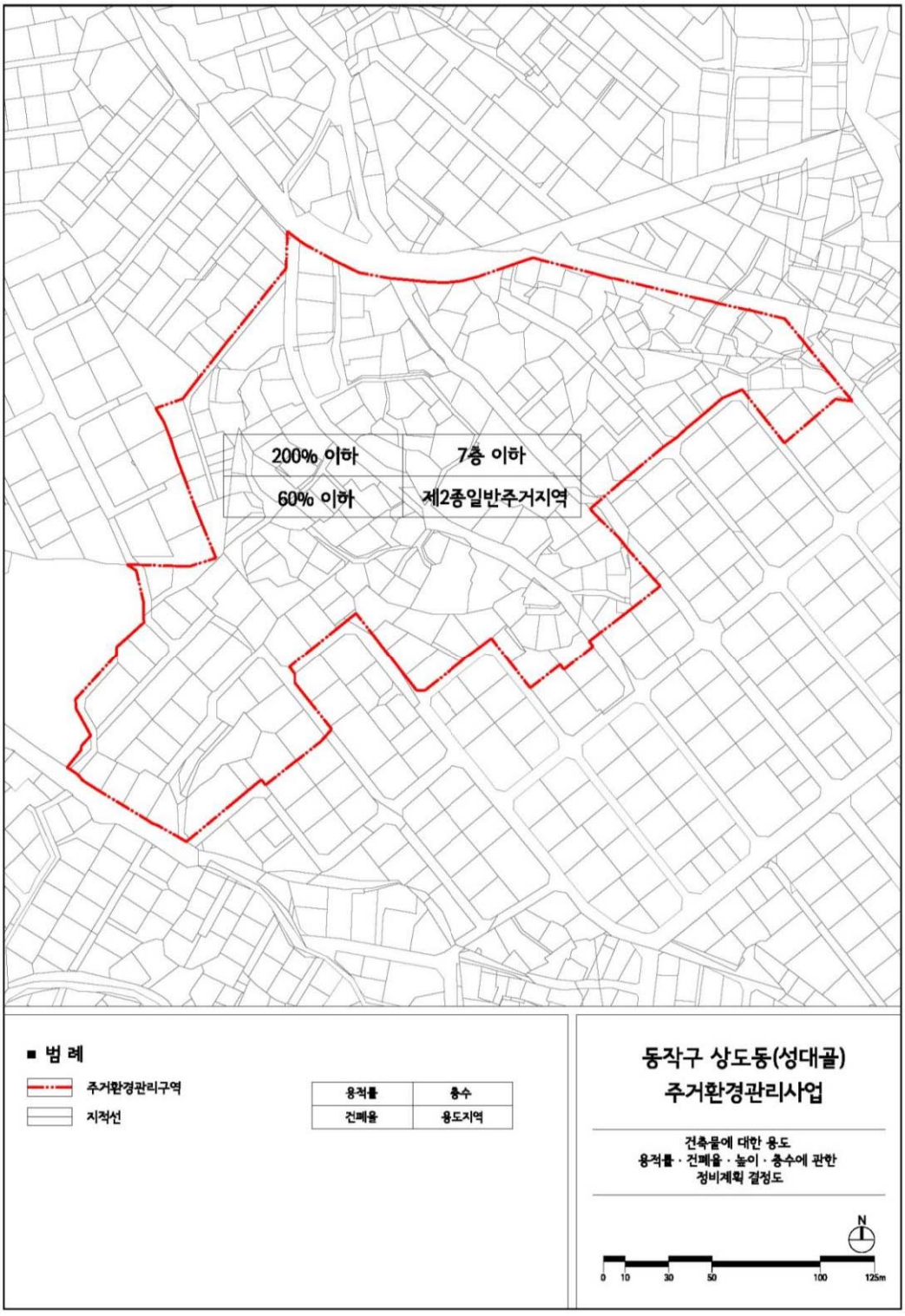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4호

도봉구 방학2동(숲 속 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도봉구 방학2동 605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구역지정사유 : 주민참여를 통해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하고, 주거환경 보전·정비·개량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도봉구 방학2동(숲 속 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도봉구 방학2동(숲 속 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도봉구 방학2동 605번지 일대	-	증)182,004	182,004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82,004	-	182,004	100.0	
주택용지	소계	126,323	-	126,323	69.4	
	주택용지	126,323	-	126,323	69.4	
정비기반시설	소계	19,936	-	19,936	11.0	
	도시계획도로	18,068	-	18,068	9.9	
	공원	1,085	-	1,085	0.6	
	주차장	783	-	783	0.4	
기타시설	소계	12,368	-	12,368	6.8	
	현황도로	12,368	-	12,368	6.8	
임야	소계	23,377	-	23,377	12.8	
	임야	23,377	-	23,377	12.8	

2)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182,004	-	182,004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99,790	-	99,790	54.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82,214	-	82,214	45.2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최고고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	북한산주변	최고 고도지구	강북구 미아1 · 2동, 수유1 · 2 · 5 · 6동 일대 도봉구 도봉1동, 방학2 · 3동, 쌍문1동 일대	20m이하 (완화시 28m이하)	3,557,000	서고제404호 (1990.12.14)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위 치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316	방학동607	방학동602-11	일반도로	-	건고제8호 (1968.1.23.)	토지구획정리사업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286	방학동415	방학동608-17	일반도로	-	서고1제85호 (1973.12.3.)	-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310	방학동614	방학동602-1	일반도로	-	건고제8호 (1968.1.23.)	토지구획정리사업
기정	소로	3	55	6	국지도로	41	방학동601-2	방학동601-5	일반도로	-	건고제8호 (1968.1.23.)	토지구획정리사업
기정	소로	3	56	6	국지도로	28	방학동602-28	방학동602-27	일반도로	-	건고제8호 (1968.1.23.)	토지구획정리사업
기정	소로	3	57	4	국지도로	85	방학동605-1	방학동605-11	일반도로	-	건고제8호 (1968.1.23.)	토지구획정리사업
기정	소로	3	58	6	국지도로	200	방학동609-2	방학동611-5	일반도로	-	건고제8호 (1968.1.23.)	토지구획정리사업
기정	소로	3	59	6	국지도로	138	방학동610-6	방학동607-8	일반도로	-	건고제8호 (1968.1.23.)	토지구획정리사업
기정	소로	3	60	6	국지도로	281	방학동617	방학동604-24	일반도로	-	건고제8호 (1968.1.23.)	토지구획정리사업
기정	소로	3	61	4	국지도로	265	방학동607	방학동603-4	일반도로	-	건고제8호 (1968.1.23.)	토지구획정리사업
기정	소로	3	62	4	국지도로	269	방학동608-19	방학동616-8	일반도로	-	건고제8호 (1968.1.23.)	토지구획정리사업
기정	소로	3	63	6	국지도로	350	방학동609-2	방학동616-26	일반도로	-	건고제8호 (1968.1.23.)	토지구획정리사업
기정	소로	3	64	4	국지도로	268	방학동610-5	방학동617	일반도로	-	건고제8호 (1968.1.23.)	토지구획정리사업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문을 기준으로 작성

나)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	주차장	-	방학동612-28	245.3	-	245.3	도고제2003-55호 (2003.7.30.)	방학제3 공영주차장
기정	-	주차장	노외주차장	방학동600-13	717.9	-	717.9	도고제2005-5호 (2005.1.31.)	방학제4 공영주차장

다)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	공원	어린이공원	방학동611-5	1,084.6	-	1,084.6	건고제8호 (1968.1.23.)	샘말 어린이공원

라)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3개 부문 15개 공정)

구분	세부구분	공정	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	전신주개선	불량전신주 이설, 전신주 외관개선, 공중선 정비	한전주 2개 / 통신주 4개 전신주외관개선 111개
	마을길 조성	포장 개선 및 화단조성	L : 1.2km / B : 6~12m
	불량도로 정비	도로 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	L : 0.7km / B : 4.5~7.4m
	하수 및 우수시설 정비	하수관거 및 배수트렌치 교체	하수관 243m / 트렌치 8개소 28m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CCTV 설치, 비상벨 설치, LED등 교체	CCTV 6개소 / 비상벨 1개소 / LED등 70여개
	쉼터 조성	주변 쉼터 조성, 벤치 설치	252㎡
마을환경정비	담장 정비	목재 담장 정비	52m
	화단 조성	페인트 벽화, 방음벽 개선, 화단조성	89㎡
	소규모 집하장 설치	주민희망지역 소규모 집하장 설치	1개소
	간판정비	통일된 디자인의 간판 교체	124개소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화단 설치, 주차장 조성	적용가능 주택
공동체 거점조성	공동이용시설 설치	공동이용시설 조성	방학동 612-14
	마을입구 조성	마을 초입에 바닥지도, 조형물 등 설치	마을 초입 4개소
	마을알림판 조성	게시판 설치	3개소
	마을기념비 조성	새벽의 집 기념비 설치	1개소

※ 상기 구상(안)은 추후 주민협의, 주민동의,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명 칭	위 치	면 적(㎡)		층수	시행방법	비 고
			부지면적	연면적			
신설	공동이용시설	방학동612-14	174.8	-	-	신축	

※ 설치계획(규모, 시행방법 등)은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결정 예정

5)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대상건축물	정비 · 개량계획	지원계획수립	비 고
551	존치 (신축, 개보수 등)	주택개량·신축비용 융자지원 (서울특별시 주택 개량 융자지원제도 적용)	-

나)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조경(권장사항)

구분	계획내용
지붕	· 평지붕은 전체 면적의 40% 이상 옥상녹화 및 옥상정원 조성 · 지붕상부에 설치되는 설비는 전면가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이 고려된 차폐시설을 설치
외벽	· 원색적 재료 및 과도한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지양 · 재료 고유의 질감과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연재료를 사용토록 하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형태로 조성
담장	· 담장 설치 시 생울타리, 자연석,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하고 옹벽은 최소화 하여 설치 · 조경, 화단 등 낮고 친환경적 담장으로 조성을 권장하며, 옹벽면의 경우 녹화를 권장
방향	· 건축물 배치시 해당 가로에 면하여 주출입구를 형성 · 건축물의 방향(건축물 전면 또는 출입구가 위치하는 방향)은 대지의 방향과 일치시킴 · 건축물의 방향을 고려하여 가로경관의 통일감 및 연속성을 유지
배치	· 이웃 건축물과 나란히 정렬되도록 하여 시각적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

다)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도봉구 방학2동(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182,004	가구1	64,009	방학동 398-29 일대	주택 및 근린생활	60% (관계법령에 따름)	150% (관계법령에 따름)	4층이하 (관계법령에 따름)	제1종 일반주거 지역
			가구2	62,314	방학동 605-27 일대		60% (관계법령에 따름)	200% (관계법령에 따름)	7층이하 (관계법령에 따름)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심의완화 사항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가구는 주거환경관리구역 면적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제외하고 산정함.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도시경관	• 주요 가로에 마을길 조성(시루봉로13, 15, 17길), 골목길 환경개선, 담장정비, 휴게공간 조성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마을 경관 향상을 위한 정비사업 시행
환경보전	• 자연토양 유지, 옥상녹화, 자연자원 개선 등 환경친화적인 지역 조성
재난방지	• 포장 정비시 투수성 포장재 사용, 노후된 하수관거 및 배수트랜치 교체 등 우수유출량 억제 •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보이는 소화기 교육 및 소방통로 확보 훈련 실시

7)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하는 예상세대수	비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도봉구청장	해당사항 없음	-
주택의 보전 · 정비 · 개량	계획 수립 이후	토지등소유자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 고
교육환경 현황	- 대상지 남서측으로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가 인접하여 입지 - 사업대상지의 일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관련법령에 따름	

9)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 시행 계획 : 해당없음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결정(`14.12.8) 이후, 단일 대상구역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10)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주민 스스로 기존주택을 정비 · 개량 · 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11)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없음

• 주민 스스로 기존주택을 정비 · 개량 · 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 고
자연적 감시	-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신주 및 노후 보안등 정비 및 교체계획 수립 - 담장은 주변감시와 골목길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투시형 또는 낮은 높이의 담장 설치를 권장함	
접근통제	- 창문에는 파손이나 훼손이 어려운 재질의 방범창 설치 - 측벽에 노출된 가스배관은 침입도구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방범시설 설치	
영역성 강화	- 우범지역 및 저활용 공지 등에 지역주민을 위한 쌈지공간을 조성하여 영역성 강화 및 활용성 증대 - 통일성 있는 가로 시설물 디자인 계획을 통하여 마을의 영역성 강화	
활동의 활성화	- 우범지대 및 통행이 적은 장소에 화단을 조성하여 활성화 유도 - 커뮤니티시설 조성 및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방범거점 역할 수행을 통한 활동성 강화	
유지관리	- 도로, 쌈지공간, 화단 등 정비되는 기반시설 등의 유지 관리는 주민협의체 (주민공동체 운영회)에서 주도적으로 관리	
방범용 CCTV와 비상벨 설치	- 방범용 CCTV는 주택가에서 범죄취약공간을 중심으로 감시와 효율성 (감시범위, 주변인지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 방범용 CCTV는 위치번호를 표시하여 위험시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 제공	
커뮤니티시설 조성	-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서 방범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	

13)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스스로 기존주택을 정비 · 개량 · 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14)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스스로 기존주택을 정비 · 개량 · 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15)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분	계획내용	비고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구성	• 관련법령에 의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 (예정)	-
마을공동체 운영계획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답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계획 수립 (서울시 : 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등)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계획 중 협정사항의 내용 및 범위 내에서 민간건축물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주민협정으로 정하여 운영	-

1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스스로 기존주택을 정비 · 개량 · 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17)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스스로 기존주택을 정비 · 개량 · 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18)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연번	수종	나무둘레(cm)	본수	활용계획	비고
1	느티나무	300	1	노거수 주변환경 개선 및 쉼터 조성	방학동 산27-7

2.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관련된 자세한 세부내용은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과) 및 도봉구(주택과)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1)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담당자 오정민 / ☎ 02-2133-7258)
   2) 도봉구 주택과(담당자 김권수 / ☎ 02-2091-3513)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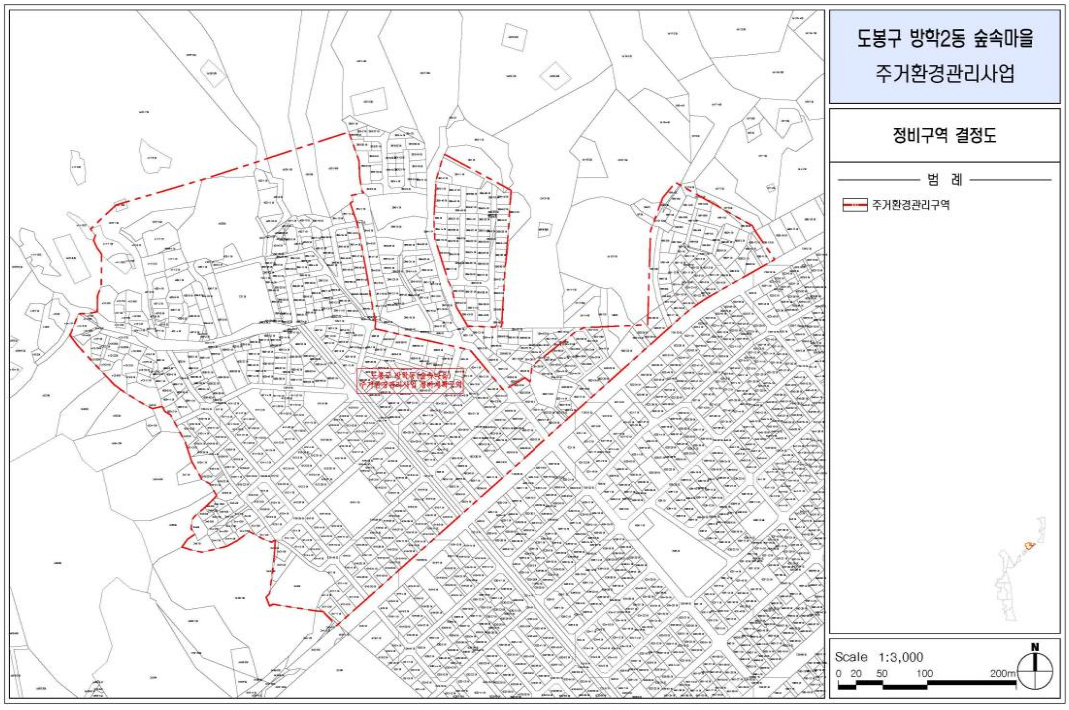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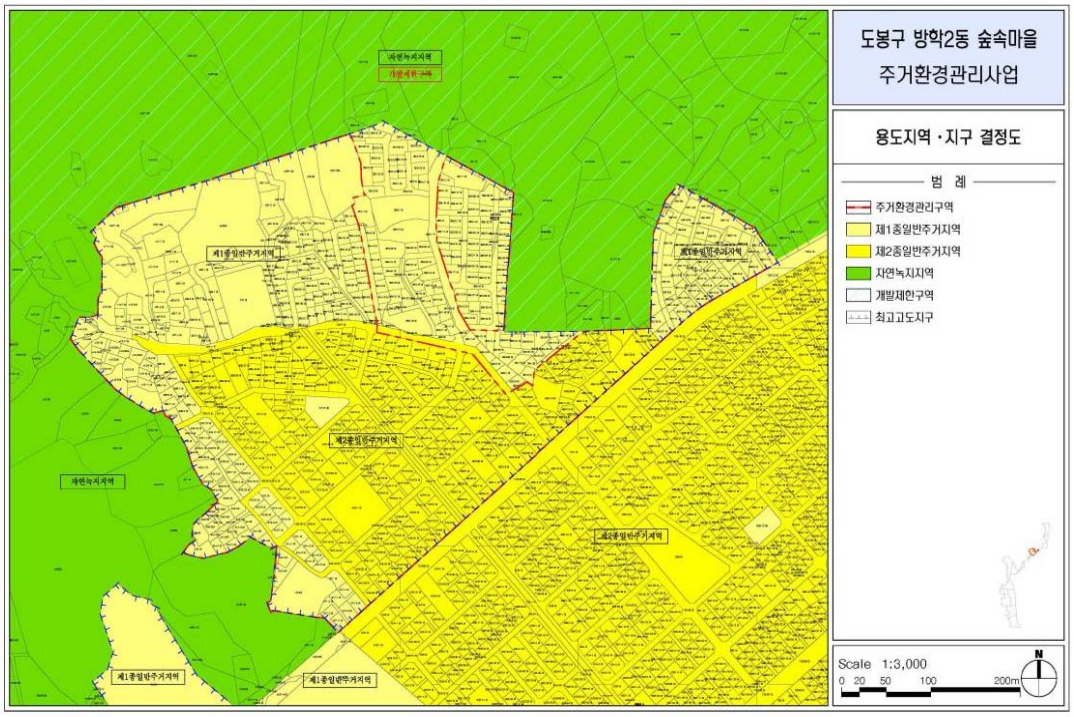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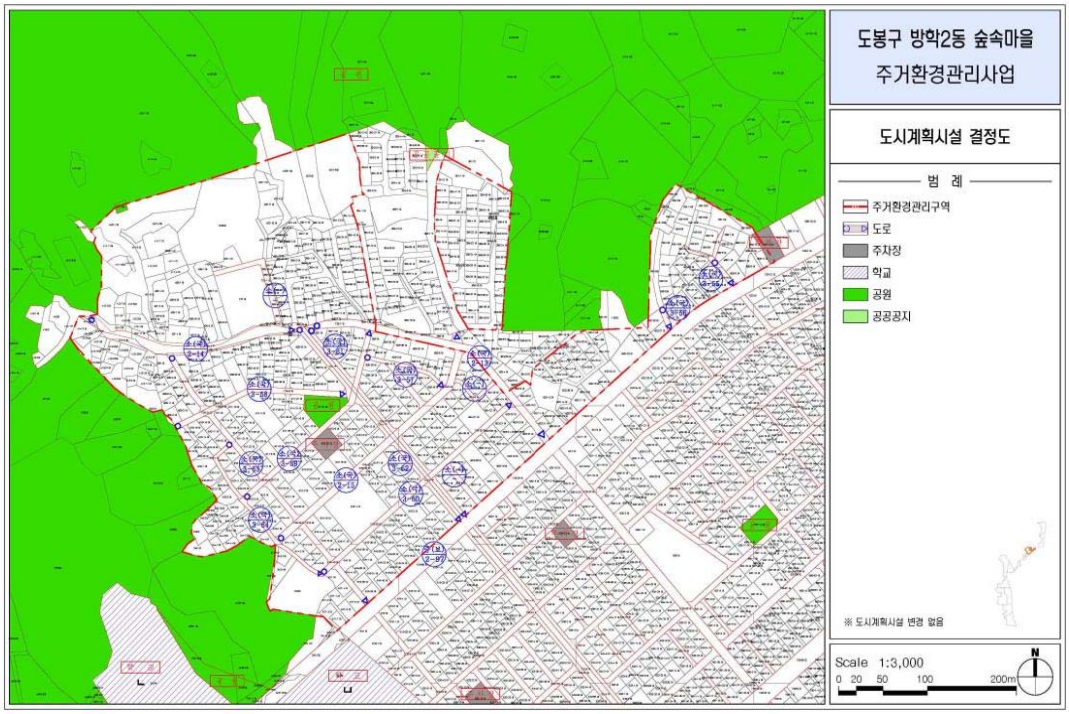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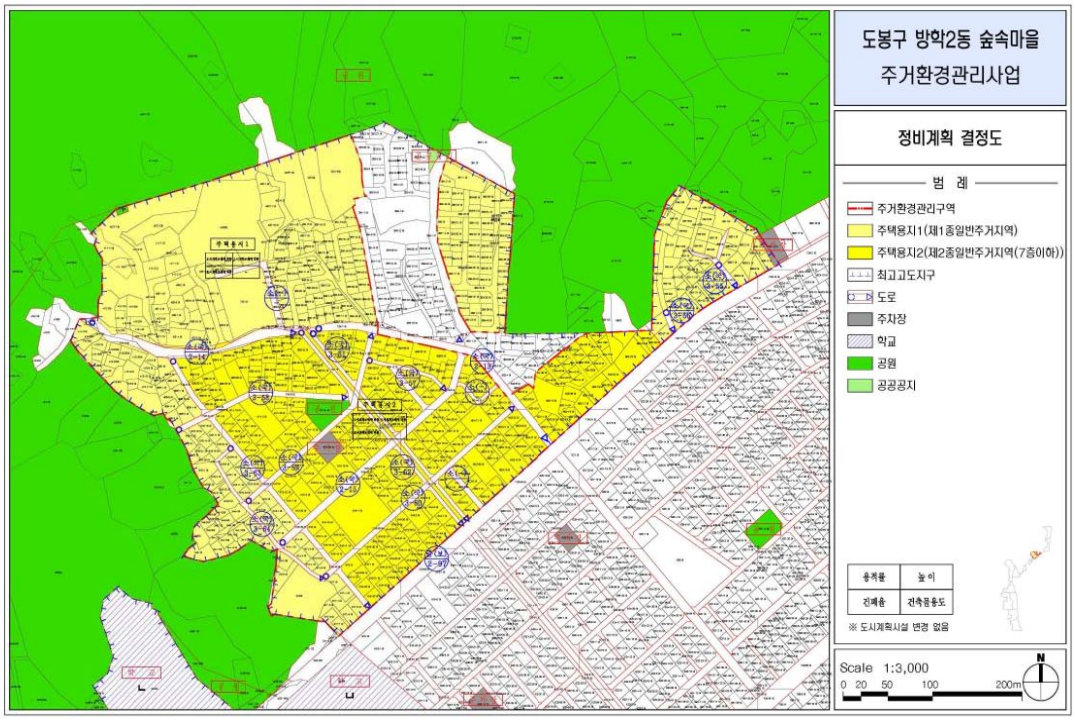

■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종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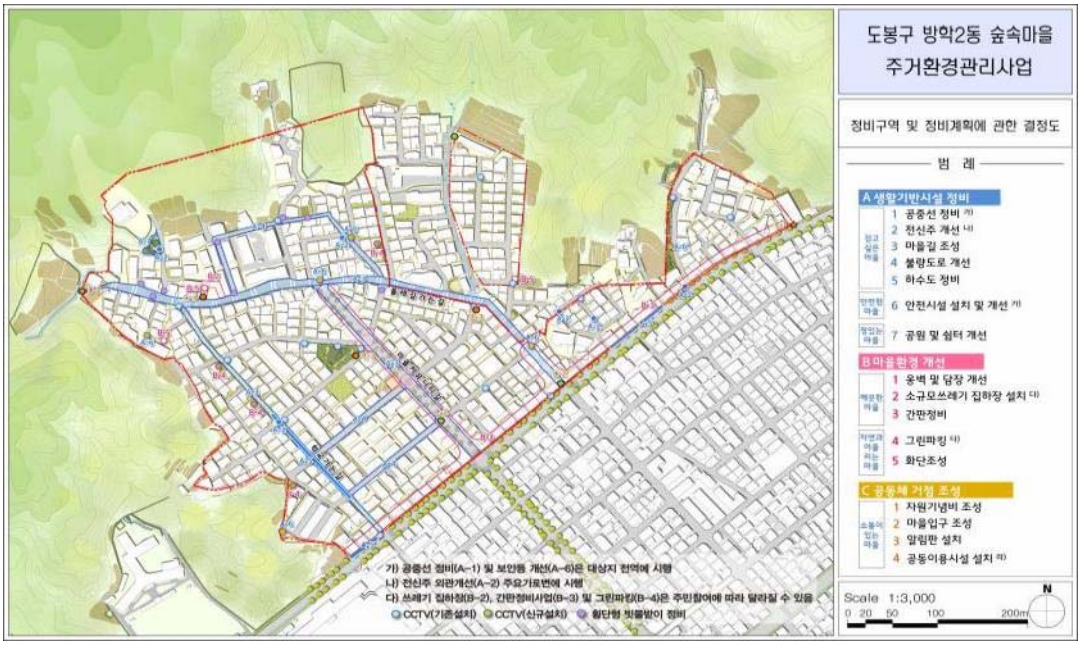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5호**

진관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1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49호(2008.10.1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진관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파발폭포 정비, 화장실 신축 및 산책로 연결 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산97-3번지 일대
3. 면 적 : 1,313,617.9㎡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외 세부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90), 은평구 공원녹지과(☏02-351-8004)에 각각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진관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위치:은평구 진관동 산97-3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313,671.9	32,803.8		39.4	165.4	597	1,313,671.9	33,359.4		71.3	71.3	623.0	시설면적 증) 555.6
기반시설	소계	19,352.1	19,352.1					20,409.2	20,409.2					증) 1,057.1
	도로	15,646.9	15,646.9					16,511.6	16,511.6					증) 864.7
	광장	3,705.2	3,705.2					3,897.6	3,897.6					증) 192.4
조경시설		811.1	811.1				66	283.4	283.4				77.0	감) 527.7
휴양시설		2,907.9	2,907.9				206	2,907.9	2,907.9				224.0	-
유희시설		1,048.6	1,048.6				12	1,048.6	1,048.6				12.0	-
운동시설		3,385.0	3,385.0				73	3,385.0	3,385.0				73.0	-
교양시설		5,254.0	5,254.0				15	5,254.0	5,254.0				15.0	-
편익시설		(30.9)	(30.9)		(30.9)	(30.9)	0	71.3	71.3		71.3	71.3		증) 71.3
관리시설		45.1	45.1	1.0	39.4	165.4	225						222.0	감) 45.1
녹지 및 기타		1,280,868.1						1,280,312.5						감) 555.6
공원시설율(법정40%)		32,803.8÷1,313,671.9×100% = 2.49 %						33,359.4÷1,313,671.9×100% = 2.50 %						
공원건폐율(법정10%)		39.4÷1,313,671.9×100% = 0.0029 %						71.3÷1,313,671.9×100% = 0.0054 %						

나.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건 축 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건 축 물(㎡) 연면적	공작물 (기)	
계				1,313,671.9	32,803.8			39.4	165.4	597			1,313,671.9	33,359.4			71.3	71.3	623.0	증) 555.6
기반 시설	합 계			19,352.1	19,352.1								20,409.2	20,409.2						증) 1,057.1
	도 로			15,646.9	15,646.9								16,511.6	16,511.6						증) 864.7
	광 장	가		3,705.2	3,705.2						가		3,897.6	3,897.6						증) 192.4
		가-1	진관동 산67-2일대	652.5	652.5						가-1	진관동 산67-2일대	2,114.8	2,114.8						증) 1,462.3
		가-2	진관동 산91-7일대	274.1	274.1						가-2	진관동 산91-7일대	274.1	274.1						-
		가-3	진관동 산78-1일대	141.1	141.1						가-3	진관동 산78-1일대	141.1	141.1						-
		가-4	진관동 산97-3일대	1,269.9	1,269.9						가-4									감) 1,269.9
		가-5	진관동 산97-3일대	66.4	66.4						가-5	진관동 산97-3일대	66.4	66.4						-
		가-6	진관동 산97-3일대	254.7	254.7						가-6	진관동 산97-3일대	254.7	254.7						-
		가-7	진관동 산97-3일대	168.5	168.5						가-7	진관동 산97-3일대	168.5	168.5						-
		가-8	진관동 산97-3일대	78.2	78.2						가-8	진관동 산97-3일대	78.2	78.2						-
		가-9	진관동 산97-3일대	87.7	87.7						가-9	진관동 산97-3일대	87.7	87.7						-
		가-10	진관동 산97-3일대	674.4	674.4						가-10	진관동 산97-3일대	674.4	674.4						-
		가-11	진관동 산97-3일대	37.6	37.6						가-11	진관동 산97-3일대	37.6	37.6						-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건 축 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건 축 물(㎡) 연면적	공작물 (기)	
조경 시설	소 계			811.1	811.1					66			283.4	283.4					77	감) 527.7
		나		612.7	612.7						나		85.0	85.0						감) 527.7
	은하폭포	나-1	진관동 산67-2일대	420.1	420.1	RC. 석재				1	나-1									감) 420.1
	산성폭포	나-2	진관동 산68일대	192.6	192.6	RC. 석재				1									1	감) 192.6
	미디어벽천	나-3										진관동 산68일대	85.0	85.0						증) 85.0
	파고라	①	진관동 산97-3일대			목재				20	①	진관동 산97-3일대			목재				20	-
	사각정자	②	"			목재				1	②	"			목재				1	-
	원형파고라	③	"			목재				1	③	"			목재				1	-
	육각정자	④	"			목재				1	④	"			목재				1	-
	8각정자	⑤	"			목재				1	⑤	"			목재				1	-
	목교	⑥	"			목재				3	⑥	"			목재				3	-
	목재데크	⑦	"	198.4	198.4	목재				2	⑦	"	198.4	198.4	목재				2	-
	데크평교	⑧	"			목재				4	⑧	"			목재				4	-
	인공식물섬	⑨	"							1	⑨	"							1	-
	수질정화시설	⑩	"							1	⑩	"							1	-
	조형열주	⑪	"							10	⑪	"							10	-
	상징조형물	⑫	"							1	⑫	"							1	-
	게이트	⑬	"							2	⑬	"							2	-
	수목보호덮개	⑭	"							16	⑭	"							27	증) 11 기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건 축 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건 축 물(㎡) 연면적	공작물 (기)	
휴양 시설	소 계			2,907.9	2,907.9					206			2,907.9	2,907.9					224	증) 18 기
	휴게소	다		2,907.9	2,907.9						다		2,907.9	2,907.9						-
		다-1	진관동 산94일대	201.2	201.2						다-1	진관동 산94일대	201.2	201.2						-
		다-2	진관동 산91-7일대	43.0	43.0						다-2	진관동 산91-7일대	43.0	43.0						-
	휴게소	다-3	진관동 산78-2일대	75.4	75.4						다-3	진관동 산78-2일대	75.4	75.4						-
	휴게소	다-4	진관동 산74-1일대	298.1	298.1						다-4	진관동 산74-1일대	298.1	298.1						-
		다-5	진관동 산74-1일대	81.6	81.6						다-5	진관동 산74-1일대	81.6	81.6						-
		다-6	진관동 산79일대	100.0	100.0						다-6	진관동 산79일대	100.0	100.0						-
		다-7	진관동 산80-2일대	49.0	49.0						다-7	진관동 산80-2일대	49.0	49.0						-
		다-8	진관동 산73일대	96.0	96.0						다-8	진관동 산73일대	96.0	96.0						-
		다-9	진관동 산97-3일대	62.9	62.9						다-9	진관동 산97-3일대	62.9	62.9						-
		다-10	"	320.2	320.2						다-10	"	320.2	320.2						-
		다-11	"	68.2	68.2						다-11	"	68.2	68.2						-
		다-12	"	6.5	6.5						다-12	"	6.5	6.5						-
		다-13	"	90.0	90.0						다-13	"	90.0	90.0						-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건 축 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건 축 물(㎡) 연면적	공작물 (기)	
휴양 시설		다-14	"	562.1	562.1						다-14	"	562.1	562.1						-
		다-15	"	51.6	51.6						다-15	"	51.6	51.6						-
		다-16	"	88.4	88.4						다-16	"	88.4	88.4						-
		다-17	"	58.9	58.9						다-17	"	58.9	58.9						-
		다-18	"	390.0	390.0						다-18	"	390.0	390.0						-
		다-19	"	238.2	238.2						다-19	"	238.2	238.2						-
		다-20	"	26.6	26.6						다-20	"	26.6	26.6						-
	앉음벽	⑮	"							10	⑮	"							10	-
	벤치	⑯	"							170	⑯	"							188	증) 18 기
	사각통석벤치	⑰	"							7	⑰	"							7	-
	통나무의자	⑱	"							16	⑱	"							16	-
	야외탁자	⑲	"							3	⑲	"							3	-
유희 시설	소 계			1,048.6	1,048.6					12			1,048.6	1,048.6					12	-
	어린이놀이터	라		1,048.6	1,048.6						라		1,048.6	1,048.6						-
		라-1	진관동 산97-3일대	330.4	330.4						라-1	진관동 산97-3일대	330.4	330.4						-
		라-2	진관동 산97-3일대	718.2	718.2						라-2	진관동 산97-3일대	718.2	718.2						-
	조합놀이대	⑳								3	⑳								3	-
	흔들말	㉑								2	㉑								2	-
	놀이집	㉒				FRP				3	㉒				FRP				3	-
	돌무더기	㉓				석재				2	㉓				석재				2	-
	장작더미	㉔				목재				2	㉔				목재				2	-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건 축 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건 축 물(㎡) 연면적	공작물 (기)	
운동 시설	소 계			3,385.0	3,385.0					73			3,385.0	3,385.0					73	-
	체력단련장	마		3,385.0	3,385.0						마		3,385.0	3,385.0						-
		마-1	진관동 산91-5일대	45.8	45.8						마-1	진관동 산91-5일대	45.8	45.8						-
		마-2	진관동 산91-4일대	55.9	55.9						마-2	진관동 산91-4일대	55.9	55.9						-
		마-3	진관동 산92-6일대	42.7	42.7						마-3	진관동 산92-6일대	42.7	42.7						-
		마-4	진관동 산91-1일대	58.5	58.5						마-4	진관동 산91-1일대	58.5	58.5						-
		마-5	진관동산76-14일대	459.0	459.0						마-5	진관동산76-14일대	459.0	459.0						-
		마-6	진관동 산97-3일대	271.3	271.3						마-6	진관동 산97-3일대	271.3	271.3						-
		마-7	"	139.3	139.3						마-7	"	139.3	139.3						-
		마-8	"	10.0	10.0						마-8	"	10.0	10.0						-
		마-9	"	8.9	8.9						마-9	"	8.9	8.9						-
		마-10	"	199.6	199.6						마-10	"	199.6	199.6						-
		마-11	"	50.2	50.2						마-11	"	50.2	50.2						-
		마-12	"	534.2	534.2					1	마-12	"	534.2	534.2					1	-
		마-13	"	529.7	529.7					1	마-13	"	529.7	529.7					1	-
		마-14	"	378.0	378.0					1	마-14	"	378.0	378.0					1	-
		마-15	"	159.2	159.2					1	마-15	"	159.2	159.2					1	-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건 축 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건 축 물(㎡) 연면적	공작물 (기)	
운동 시설		마-16	"	242.8	242.8						마-16	"	242.8	242.8						-
		마-17	"	73.5	73.5						마-17	"	73.5	73.5						-
		마-18	"	126.5	126.5						마-18	"	126.5	126.5						-
	체력단련시설	㉕								69	㉕								69	-
교양 시설	소 계			5,254.0	5,254.0					15			5,254.0	5,254.0					15	-
	자연생태 학습장	바	진관동 산93-9일대	5,254.0	5,254.0						바	진관동 산93-9일대	5,254.0	5,254.0						-
	설명판	㉖								15	㉖								15	-
편익 시설	소 계			(30.9)	(30.9)			(30.9)	(30.9)				71.3	71.3			71.3	71.3		증) 71.3
	매 점	㉗	진관동 393 일대	(7.7)	(7.7)	RC. 라멘조		(7.7)	(7.7)											-
	화장실	㉘	진관동 393 일대	(23.2)	(23.2)	RC. 라멘조		(23.2)	(23.2)		사	진관동 393 일대	71.3	71.3	철근 콘크리트조		71.3	71.3		증) 71.3
관리 시설	소 계			45.1	45.1			39.4	165.4	225									228	감) 45.1
	관리동	사	진관동 393 일대	45.1	45.1			39.4	165.4											감) 45.1
	공원둥	㉙								154	㉙								149	감) 5기
	계단	㉚								7	㉚								7	-
	자전거보관대	㉛								20	㉛								20	-
	음수전	㉜								1	㉜								1	-
	램프	㉝								5	㉝								5	-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건 축 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바닥면적	건 축 물(㎡) 연면적	공작물 (기)	
관리 시설	가드레일	㉞								1	㉞								1	-
	그물망휀스	㉟								1	㉟								1	-
	안전휀스	㊱								1	㊱								1	-
	안전난간	㊲								2	㊲								2	-
	수목플랜터	㊳								9	㊳								9	-
	안내판	㊴								24	㊴								26	증) 2 기
	휀스	㊵									㊵									-
녹지	소 계			1,280,868.1									1,280,312.5							감) 555.6
	녹 지		전지역	1,280,868.1								전지역	1,280,312.5							감) 555.6

다. 도 로 조 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변경	합 계				8,698.5 9,154.0	15,646.9 16,511.6				
당초	소로	계			486.3	1,329.6				
당초		3류	1	4.0	62.4	249.5	진입로	공원경계	다-10	
당초		“	2	4.0	87.7	350.9	진입로	가-6	공원경계	
당초		“	3	3.0	75.2	225.6	연결로	가-8	마-11	
당초		“	4	2.0	9.8	19.5	진입로	소로 3-1	공원경계	
당초		“	5	2.0	9.8	19.5	진입로	소로 3-1	공원경계	
당초		“	6	2.0	9.8	19.5	진입로	소로 3-1	공원경계	
당초		“	7	2.0	9.8	19.5	진입로	소로 3-1	공원경계	
당초		“	8	2.0	185.8	371.6	연결로	가-9	가-9	
당초		“	9	1.5	14.5	21.8	진입로	다-10	공원경계	
당초		“	10	1.5	21.5	32.3	진입로	다-10	공원경계	
당초 변경	산책로	계 계			8,212.2 8,667.7	14,317.3 15,182.0				 증)864.7
당초		3류	1	2.5	5.3	13.3	산책로	공원경계	다-15	
당초		“	2	2.5	6.6	16.5	산책로	공원경계	소로 3-3	
당초		“	3	2.0	318.3	636.6	산책로	다-1	가-2	
당초 변경		“ “	4 4	2.0 2.0	532.0 789.7	1,064.0 1579.4	산책로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다-1 다-1	 증)515.4
당초		“	5	2.0	1,648.8	3,297.6	산책로	다-1	마-5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	6	2.0	371.8	743.7	산책로	마-5	다-7	
당초		“	7	2.0	265.5	531.1	산책로	다-7	공원경계	
변경		“	7	2.0	370.9	741.8	산책로	다-7	공원경계	증)210.7
당초		“	8	2	172.4	344.8	산책로	산책로7	다-8	
당초		“	9	2	464.2	928.3	산책로	다-8	가-1	
당초		“	10	2	171.9	343.9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	11	2	16.9	33.9	산책로	가-11	다-20	
당초		“	12	1.8	22.8	41	산책로	소로3-2	공원경계	
당초		“	13	1.5	515.7	773.6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4	
당초		“	14	1.5	544.5	816.8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13	
당초		“	15	1.5	125.2	187.8	산책로	산책로14	산책로13	
당초		“	16	1.5	42.5	63.8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14	
당초		“	17	1.5	76.7	115.1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14	
당초		“	18	1.5	51	76.5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14	
당초		“	19	1.5	50.6	75.9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14	
당초		“	20	1.5	362.2	543.4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5	
당초		“	21	1.5	27.4	41.1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6	
당초		“	22	1.5	248.6	373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5	
당초	산책로	“	23	1.5	28.2	42.3	산책로	가-3	산책로5	
당초		“	24	1.5	68.7	103.1	산책로	산책로25	공원경계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	25	1.5	288.6	432.9	산책로	산책로24	산책로5	
당초		“	26	1.5	118.4	177.6	산책로	산책로6	다-5	
당초		“	27	1.5	251.1	376.6	산책로	다-8	공원경계	
변경		“	27	1.5	297.8	446.7	산책로	다-8	공원경계	증)70.1
당초		“	28	1.5	194.4	291.6	산책로	공원경계	다-8	
변경		“	28	1.5	234.0	351.0	산책로	공원경계	다-8	증)59.4
당초		“	29	1.5	216.5	324.8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9	
변경		“	29	1.5	222.6	333.9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9	증)9.1
당초		“	30	1.5	29.2	43.8	산책로	가-5	다-9	
당초		“	31	1.5	21.7	32.6	산책로	다-9	산책로32	
당초		“	32	1.5	4.6	6.9	산책로	산책로 31	산책로 33	
당초		“	33	1.5	65.5	98.3	산책로	공원 내	공원 내	
당초		“	34	1.5	22.4	33.7	산책로	산책로 33	마-6	
당초		“	35	1.5	151.7	227.5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	36	1.5	24.8	37.2	산책로	공원경계	소로 3-2	
당초		“	37	1.5	11.1	16.6	산책로	소로 3-2	공원경계	
당초		“	38	1.5	5.5	8.3	산책로	산책로 12	다-13	
당초		“	39	1.5	89.4	134.1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 내	
당초		“	40	1.5	64.0	96.0	산책로	공원 내	다-14	
당초		“	41	1.5	108.7	163.0	산책로	공원경계	라-2	
당초		“	42	1.5	296.6	444.9	산책로	다-18	공원경계	
당초		“	43	1.5	100.5	150.8	산책로	소로 3-3	소로 3-3	
당초		“	44	1.5	6.7	10.1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43	
당초		“	45	1.0	1.5	1.5	산책로	마-7	소로 3-2	
당초		“	46	1.0	1.5	1.5	산책로	마-7	소로 3-2	

조성계획도(변경전)

진 관 근 린 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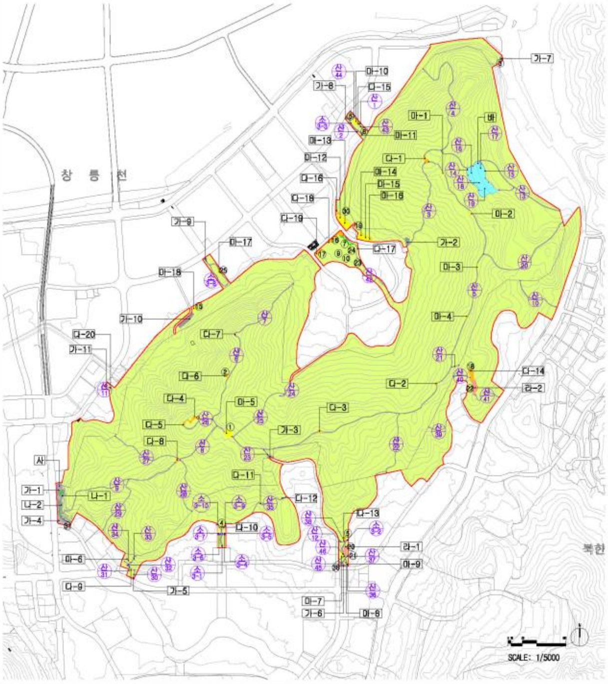

■ 범 례

구 분	기 호	시 설	단위	규 모	비 고
기반시설		도로	m	15,646.9	
	가-1	광장-1	m²	652.5	
	가-2	광장-2	m²	274.1	
	가-3	광장-3	m²	141.1	
	가-4	광장-4	m²	1,269.9	
	가-5	광장-5	m²	66.4	
	가-6	광장-3	m²	254.7	
	가-7	광장-3	m²	168.5	
	가-8	광장-3	m²	78.2	
	가-9	광장-3	m²	87.7	
	가-10	광장-3	m²	674.4	
	가-11	광장-3	m²	37.8	
		소 계	m²	19,352.1	
조경시설	나-1	온라목교	m²	420.1	
	나-2	신설목교	m²	192.6	
	①	파고라	ea	20	
	②	사각정자	ea	1	
	③	원형파고라	ea	1	
	④	육각정자	ea	1	
	⑤	8각정자	ea	1	
	⑥	목교	ea	3	
	⑦	목재데크	m²	198.4	
	⑧	데크펑고	ea	4	
	⑨	인공식물섬	ea	1	
	⑩	수질정화시설	ea	1	
	⑪	조형열주	ea	10	
	⑫	상징조형물	ea	1	
	⑬	게이트	ea	2	
	⑭	수목보호덮개	ea	16	
		소 계	m²	811.1	
휴양시설	다-1	휴게소-1	m²	201.2	
	다-2	휴게소-2	m²	43.0	
	다-3	휴게소-3	m²	75.4	
	다-4	휴게소-4	m²	298.1	
	다-5	휴게소-5	m²	81.6	
	다-6	휴게소-6	m²	100.0	
	다-7	휴게소-7	m²	49.0	
	다-8	휴게소-8	m²	96.0	
	다-9	휴게소-9	m²	62.9	
	다-10	휴게소-10	m²	320.2	
	다-11	휴게소-11	m²	68.2	
	다-12	휴게소-12	m²	6.5	
	다-13	휴게소-13	m²	90.0	
	다-14	휴게소-14	m²	562.1	
	다-15	휴게소-15	m²	51.6	
	다-16	휴게소-16	m²	88.4	
	다-17	휴게소-17	m²	58.9	
	다-18	휴게소-18	m²	390.0	
	다-19	휴게소-19	m²	238.2	
	다-20	휴게소-20	m²	26.6	
	⑮	앉음벽	ea	10	
	⑯	벤치	ea	170	
		소 계	m²	2,907.9	

구 분	기 호	시 설	단위	규 모	비 고
	⑰	사각통석벤치	ea	7	
	⑱	등나무의자	ea	16	
	⑲	야외탁자	ea	3	
유희시설	라-1	어린이놀이터-1	m²	330.4	
	라-2	어린이놀이터-2	m²	718.2	
	⑳	조합놀이대	ea	3	
	㉑	흔들말	ea	2	
	㉒	놀이집	ea	3	
	㉓	놀무더기	ea	2	
	㉔	장작더미	ea	2	
		소 계	m²	1,048.6	
운동시설	마-1	체력단련장-1	m²	45.8	
	마-2	체력단련장-2	m²	55.9	
	마-3	체력단련장-3	m²	42.7	
	마-4	체력단련장-4	m²	58.5	
	마-5	체력단련장-5	m²	459.0	
	마-6	체력단련장-6	m²	271.3	
	마-7	체력단련장-7	m²	139.3	
	마-8	체력단련장-8	m²	10.0	
	마-9	체력단련장-9	m²	8.9	
	마-10	체력단련장-10	m²	199.6	
	마-11	체력단련장-11	m²	50.2	
	마-12	체력단련장-12	m²	534.2	
	마-13	체력단련장-13	m²	529.7	
	마-14	체력단련장-14	m²	378.0	
	마-15	체력단련장-15	m²	159.2	
	마-16	체력단련장-16	m²	242.8	
	마-17	체력단련장-17	m²	73.5	
	마-18	체력단련장-18	m²	126.5	
	㉕	체력단련시설	ea	69	
		소 계	m²	3,385.0	
교양시설	바	자연생태학습장	m²	5254.0	
	㉖	설명판	ea	15	
		소 계	m²	5254.0	
편익시설	㉗	매 점	m²	(7.7)	
	㉘	화장실	m²	(23.2)	
		소 계	m²	(30.9)	
관리시설	사	관리동	m²	45.1	
	㉙	공원등	ea	154	
	㉚	계단	ea	7	
	㉛	자전거보관대	ea	20	
	㉜	음수전	ea	1	
	㉝	펌프	ea	5	
	㉞	가드레일	ea	1	
	㉟	그물망펜스	ea	1	
	㊱	안전펜스	ea	1	
	㊲	안전난간	ea	2	
	㊳	수목플랜터	ea	9	
	㊴	안내판	ea	24	
	㊵	펜 스	ea	-	
		소 계	m²	45.1	
녹지 및 기타		녹 지	m²	1,260,866.1	
합 계			m²	1,313,871.9	

조성계획도(변경후)

진 관 근 린 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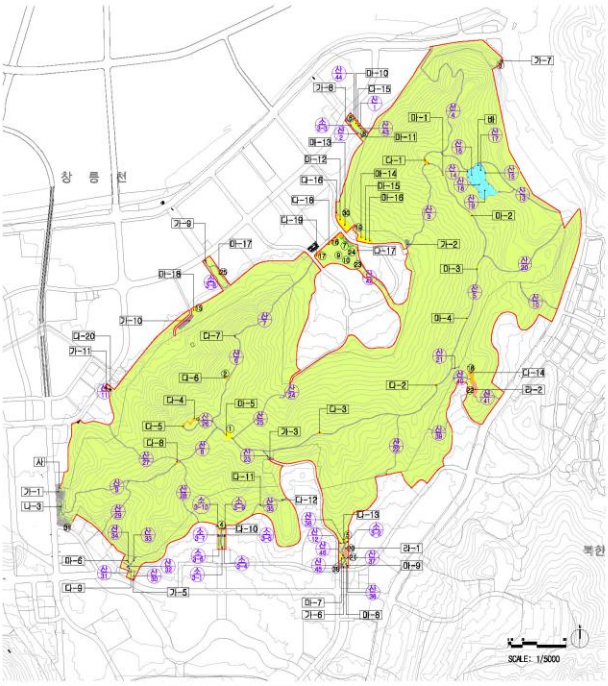

■ 범 례

구 분	기 호	시 설	단위	규 모	비 고
기반시설		도로	m	20,409.2	증) 884.7
	가-1	광장-1	m²	2,114.8	증)1,462.3
	가-2	광장-2	m²	274.1	
	가-3	광장-3	m²	141.1	
	가-4	광장-4	m²	-	삭제)1,269.9
	가-5	광장-5	m²	66.4	
	가-6	광장-3	m²	254.7	
	가-7	광장-3	m²	168.5	
	가-8	광장-3	m²	78.2	
	가-9	광장-3	m²	87.7	
	가-10	광장-3	m²	674.4	
	가-11	광장-3	m²	37.6	
		소 계	m²	19,874.9	증)555.6
조경시설	나-1	온라목교	m²	-	삭제)420.1
	나-2	신설목교	m²	-	삭제)192.6
	나-3	미디어벽천	m²	85.0	신설
	①	파고라	ea	20	
	②	사각정자	ea	1	
	③	원형파고라	ea	1	
	④	육각정자	ea	1	
	⑤	8각정자	ea	1	
	⑥	목교	ea	3	
	⑦	목재데크	m²	198.4	
	⑧	데크펑고	ea	4	
	⑨	인공식물섬	ea	1	
	⑩	수질정화시설	ea	1	
	⑪	조형열주	ea	10	
	⑫	상징조형물	ea	1	
	⑬	게이트	ea	2	
	⑭	수목보호덮개	ea	27	증)11ea
		소 계	m²	283.4	감)527.7
휴양시설	다-1	휴게소-1	m²	201.2	
	다-2	휴게소-2	m²	43.0	
	다-3	휴게소-3	m²	75.4	
	다-4	휴게소-4	m²	298.1	
	다-5	휴게소-5	m²	81.6	
	다-6	휴게소-6	m²	100.0	
	다-7	휴게소-7	m²	49.0	
	다-8	휴게소-8	m²	96.0	
	다-9	휴게소-9	m²	62.9	
	다-10	휴게소-10	m²	320.2	
	다-11	휴게소-11	m²	68.2	
	다-12	휴게소-12	m²	6.5	
	다-13	휴게소-13	m²	90.0	
	다-14	휴게소-14	m²	562.1	
	다-15	휴게소-15	m²	51.6	
	다-16	휴게소-16	m²	88.4	
	다-17	휴게소-17	m²	58.9	
	다-18	휴게소-18	m²	390.0	
	다-19	휴게소-19	m²	238.2	
	다-20	휴게소-20	m²	26.6	
	⑮	앉음벽	ea	10	
	⑯	벤치	ea	188	증)18ea
	⑰	사각통석벤치	ea	7	

구 분	기 호	시 설	단위	규 모	비 고
	⑱	등나무의자	ea	16	
	⑲	야외탁자	ea	3	
		소 계	m²	2,907.9	
유희시설	라-1	어린이놀이터-1	m²	330.4	
	라-2	어린이놀이터-2	m²	718.2	
	⑳	조합놀이대	ea	3	
	㉑	흔들말	ea	2	
	㉒	놀이집	ea	3	
	㉓	놀무더기	ea	2	
	㉔	장작더미	ea	2	
		소 계	m²	1,048.6	
운동시설	마-1	체력단련장-1	m²	45.8	
	마-2	체력단련장-2	m²	55.9	
	마-3	체력단련장-3	m²	42.7	
	마-4	체력단련장-4	m²	58.5	
	마-5	체력단련장-5	m²	459.0	
	마-6	체력단련장-6	m²	271.3	
	마-7	체력단련장-7	m²	139.3	
	마-8	체력단련장-8	m²	10.0	
	마-9	체력단련장-9	m²	8.9	
	마-10	체력단련장-10	m²	199.6	
	마-11	체력단련장-11	m²	50.2	
	마-12	체력단련장-12	m²	534.2	
	마-13	체력단련장-13	m²	529.7	
	마-14	체력단련장-14	m²	378.0	
	마-15	체력단련장-15	m²	159.2	
	마-16	체력단련장-16	m²	242.8	
	마-17	체력단련장-17	m²	73.5	
	마-18	체력단련장-18	m²	126.5	
	㉕	체력단련시설	ea	69	
		소 계	m²	3,385.0	
교양시설	바	자연생태학습장	m²	5,254.0	
	㉖	설명판	ea	15	
		소 계	m²	5,254.0	
편익시설	사	화장실	m²	71.3	신설
	㉗	매 점	m²	-	삭제)(7.7)
	㉘	화장실	m²	-	삭제)(23.2)
		소 계	m²	71.3	증)71.3
관리시설	사	관리동	m²	-	삭제)45.1
	㉙	공원등	ea	149	감)5ea
	㉚	계단	ea	7	
	㉛	자전거보관대	ea	20	
	㉜	음수전	ea	1	
	㉝	펌프	ea	5	
	㉞	가드레일	ea	1	
	㉟	그물망펜스	ea	1	
	㊱	안전펜스	ea	1	
	㊲	안전난간	ea	2	
	㊳	수목플랜터	ea	9	
	㊴	안내판	ea	26	증)2ea
		소 계	m²	-	감)45.1
녹지 및 기타		녹 지	m²	1,260,312.5	감)555.6
합 계			m²	1,313,871.9	

부분조성계획도(변경전)

진 관 근 린 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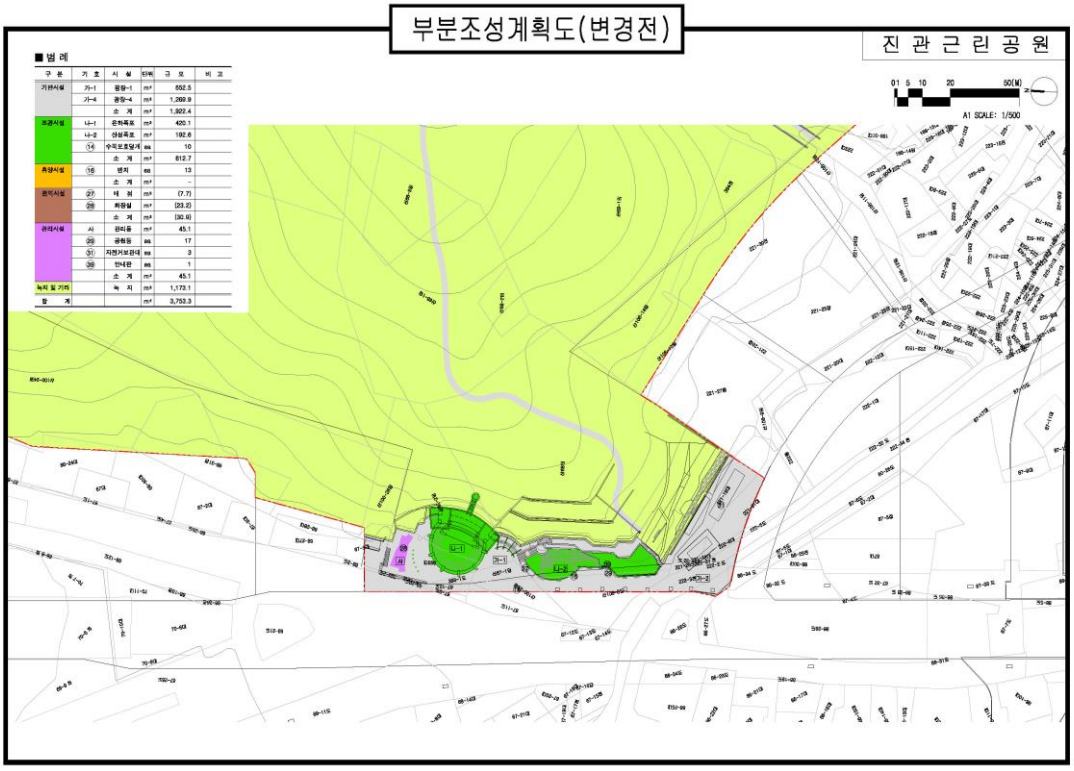

부분조성계획도(변경후)

진 관 근 린 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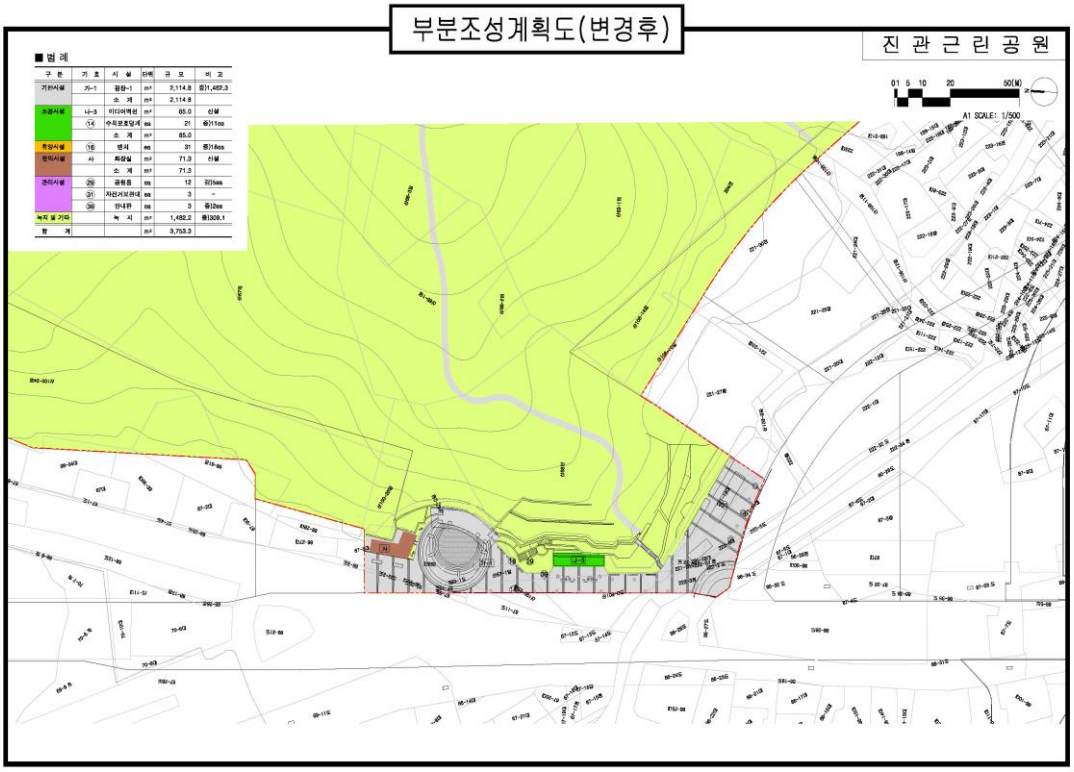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18호(2013.7.11.)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70호(2013.12.31.)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0호(2015. 5.14.), 제2015-193호(2015. 7. 2.), 제2015-345호(2015.11. 5.), 제2017-57(2017. 2.23.)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중구 만리동2가 218-105~마포구 아현동 87-6간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중구 만리동2가 218-105 ~ 마포구 아현동 87-6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2) 명칭 : 만리2주택재개발구역 외 도로(소로3-000호) 신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소로3-000호 : 폭 6m, 연장 129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명 : 만리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정근
2)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1가 53-8번지 5층 503호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7.31.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9.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1)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편입		권리종류	성명	주소	
계			7,857.2	947.7					
1	중구 만리동2가 37-31	도	4.9	4.9	서울특별시	-	-	-	
2	중구 만리동2가 42-4	수	347.7	347.7	서울특별시	-	-	-	
3	중구 만리동2가 218-124	수	216.6	216.6	서울특별시	-	-	-	
4	마포구 아현동 87-6	수	518.0	102.9	서울특별시	-	-	-	
5	마포구 아현동 87-7	수	6,768.0	273.6	서울특별시	-	-	-	
6	마포구 아현동 87-62	대	2.0	2.0	만리2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	-	

2) 사용할 토지 또는 시설물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37-22
- 사용면적 : 43.06㎡
- 사 유 : 도로 및 시설물(구조물)의 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재개발 부지 내 옹벽 및 도로부지의 무상사용

사.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기부채납시설

위 치	편입면적	기부채납	비고
중구 만리동2가 218-105~ 마포구 아현동 87-6	947.7㎡	○	B=6m, L=129m

아. 관계서류 : 생략(서울특별시청 임대주택과에 비치)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7호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22호(2005.3.10.)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4.13.)로 정비구역지정 결정, 종로구고시 제2007-32호(2007.7.12.)로 구역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71호(2008.3.13.)로 변경지정, 종로구고시 제2009-15호(2009.3.19.)로 돈의문도시환경정비계획·구역지정변경(경미한 변경), 종로구고시 제2013-23호(2013.3.14.)로 돈의문도시환경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종로구고시 제2013-76호(2013.10.24.)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종로구고시 제2014-35호(2014.5.15.)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경미한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9호(2015.6.11.)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3호(2016.9.8.)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1구역)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호(2017.1.12.)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1호(2017.3.30.)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0호(2017.04.20.)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63호(2017.5.11.)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4호(2017.6.15.)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경미한변경)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종로구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지 구 명	유 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종로구 교남동 62-1 일대	167,844.4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심기능 및 노후·불량한 주거기능의 종합적 개선을 통한 직주근접형 도심 커뮤니티 공간 조성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돈의문 1		돈의문 2		돈의문 3		비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 계		160,046.2	100.0	144,400.4	100.0	6,801.4	100.0	8,844.4	100.0	
택지(획지)	계	112,316.0	70.1	100,405.1	69.5	5,510.1	81.0	6,400.8	72.4	
	주택용지	95,648.8	59.7	95,648.8	66.2	-	-	-	-	
	종교시설	1,671.8	1.0	1,671.8	1.2	-	-	-	-	
	상업업무	14,995.4	9.4	3,084.5	2.1	5,510.1	81.0	6,400.8	72.4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47,730.2	29.9	43,995.3	30.5	1,291.3	19.0	2,443.6	27.6	
	공원	7,194.5	4.5	6,360.5	4.4	834.0	12.3	-	-	
	녹지	1,043.0	0.6	1,043.0	0.7	-	-	-	-	
	도로	26,839.0	16.8	24,061.3	16.7	457.3	6.7	2,320.4	26.2	
	공공공지	123.2	0.1	-	0.0	-	-	123.2	1.4	
	광장	594.5	0.4	594.5	0.4	-	-	-	-	
	공공청사	2,893.5	1.8	2,893.5	2.0	-	-	-	-	
	문화시설	9,042.5	5.7	9,042.5	6.3	-	-	-	-	

※ 167,844.4㎡(지구면적) - 7,718.6㎡(존치건물) - 79.6㎡(소로2-102호선 인접 존치부지) = 160,046.2㎡

2)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5) 교통계획(변경없음)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변경)인가전에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추진
  - 새문안로~종로구간 버스전용차로 계획을 확인하여 추후 교통처리계획에 반영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면 적(㎡)	사업방식
총 계			167,844.4	
돈의문	촉진구역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152,198.6	도시환경 정비사업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6,801.4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	8,844.4	

8)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계획(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없음)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계획(해당없음)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1) 돈의문1재정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변경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원	152,198.6	

나)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나)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① 도로(변경없음)
② 공원(변경없음)
③ 녹지(변경없음)
④ 광장(변경없음)
⑤ 공공청사(변경없음)
⑥ 문화시설(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정	①	문화시설	-	신문로2가 6 일원	9,042.5	

※ 문화시설(토지 및 시설물)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조성 및 관리함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및 획지		정비계량계획(동)			
	명 칭	위 치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철거후 신축	철거후 이주
기정	돈의문1 구역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원	152,198.6	-	-	880	57	817	6
변경				-	-	880	56	818	6

• 변경사유 : 문화시설내 존치건축물 동수 변경

②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아)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본 사업지구 전체는 주거지 및 상업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현황 없음

(자) 가구 및 획지에 관한계획(해당사항 없음)

(차) 환경성검토결과(변경없음)

(카)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변경)인가전에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할 것(변경없음)

- 박물관마을 계획시 무장애설계 및 방재계획
- 새문안로~종로구간 버스전용차로 계획을 확인하여 추후 교통처리계획에 반영

5.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외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없음

6.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도서 참조 : 생략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19), 종로구청 도시개발과(☏02-2148-269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7. 지형도면의 작성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형도면

■ 재정비촉진지구 및 구역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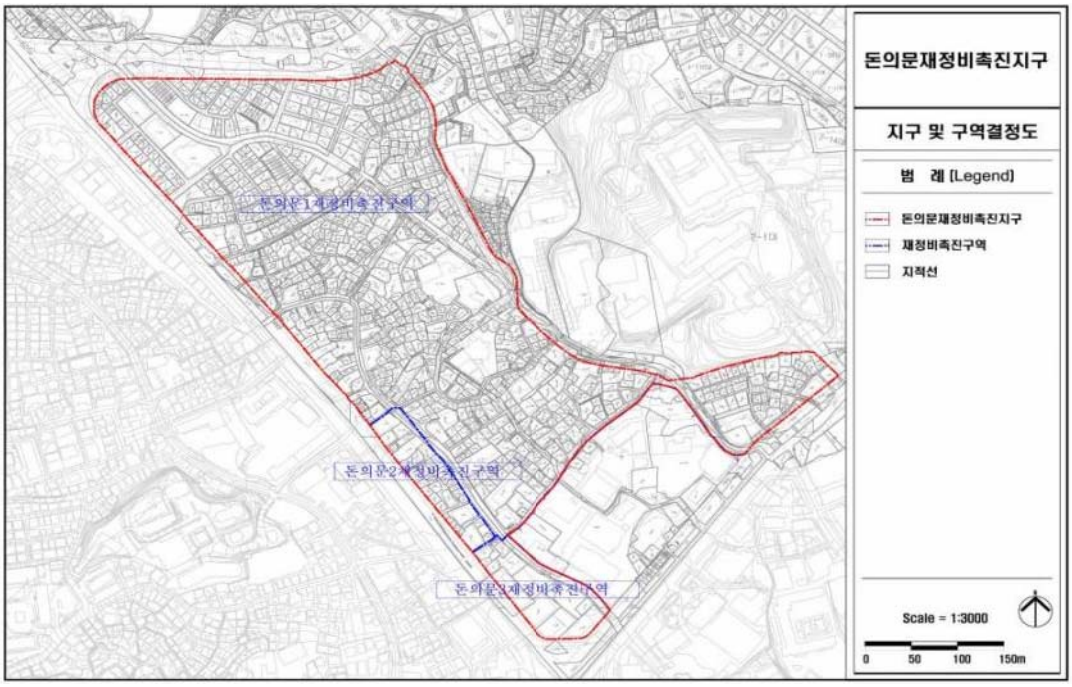

■ 지형도면고시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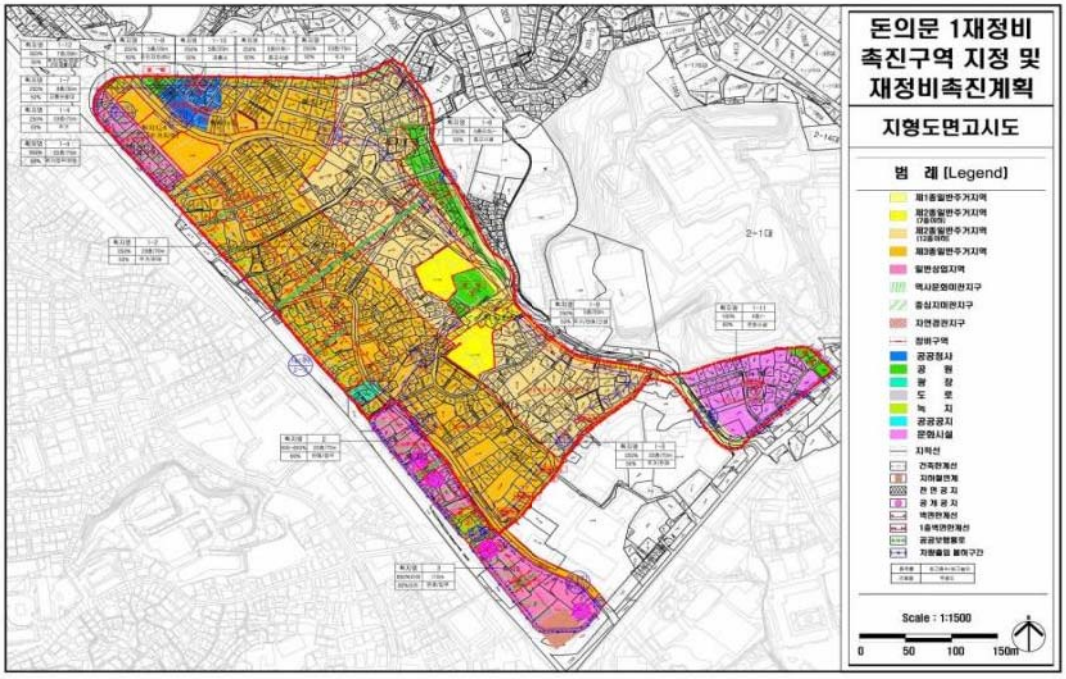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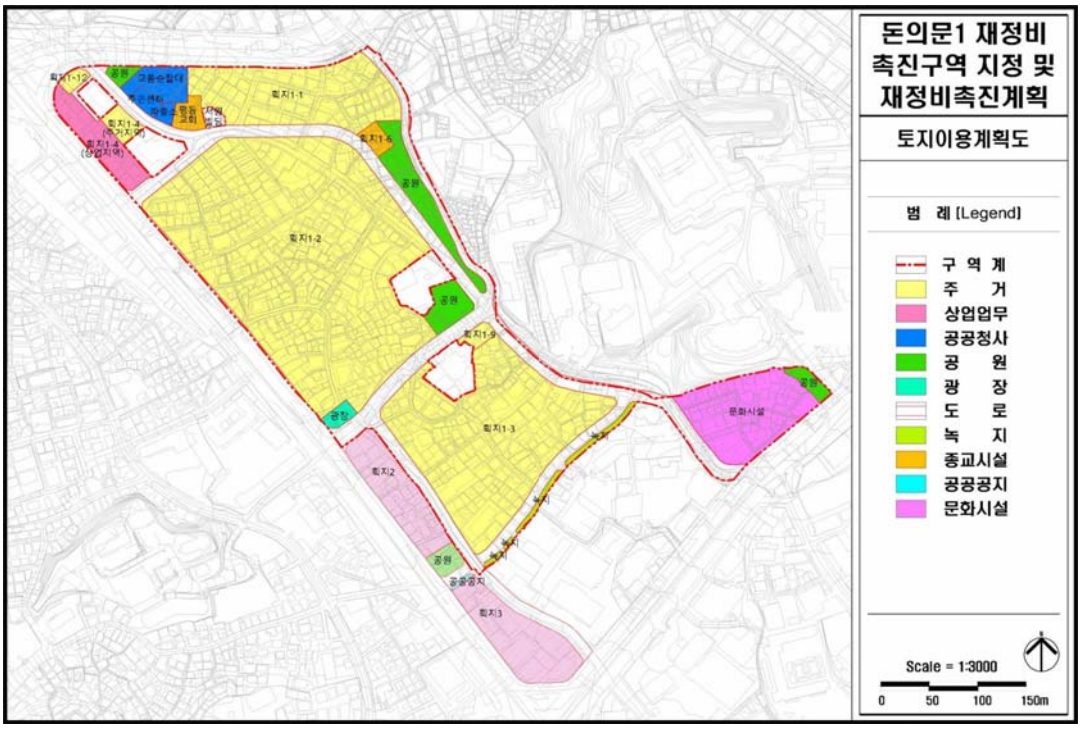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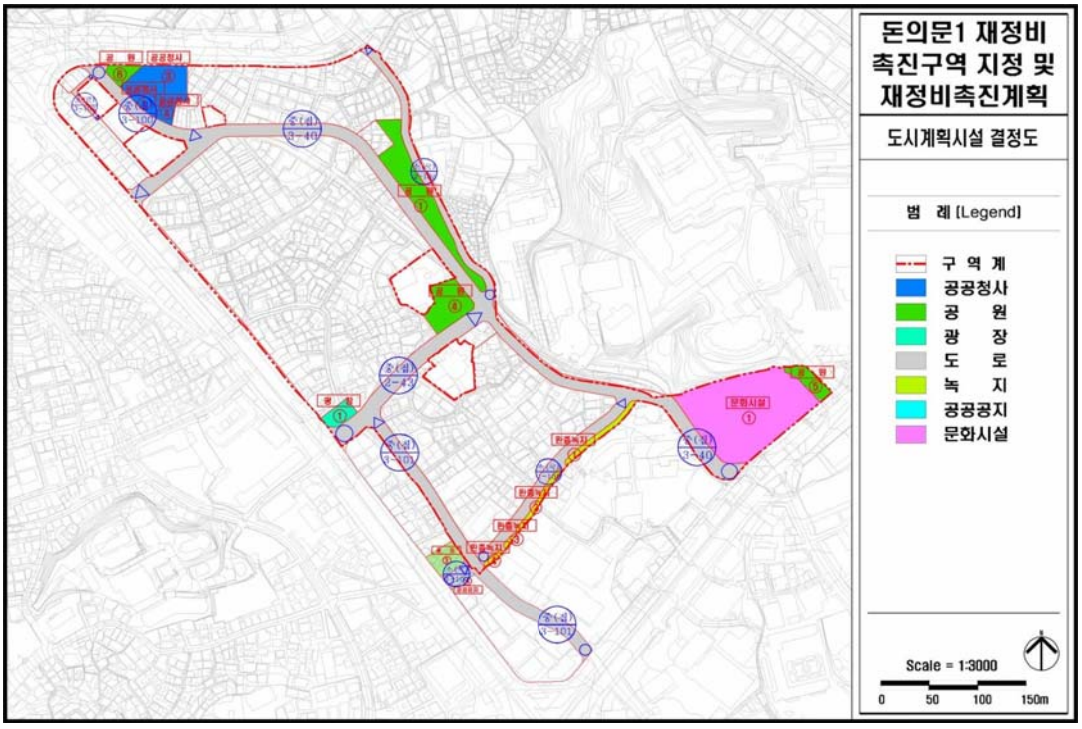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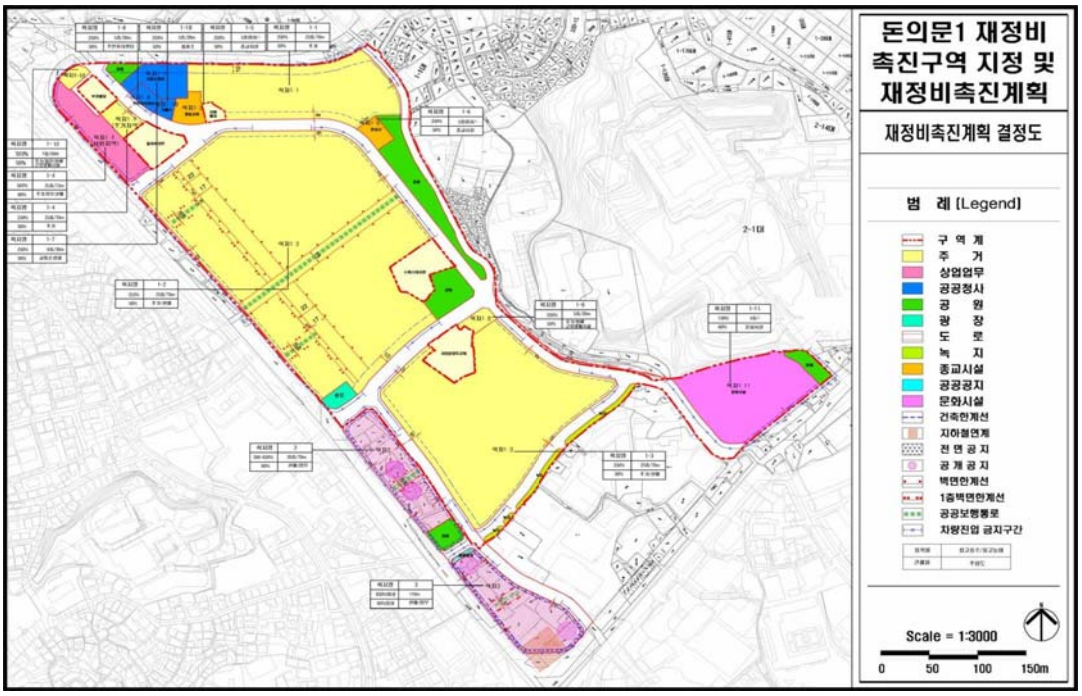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8호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정비구역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제7항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 3개 구역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

<table>
<tr><th>연번</th><th>구역해제 현황</th></tr>
<tr><td>1</td><td>□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table>
<tr><th>구분</th><th>구역 번호</th><th>동명</th><th>지번</th><th>면적(ha)</th><th>계획 용적률</th><th>건폐율</th><th>층수</th><th>추진 단계</th><th>주택 유형</th><th>예정구역지정일</th></tr>
<tr><td>기정</td><td>1</td><td>상계동</td><td>1050-2</td><td>2.3</td><td>190</td><td>60</td><td>7</td><td>1</td><td>단독</td><td>2006.3.23.
(서고시 2006-95호)</td></tr>
<tr><td>변경</td><td colspan="10">해 제</td></tr>
</table></td></tr>
</table>

연번	구역해제 현황

1

□ 정비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방식	면 적(㎡)	정비구역(변경)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상계1 주택재건축구역	노원구 상계동 1050-2 일대	주택재건축	22,641	2012.4.26. (노원구고시제2012-22호)
변경	해 제				

□ 정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결정 구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합 계		22,641	100.0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2,708	12.0	
		도 로	1,708	7.5	
		소공원	1,000	4.4	
	택 지 (획지)	소 계	19,933	88.0	
		획지1	19,049	84.1	공동주택
		획지2	884	3.9	종교시설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건축시설계획(폐지)

결정 구분	구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기정	상계1주택재 건축구역	19,933	획지1 (공동 주택)	19,049	상계동 1050-2	공동주택	30이하	218.8	최고18층이하	
			획지2 (종교 시설)	884	상계동 1048-14	종교시설	관계 법령에 따름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2

□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기정	9	역촌동	2-45	3.6	210	50	평균 15층	2	단독	2006.3.23. (서고시 2006-95호)
변경	해 제									

□ 정비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방식	면 적(㎡)	정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역촌2 주택재건축구역	은평구 역촌동 2-45 일대	주택재건축	35,919.9	2015.1.22. (서고시2015-16호)
변경	해 제				

연번	구역해제 현황

2

□ 정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결정 구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합계		35,919.9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980.4	13.9	
		도 로	3,180.4	8.9	
		공 원	1,800.0	5.0	어린이공원
	획지	소 계	30,939.5	86.1	
		획지1	20,075.7	55.9	
		획지2	10,863.8	30.2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건축시설계획(폐지)

결정 구분	구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정비	예정 법정		
기정	역촌2주택 재건축구역	35,919.9	획지1	20,075.7	역촌동 2-45 번지	공동주택	32 이하	250 이하	272.92	64m이하 최고19층 (평균15층)	
			획지2	10,863.8					–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3

□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기정	2	오류동	241-2	2.2	190	60	7층	1	단독	2006.3.23. (서고시 2006-95호)
변경	해 제									

□ 정비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방식	면 적(㎡)	정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오류1 주택재건축구역	구로구 오류동 241-2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21,728	2011.6.30. (서고시2011-172호)
변경	해 제				

연번	구역해제 현황
3	□ 정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결정 구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합 계			21,728	100.0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3,853	17.7	
		공원	소 계	1,076	5.0	
			소공원1	296	1.4	
			소공원2	780	3.6	
		공공공지		215	0.9	
		도 로		2,562	11.8	
	획지	소계		17,875	82.3	
		공동주택 용지	소 계	17,079	78.6	
			택지1	5,371	24.7	
			택지2	3,459	15.9	
			택지3	2,472	11.4	
			택지4	5,777	26.6	
		택지5(존치교회)		796	3.7	존치(종교시설)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건축시설계획(폐지)

결정 구분	구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기정	오류1주택 재건축구역	21,728	택지1	5,371	오류동243-2	공동 주택	30 이하	202 이하	55m이하 (평균12.4층이하) (해발82m이하)	
			택지2	3,459	오류동240-7					
			택지3	2,472	오류동234-4					
			택지4	5,777	오류동235-2					
			택지5	796	오류동237	종교 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2.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해제 : 1개 구역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

연번	구역해제 현황
1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및 정비 수법 변경(해제)

지구명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정비수법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미아중심 재정비촉진 지구	기정	강북4	강북구 미아동 62-7 일대	8,524	전면철거형	2008.4.3. (서고시2008-112호)
	변경	해 제				

□ 토지이용계획(폐지)

결정구분	대상지역	토지이용유도	주요용도	비고
기정	강북구 미아동 62-7일대	다양한 복합기능 위주 토지이용 및 주거도입 유도	판매, 업무, 주거	주거비율 50%미만
변경	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건폐율 · 용적률 · 건축물의 높이 계획(폐지)

결정구분	건폐율 (%)	용적률		건축물높이 (m)	비고
		기준	허용		
기정	60 이하	300%이하	500%이하	100 이하	주거비율50%미만
변경	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정비기반시설 계획(폐지)

결정 구분	구역명	내용	비고
기정	강북4	- 도봉로 이면도로 확폭, 정비, 공공공지 조성 - 공공용지 확보비율 : 순부담율 15.5% 이상	도로변경 및 공공공지 신설
변경	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교통처리계획(폐지)

결정 구분	구역명	내용	비고
기정	강북4	- 도봉로에서 진 · 출입을 제한하고 이면도로에서의 진 · 출입을 위하여 지구 서측 도로 확장	
변경	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 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다만, 강북4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과 별개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집)1-1, 중(국)2-486은 유효함

3.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 1개 구역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

연번	구역해제 현황
1	□ 재정비촉진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방식	면 적(㎡)	재정비촉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신길6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510일대	주택재개발사업	36,266.0	2011.9.22. (서고시2011-277호)
변경	해 제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결정 구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합계		36,266	100.0	-
	정비기반 시 설	소계	10,520	29.0	-
		도로	5,382	14.8	무상귀속
		공원	1,491	4.1	
		녹지	3,583	9.9	
		공공공지	64	0.2	
	택지	소계	25,746	71.0	-
		6-1	25,690	70.8	공동주택
		6-2	56	0.2	학교 (무상귀속)
변경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2-2 : 폭원 15m, 연장 357m)는 유효함				

○ 건축시설계획(폐지)

결정 구분	구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 수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기정	신길6 재정비촉진구역	25,690	6-1	25,690	신길동 510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30 이하	265.1 이하	평균20/최고26	-
변경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2-2 : 폭원 15m, 연장 357m)는 유효함

※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은 구역지정 이전의 계획으로 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따라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

4. 지형도면(해제) : 첨부 도면과 같음

5. 구역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 실효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에 의한 정비구역등 해제
   ○ 실 효 일 : 고시일

6.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와 노원구 주택사업과, 은평구 건축과, 구로구 주택과, 강북구 도시계획과, 영등포구 도시재생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임

정비구역 해제 도면

□ 상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위치도(노원구 1050-2번지 일대)

○ 정비구역도(해제)

□ 역촌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위치도(은평구 역촌동 2-45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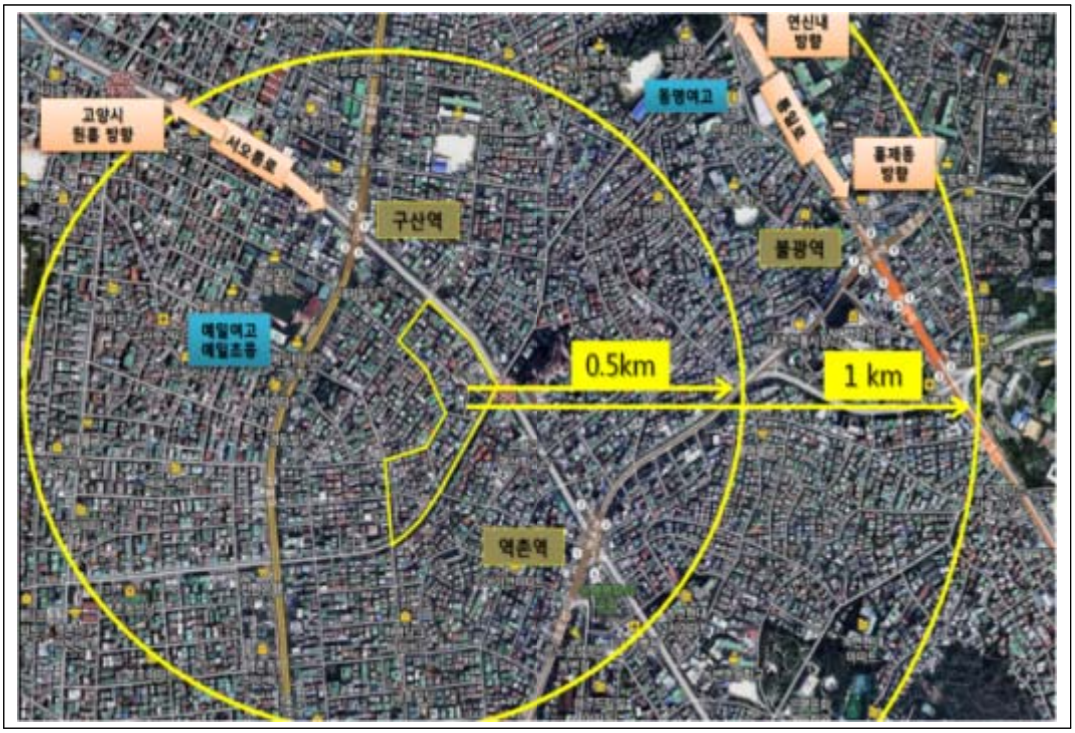

○ 정비구역도(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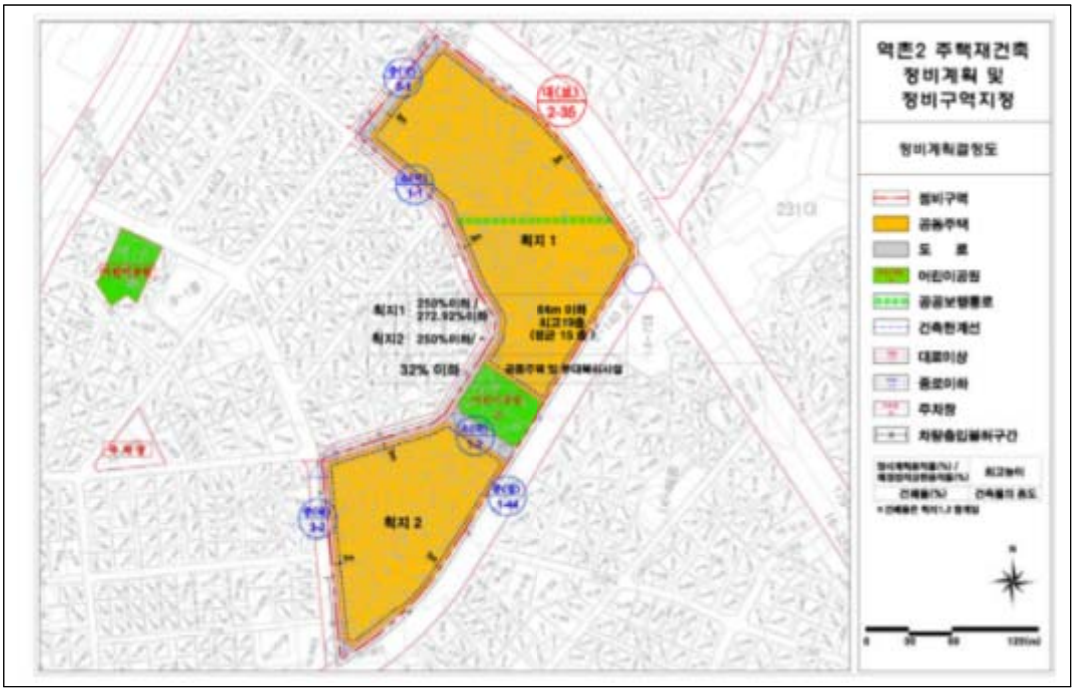

□ 오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위치도(구로구 오류동 241-2번지 일대)

○ 정비구역도(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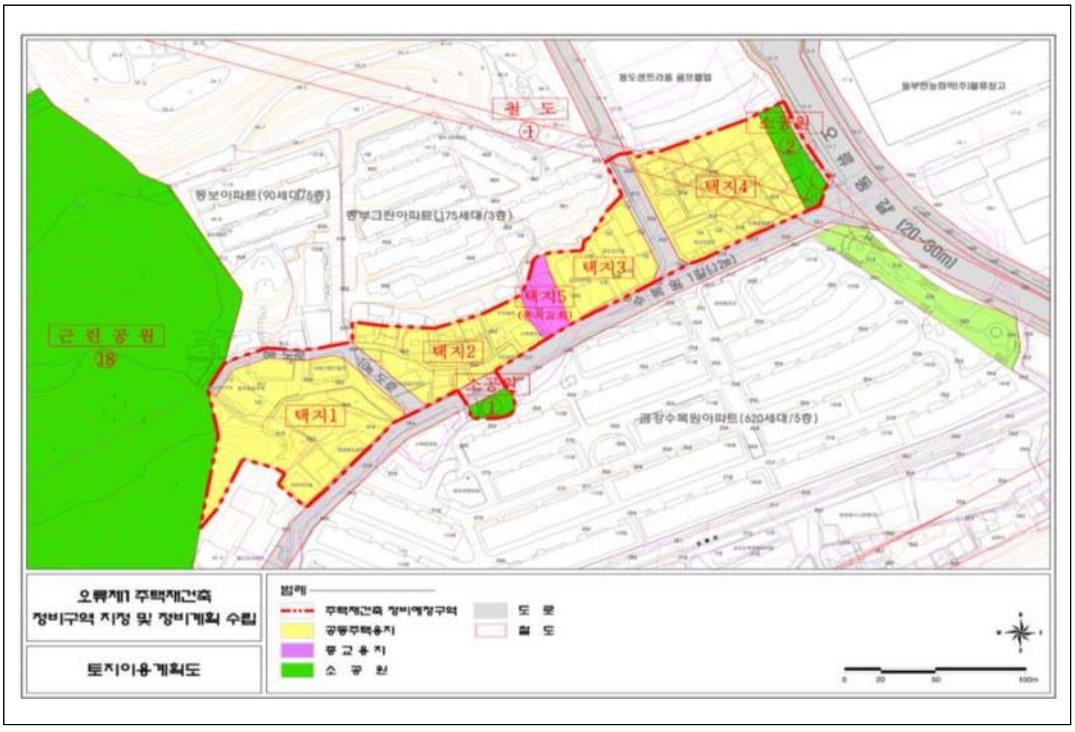

□ 강북4 도시화경 정비예정구역

○ 위치도(강북구 미아동 62-7번지 일대)

○ 정비예정구역(해제)

□ 신길6재정비촉진구역구역

○ 위치도(영등포구 신길동 510번지 일대)

○ 정비구역도(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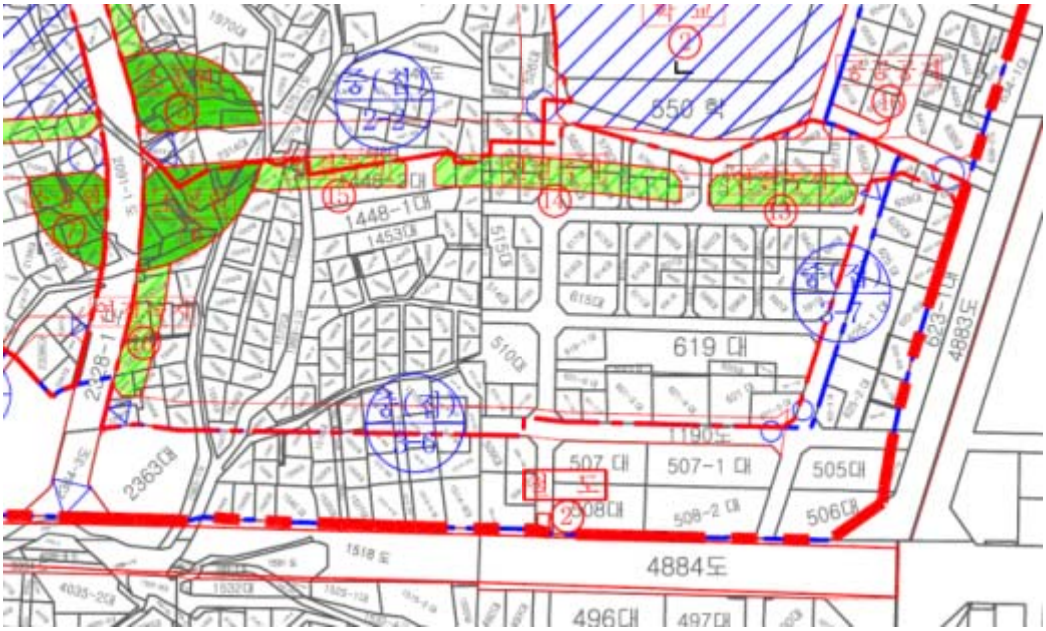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9호

종로구 교남동 · 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 교남동·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행촌동 210-678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서울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중 하나로서, 주민참여를 통해 역사문화적 마을특성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 보전·정비·개량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구역의 명칭 : 종로구 교남동·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2)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종로구 교남동 · 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종로구 행촌동 210-678 일대	-	증)141,323.0	141,323.0	

■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내용(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수정가결
(수정사항) 1. 대상지 동측 기정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와 관련,
1-1. 기정 완충녹지 중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4, 소로3-18)와 중복 결정된 구간은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해제 (※ 일부 완충녹지 잔여 구간은 장기적으로 동측 사직공원에 편입 검토)
1-2. 기정 완충녹지 미집행 구간중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4) 남측으로 연결되는 구간(행촌동 1-177번지 일대)은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해제 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조서 정정
1-3. 기정 완충녹지 미집행 구간 중 한양도성이 위치하는 구간(행촌동 1-136번지 일대)은 기정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유지
(권고사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관련 대상지 일대가 '93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통해 기 건폐율 완화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2.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면적 (㎡)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계	141,323.0	-	141,323.0	10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48,264.2	-	48,264.2	34.15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873.8	-	4,873.8	3.45	-
제2종일반주거지역	76,968.8	-	76,968.8	54.46	-
제3종일반주거지역	7,599.0	-	7,599	5.38	-
자연녹지지역	3,617.2	-	3,617.2	2.56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가) 경관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경관지구 (인왕지구)	자연경관지구	종로구 삼청동, 세종로동, 옥인동, 누상동, 사직동, 청운동 일대	751,233.7 (30,006.8)	건설부고시 제235호 1977.12.3.	-

※ (　　)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사항임. (구적기준)

(나) 미관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독립문~체부동	36,000 (8,397.1)	건설부고시 제109호 1976.7.19.	-

※ (　　)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사항임. (구적기준)

(다) 방화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방화지구	방화지구	서대문~영천	27,600 (938.7)	건설부고시 제727호 1963.12.13.	-

※ (　　)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사항임. (구적기준)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41,323.0	-	141,323.0	100.0	-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64,100.9	(증) 988.9	65,089.8	46.1	-
	도로	도시계획시설	26,894.8	-	26,894.8	19.0	-
		현황 도로	12,329.7	(증) 43.7	12,373.4	8.8	수정가결 내용 반영
	공원	도시계획시설	3,230.3	-	3,230.3	2.3	-
		현황 공원	1,857.8	-	1,857.8	1.3	
	녹지	도시계획시설	4,843.5	(감) 111.1	4,732.4	3.3	수정가결 내용 반영 / 타 도시계획시설 중복면적 제외
		현황 녹지	751.1	-	751.1	0.5	-
	학교	도시계획시설	13,917.0	-	13,917.0	9.8	타 도시계획시설 중복면적 제외
	지목상 주차장		276.7	-	276.7	0.2	-
	공동이용시설		-	(증)1,056.3	1,056.3	0.7	-
획지	소계		77,222.1	(감) 988.9	76,233.2	53.9	-
	주택용지(개별건축)		77,222.1	(감) 988.9	76,233.2	53.9	-

※ 별도 획지 계획 없음. 공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40	35~39	주간선 도로	3,820 (157)	적선동/ 광장3호	세브란스 병원 앞 / 광로40	일반 도로	독립문	건고169 1976.10.28.	사직로
기정	소로	2	1	8	집산 도로	332	행촌동 1-10	무악동 46-188	일반 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통일로12길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301	행촌동 210-201	행촌동 171-3	일반 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사직로1길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306	무악동 46-188	행촌동 210-180	일반 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인왕산로1길 사직로1다길 사직로1마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236	행촌동 210-141	행촌동 210-493	일반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사직로1라길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245	행촌동 210-616	행촌동 171-187	일반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인왕산로1길
변경	소로	3	4	6	국지도로	245	행촌동 210-35	행촌동 1-19	일반도로			인왕산로1길
기정	소로	3	5	5	국지도로	51	무악동 46-209	무악동 46-202	일반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통일로12길
기정	소로	3	6	4	국지도로	52	행촌동 210-656	행촌동 210-676	일반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통일로12길 30
기정	소로	3	7	4	국지도로	84	행촌동 210-195	행촌동 210-655	일반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
기정	소로	3	8	4	국지도로	70	행촌동 210-120	행촌동 210-71	일반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
기정	소로	3	9	4	국지도로	97	무악동 210-111	행촌동 210-66	일반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
기정	소로	3	10	4	국지도로	34	행촌동 210-99	행촌동 210-60	일반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
기정	소로	3	11	4	국지도로	114	행촌동 210-254	행촌동 210-814	일반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
기정	소로	3	12	4	국지도로	60	행촌동 210-25	행촌동 210-267	일반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인왕산로1길 62
기정	소로	3	13	4	국지도로	190	행촌동 210-166	행촌동 171-169	일반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
변경	소로	3	13	4	국지도로	190	행촌동 210-166	행촌동 1-16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4	4	국지도로	117	무악동 210-452	행촌동 171-78	일반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사직로1나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5	4	국지도로	130	행촌동 210-346	행촌동 171-164	일반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사직로1다길
기정	소로	3	16	4	국지도로	44	행촌동 171-135	행촌동 171-141	일반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사직로1길 28
기정	소로	3	17	4	국지도로	49	행촌동 171-105	행촌동 171-72	일반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사직로1길 22
기정	소로	3	18	4	국지도로	160	행촌동 171-42	행촌동 1-19	일반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사직로1가길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73	행촌동 1-40	행촌동 1-78	일반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송월1길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136	홍파동 2-3	행촌동 1-11	일반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송월1길 44
기정	소로	3	3	4	국지도로	26	행촌동 6-3	홍파동 1-24	보행자전용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송월1길 52
기정	소로	3	4	3	국지도로	14	홍파동 2-30	홍파동 2-22	보행자전용도로		종로구 고시 제2011-16호 2011.6.17.	-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20	사직동 311-2	신문로2가 1-59	일반도로	사직동 1-77	서울시 고시 제2009-465호 2009.11.19.	사직로6길

※ (　　)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사항임.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소로 3-4	소로 3-4	기점 변경	토지 합병(2013.6.10.)에 따른 기점 지번 정정 (행촌동 210-616 → 행촌동 210-35)
		종점 변경	최초결정 당시 조서 상 누락된 구간을 포함하여 종점 변경 (기존 결정도 및 연장 반영)
소로 3-13	소로 3-13	종점 변경	최초결정 당시 조서 상 누락된 구간을 포함하여 종점 변경 (기존 결정도 및 연장 반영)

(나)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철도	도시철도	벽제	양재동	행촌동 171-49 일대	36.5km (326.3m)	건설부 53 1980.2.27.	서울 지하철 3호선

※ ( )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사항임.

2) 공간시설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사직공원	근린공원	사직동 1-28 일대	188,499.3	-	188,499.3 (3,230.3)	건설부 138 1977.7.9.	-

※ ( )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사항임. (부분편입 필지는 구적 비율 적용)

(나)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청운 녹지	완충녹지	사직동 305 ~ 사직동 산1-25 일대	5,720	(감)833.1	4,886.9 (4,776.0)	건설부 46 1976.4.7.	-

※ ( )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사항임. (구적 비율 적용)

□ 도시계획시설(녹지)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청운녹지	녹지 선형 조정	현황을 반영하여 도로와 중복결정 된 구간의 부분 해제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대신 고등학교	고등학교	행촌동 171	13,966.9	-	13,966.9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5 1987.2.17.	-

건축물의 규모			건축제한 완화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45%	150%	4층	높이(4→5층) / (기존 5층이상 건축물 6층이하로 결정)	제1종일반주거지역

4) 환경기초시설

(가)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폭원(m)	연장(m)	높이(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하수도	행촌동 171-10	행촌동 171-19	-	2.1~2.9	159	EL 52.0 ~ EL 54.5	서울시 고시 2006-400호 2006.11.23.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공동이용시설	행촌동 210-678	-	증) 82.4	82.4	행촌공터 1호점
신설	공동이용시설	행촌동 210-333 외 4	-	증) 217.4	217.4	행촌공터 2호점
신설	공동이용시설	무악동 46-1902	-	증) 218.0	218.0	행촌공터 3호점
신설	공동이용시설	무악동 74	-	증) 538.5	538.5	행촌공터 4호점

※ 건물규모, 운영방법 등 설치계획 결정은 추후 서울시 정책에 따라 결정 예정이며, 추후 추가적인 공동이용시설의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음.

마.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계획

1) 대지에 관한 계획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평균대지 면적	최대개발 규모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 전체	87.91㎡	200㎡	• 최대개발규모 적용의 예외 -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이미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공동개발이 진행된 경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의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시 (법 시행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		• 공동개발 불허사항 - 서로 상이한 용도 및 높이지침이 적용되는 필지의 공동개발 - 자율적 공동개발에 의해 인접필지가 맹지가 되거나 부정형하게 되는 경우 - 자율적 공동개발로 주변보다 대지규모가 현저하게 커져 경관상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 평균대지면적 = 적용구역 내 상위 5%, 하위 5% 규모의 대지를 제외한 평균값

2) 건축물의 주용도·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 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신설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 전체	141,323.0	–	–	행촌동 210-678일대	주택 등	관계 법령에 따름	관계 법령에 따름	관계 법령에 따름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관계법령에 따름									
심의완화 사항	관계법령에 따름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지정(권장사항) : 3개소 – 건축선 후퇴를 통해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권장 –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 및 포장으로 최소폭원 2m 조성 – 행촌동 1-83, 1-90 / 행촌동 1-91 / 행촌동 1-32, 1-41 (※ 도면표기 위치 및 '부문별 정비계획' 세부 지침 참조) • 건축선 후퇴의무 완화 (관련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 – 한양도성 주변 골목길 및 근대한옥 밀집 골목의 역사문화경관 보존을 위하여 완화계획에 따라 건축선 후퇴의무 완화 (단, 근대한옥골목의 경우 비한옥으로 신축시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조제1항 개정을 통해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구역' 이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 및 동법 제46조에 따라 적용 완화지역으로 결정 후 적용 가능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은 해당 절차와 기준 등의 내용을 준용함.
※ 개별 건축행위 시 '서울 4대문안 문화재 보존안(2012)' 에 따라 문화유적의 시굴, 표본, 입회조사 실시 후 보존 조치 이행
※「경관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4조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은 건축행위 시 해당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 체크리스트' 준용

3)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추	철거 이주	
신설	종로구 교남동·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141,323.0			종로구 행촌동 210-678일대	492	492				주거 용도

(나) 주택개량 지원계획 : 구역 전체

구분지원	대상건축물	계획내용	비고
주택개량 직접지원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주민협정 체결 건축물	• 최대 1200만원/동 한도 내에서 기존 주택의 개량 공사 비용의 50% 직접비용 제공 • '행촌권 성곽마을 건축디자인가이드라인' 준수 (마을계획가 현장심사 3회 등) - ① 한양도성 인접 주택, ② 오르樂행촌길 주변 주택 및 ③ 옥상 녹화 또는 경작공간 조성 주택 등 우선 지원 검토 • 임대료 동결, 상태 유지 등 지원조건 준수 (불이행시 지원금 반납) • 관련근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6항	중복 지원 가능
주택개량 융자지원		•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지원제도 적용	

※ 세부지원조건 등은 서울시 관련부서 지원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달라질 수 있음 (부문별 정비계획 지침 참조)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19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해당 절차와 기준 등의 내용을 준용함에 따라 주택개량 지원 신청시 허가여부 사전검토 필수

(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종로구 교남동 · 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종로구 행촌동 210-678번지 일대	-	증) 141,323.0	141,323.0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결정 시 적용가능 • 부문별 정비계획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 및 운영' 참조

※ 결정사유 : 구역내 불리한 건축여건으로 개량되지 못하고 노후화된 건축물이 다수 분포,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개량이 필요하나, 건축행위가 어려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유도하고,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4)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 불허용도

구분	계획내용		비고
신규	제2종근린생활시설	• 자동차영업소 • 총포판매소 • 게임업소 • 장의사	관련법령에 의한 용도계획에 중복하여 추가 적용

※ 불허용도 외 입지 가능한 업종 중 ① 주거지역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업종, ② 소음 · 악취 등 생활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업종, ③가로변 적치물 등 마을 경관을 저해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유발하는 업종, ④ 이와 유사한 업종은 정비구역의 정주환경보호를 위해 「(가칭)행촌권 성곽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주민협정운영회)」 및 「종로구청 주관부서」 와 사전협의 권장

5) 건축물의 배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계획 : 권장사항

구분	적용구역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신규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 전체	건축요소별 가이드라인	• 건축물 외벽, 지붕, 창호, 옹벽 · 담장및 건축설비, 캐노피 등 부속물에 관한 지침 – 외벽 : 색채, 재료, 매스 분절 – 지붕 : 경사지붕 또는 평지붕, 지붕 재료 – 창호 : 색채 및 재료, 에너지효율 – 부속물 : 건축설비, 차양 및 캐노피, 화분대, 옥외광고물 – 옹벽 및 담장 : 지형변동, 마감재, 색채, 높이, 녹화 등	–
		도시농업 · 원예 특화 가이드라인	• 행촌권 성곽마을 특성화와 관련하여 민간건축물의 도시농업 · 원예 요소 도입 및 확산 유도를 위한 지침 – 입면 녹화 : 지층부(전면공간), 상층부, 건축적 녹화 또는 구조물 설치 – 옥상 녹화 : 상자텃밭, 옥상정원, 옥상경작소	–
		共간가꿈 가이드라인	• 대지 내 자투리공간,유휴공간(필로티 등)의 활용 유도를 위한 지침 – 외부공간 : 전면공지, 건축물 사이공간 – 필로티공간 :□법정 주차구역 외의 여유공지 활용 등	–

※ 주택개량 직접지원,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기준 등 완화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계획에 따라 적용 의무화

바.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주차공유시스템 구축	• 마을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보완을 위해 민간대지 및 주요 공공시설, 종교시설 부지 내□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 서울시 현행 사업 및 기존 민간개발 시스템과 연계, 주차 공유시스템 구축	–
공영주차장 확보	• 마을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보계획 수립 • 기존 활용이 저조한 체육시설 부지(무악동 57-10)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확보 • 대규모 부지 활용에 대한 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주차공간 확보방안 제시	장기적으로 '부문별 정비계획' 사직터널 국공유지 활용 검토
공공보행통로 지정 및 정비	• 구역 내 단절된 보행자 동선의 연결 및 원활한 보행 흐름을 위해 기존 사용중인 사유지 내 보행통로 2개소는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 정비하고, 딜쿠샤 주변 신규로 필요한 공공보행통로 3개소는 설치 권장	건축선 계획과 연동 (3개소 신규지정)
교통체계 및 도로안전 개선	• 구릉지 경사로 인해 차량통행이 어렵고 위험한 구간은 단기적으로 미끄럼방지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확충 • 마을 내 교통체계 및 도로 기하구조 개선을 위한 통합적 검토를 장기계획으로 수립	–
마을내 차량제한속도 지정	• 가로정비를 위한 기본및 실시설계 시 관할 경찰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구역 전체를 30km/h 제한속도를 지정하고 관련 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

사.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자연환경	• 구릉지형의 특성 보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원지형 보존 • 인왕산과 연결되는 기존의 풍부한 녹지를 최대한 보존 • 이용이 저조한 공원, 쉼터 등의 기능 회복 • 역사문화자원인 한양도성, 딜쿠샤 및 행촌동 은행나무의 보전과 연계하여 기존 수목 보전 및 쌈지공원 등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생활환경	• 마을 내 주요 역사문화자원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가치 극대화, 주변 환경 통합 개선 등을 통한 역사문화환경 보전 • 마을특화요소인 도시농업의 도입을 통해 마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는 동시 마을 곳곳에 생활 녹지공간 확충 •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우수활용 등 관련 서울시 현행사업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 권장	-
재난방지	자연재해	• 하수관거 정비 및 빗물받이, 배수로 등 우수처리시설의 확충을 통한 풍수해 대비 • 급경사구간 및 상습 낙상사고구간 포장 개선, 안내표지 설치 등을 통해 동절기 설해 피해 최소화 • 도로 및 공지 정비시투수성 포장재 사용으로 우수유출량 억제	-
	인재	• 한양도성 훼손구간의 균열,누수 안전점검 실시 및 보수 • 구역 내 노후 옹벽에 대한 지속적 안전점검 실시 • 기존 녹지의 보전·관리 및 도시농업과 연계한 경작공간 확충을 통해 공해 방지 • 공중선 정리로 단선, 전복으로 발생가능한 화재사고방지	-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관계 법령에 따름

구분	계획내용	비고
교육환경 현황	• 정비구역 내에 중·고등학교 1개소, 정비구역과 연접하여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 동측에 특수학교 1개소 위치 • 정비구역 일부 지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한 상대정화구역 및 절대정화구역에 해당함.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절대정화구역 및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자.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차.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카.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타.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자연 감시 강화	•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보안등 정비 및 추가 확충 • 개별 건축물 출입구 변 조명 결합형 안전우체통, 경관조명 설치 등을 통해 사람과 사물을 인식하기 위한 조도와 연색성 유지 • 미러시트, 반사띠 설치 및 마을안전지킴이집 운영을 통해 범죄심리를 위축하고, 건축디자인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로의 개방성과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형태 유도 (담장, 식재, 필로티 등)	-
접근 통제	• 건축디자인가이드라인을 통해 건물 사이공간 등 감시 • 사각지대에 대한 조도 개선 및 외부인 출입통제시설 설치 권장	-
영역성 강화	• 저활용 되거나 방치된 노후 자투리 공간 등을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하여 영역성 강화 • 골목길 등 주요 지점에 안내판 설치를 통해 보행자 인지성 제고	-
활동의 활성화	• 주민들의 교류 및 활동성 강화를 위한 도시농업 활동 확대 • 주민공동이용시설(행촌공터)을 중심으로 한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 자투리공지 정비, 가로형광장 조성 등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활동공간을 조성 • 건축물 사이공간 등 대지 내 공지에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주민이용시설(쓰레기수거함 등) 설치를 권장하여 자연스러운 주변감시 유도	-
유지관리	•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마을 환경의 자체적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공공공간 및 준공공공간의 방치, 노후화를 방지하고 범죄심리를 유발하는 요인 제거	-
방범용 CCTV 설치	• 마을 내 주요 교차로 및 우범지역 등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의 효율성(가시범위, 주변 인지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CCTV 지주의 IR카메라 확충 및 통합 방범시설 지주 추가 설치	-
커뮤니티 시설 조성	• 지역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방범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 (행촌 누리등대, 행촌공터 등)	-

파.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거.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 해당사항 없음

너.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 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 환경	1) 생태 면적률	일반주택 20% 공동주택 30%	○	•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닌 보전 정비형 사업으로, 개별 건축허가 및 공공사업 시 생태면적률 기준 따르도록 함	• 공공사업을 통한 조경녹지 공간 최대한 확보 • 개별 건축물/공공사업 지침 등에 조경녹지, 투수면적 확보토록 반영	–
	2) 녹지 네트워크	산으로의 통경·녹지축확보	○	• 시가화지역에 해당, 특별한 동 · 식물상 없음	• 기존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녹지 네트워크 조성	–
	3) 지형변동	지형변동 등의 최소화	○	•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라 절성토비율 영향 미비 • 일부 지역 단차가 심해 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필요	• 건축물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별 건축허가시 지형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절성토 및 지형변동 최소화	–
	4) 비오톱	비오톱유형평가 3등급	○	• 비오톱유형 평가 2~3등급 • 구역내 특별한 식생분포없음	• 기존녹지 보전, 추가 조경녹지 최대 확보로 생태계 훼손 최소화 및 인왕산 일대 비오톱과 연계 강화	–
생활 환경	1)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 4~6층 다세대 · 다가구 밀집지역 •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라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일조영향 미미	• 개별 건축물 신축시 일조권 관련 규정 준수 • 건축디자인가이드라인 운영을 통해 일조 장애 영향 최소화	–
	2) 바람 및 미기후	바람 및 미기후 변화 최소화	○	• 평균풍속2.57m/s, 북서풍 • 바람 및 미기후 영향 미비	• 개별 대지 내 장치물 최소화 유도 • 녹지연결을 통한 찬바람유입	–
	3) 에너지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	• 개별건축시 에너지 저감을 위한 계획수립 • 신재생 에너지 사용권장 필요	• 건축물가이드라인에 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 지원제도, 에코마일리지제도 등 신청 권장 • 주민공동이용시설 내 태양광 패널 및 빗물저수조 설치	–
		신재생 에너지 사용	○			
	4) 경관	주요 경관자원의 보존	○	• 다양한 역사,생활문화 경관 및 자연경관 자원 분포	• 주요 역사자원의 관리 및 장기적 복원과 연계한 주변 공간의 정비 • 골목길, 계단 등 공유한 생활문화경관의 보전 및 녹지경관 보전·확충	–

검토항목		목표 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생활환경	4) 경관	주요 조망축 및 통경축 관리	○	• 주요 경관자원으로의 조망축의 상징성 부족 • 대상지 내외 건축물로 인한 통경축 차폐	• 주요 조망축의 환경 정비 • 건축지침과 연계하여 건축물 배치시 주요 통경축 확보유도	-
		개방적 가로경관 형성	○	• 협소한 기반시설과 과도한 개발용적으로 폐쇄적 가로경관 형성	• 가로환경개선을 위한 도로 통합정비, 녹시율향상 • 디자인가이드라인을통한 가로입면 개선유도 • 현행법령에따른 건축기준 제시	-
	5)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최대 확보	○	• 대부분이 사유지로 주민을 위한 구역 내 여가 및 휴식공간 부족	• 행촌공터 등 주민공동이용 시설 설치 • 크고 작은 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여가공간 확충 • 사유지 내 공유공간 조성 유도	-
	6) 보행 친화 공간	주요가로 환경개선 (보차혼용도로)	○	• 급경사 및 협소한 폭으로 현황도로 내 불법적치물로 인한 통행 불편 가중	• 교통정온화, 포장/가로시설물 정비 등을 통한 보행환경개선 • CCTV설치, 가로등 정비 등 CPTED 적용	-
	7) 소음 및 진동	소음/65.0dB(A)	○	• 공사시 소음진동 미미한 영향 발생	• 공사 및 운영시 저감대책 수립	-
	8) 폐기물	폐기물 발생 최소화	○	• 공사시 폐기물 발생 예상 • 도시농업 생산과정 부산물 발생 예상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토록 계획 •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등 자원순환형 도시농업 도입	-

※ 주택개량 직접지원,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기준 등 완화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계획에 따라 적용 의무화

더.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존수목 존치(권장)	•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경우, 민간대지 내 입지한 기존수목은 존치하는 것을 권장함	-

러.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머.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

구분	계획내용	비고
주민공동체 운영회 구성 및 운영	• 마을 관리 · 운영 및 공동체 활동 주도를 위한 주민공동체운영회 설립 • 성곽마을 경관 및 생활환경 관리를 위한 주민협정 체결	–
도시농업공동체 구성 및 운영	• 도시농업을 주제로 다양한 공동체활동 기획 및 운영	–
도시재생대학 운영	• 열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공유 • 선진사례답사, 교육 등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	–
기타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마을축제 개최 및 마을소식지 발행 • 직능단체 연례행사 등 기존 마을활동의 확대 운영 및 체계화 •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공공 및 수익 프로그램)	–

버.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 계획

보전 및 활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서울 한양도성	사적 제10호	• 문화재 보전을 위한 한양도성 훼손구간 구조안전 진단 및 보수 연계 • 한양도성 훼손구간 우회탐방로 조성 • 기존 순성길 주변 녹지대 정비	–
홍난파가옥	등록문화재 제90호	• 마을 탐방로 및 봉숭아축제 등 마을축제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	–
딜쿠샤	서울미래유산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 중)	• 「3 · 1운동 100주년 맞이기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딜쿠샤 복원과 연계하여 진입가로 및 주변 공공공간 정비	–
사직터널	서울미래유산	• 장기적으로 사직터널의 구조안전진단 및 사직터널 상부 대규모 국공유지 활용을 계획	장기
한옥골목	교북동 1-27~1-43	• 인접 무악제2주택재개발구역 내 '역사자산 흔적남기기' 와 연계, 역사전문가 고증 및 자문을 거쳐 근대 한옥 밀집 골목의 경관 보전을 위한 환경 정비 • 장기적으로 한옥 매입을 통한 소규모 문화시설 조성	장기
	신문로2가 1-55~1-58	• 사직2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 방향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향후 정비	장기
기타	한옥 등 근대건축자산	• 한옥비용지원제도(서울시 한옥조성과)를통해 노후 한옥의 정비 또는 신축 유도	연계
	매장문화재	• 시굴, 표본, 입회조사 대상지역	–

※ 문화재와 관련한 인접 공간 정비 또는 개발사업 시행 시 해당 관리부서와 사전협의 필수

서.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종로구청장	-	-
주택의 보전 · 정비 · 개량	기한 없음	토지 등 소유자	-	-

※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시행 관리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된 자세한 세부내용은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과) 및 종로구(주택과)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1)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자 : 이정식 / ☎2133-7248)
   2) 종로구 주택과 (담당자 : 박성호 / ☎2148-2624)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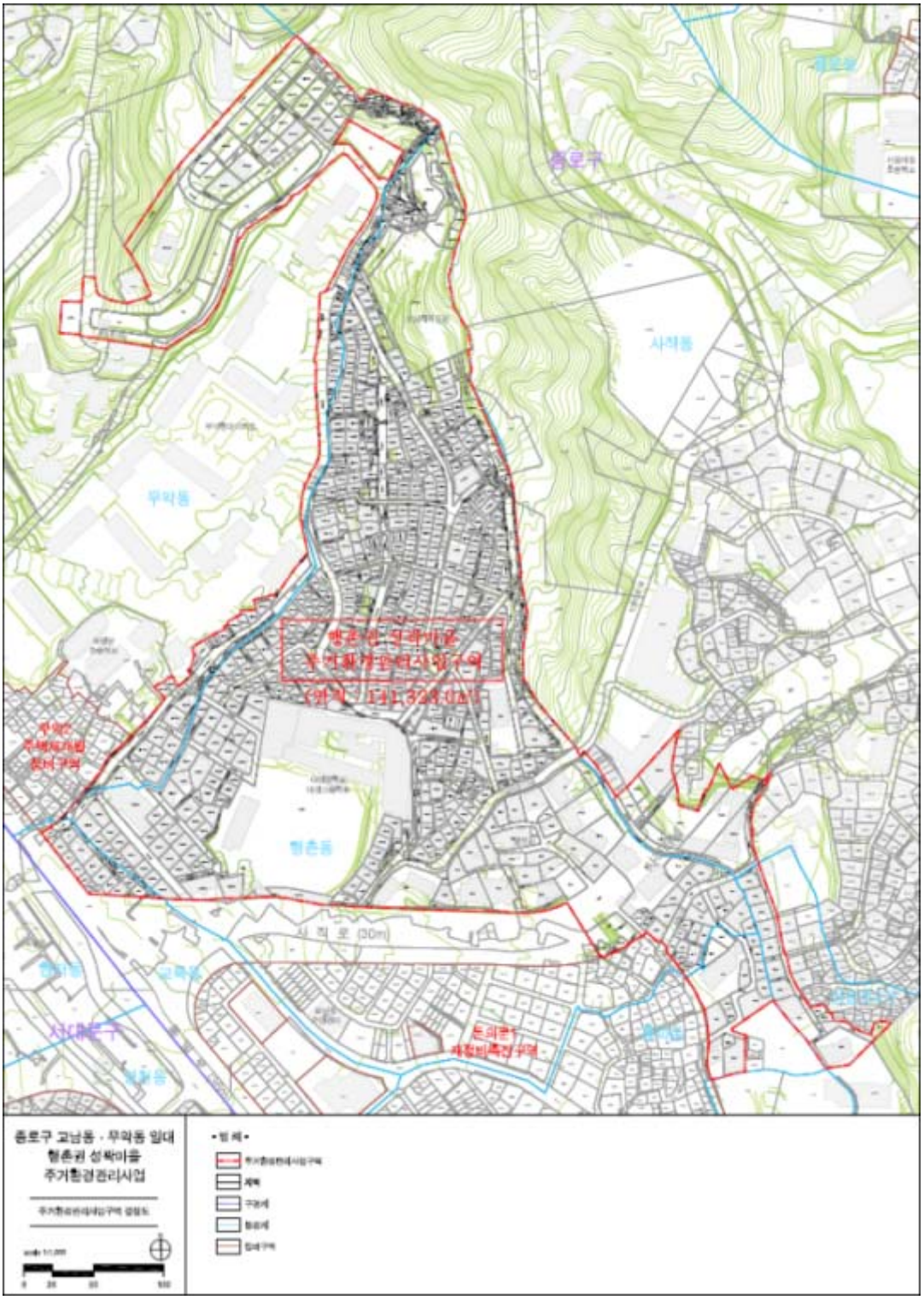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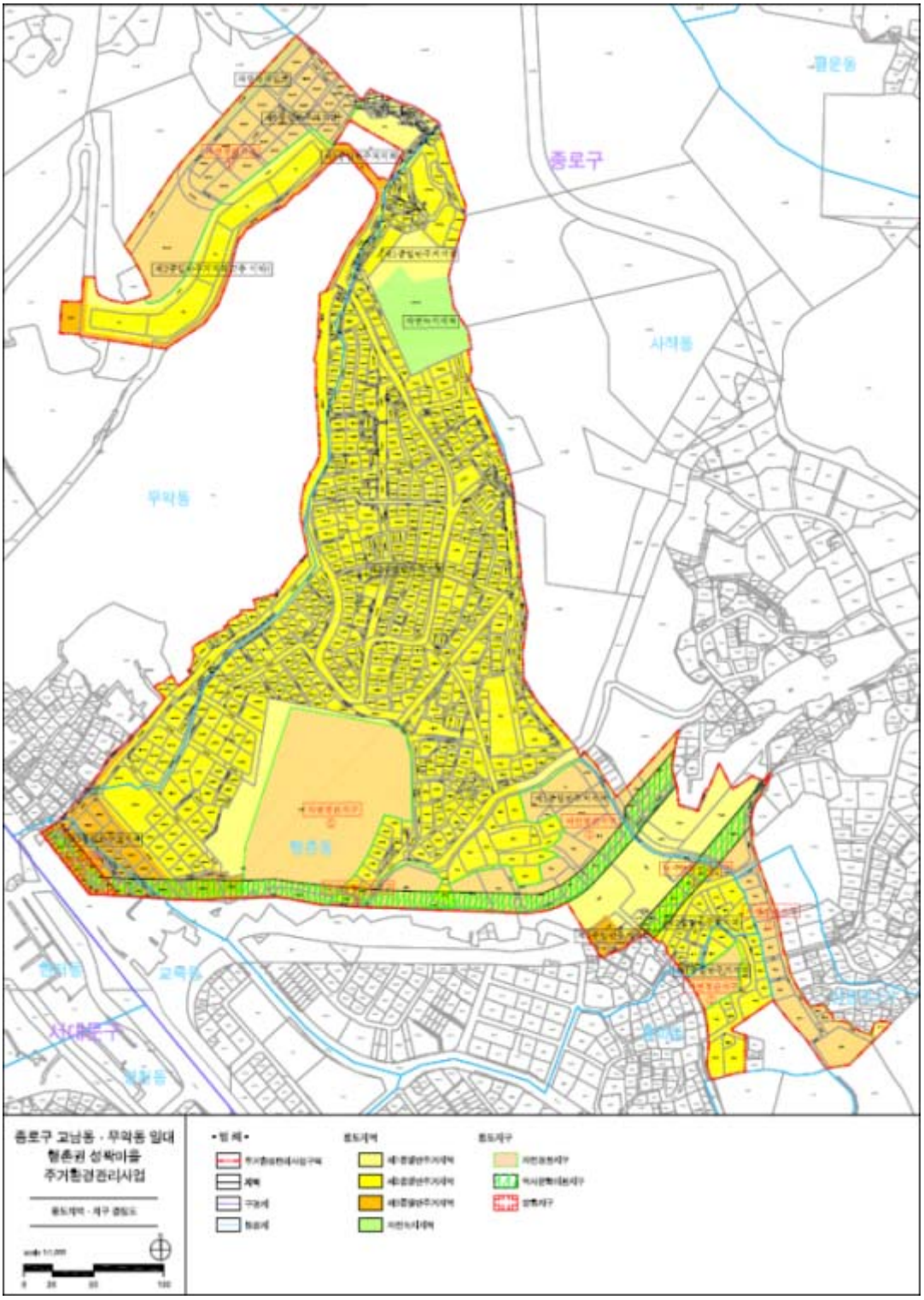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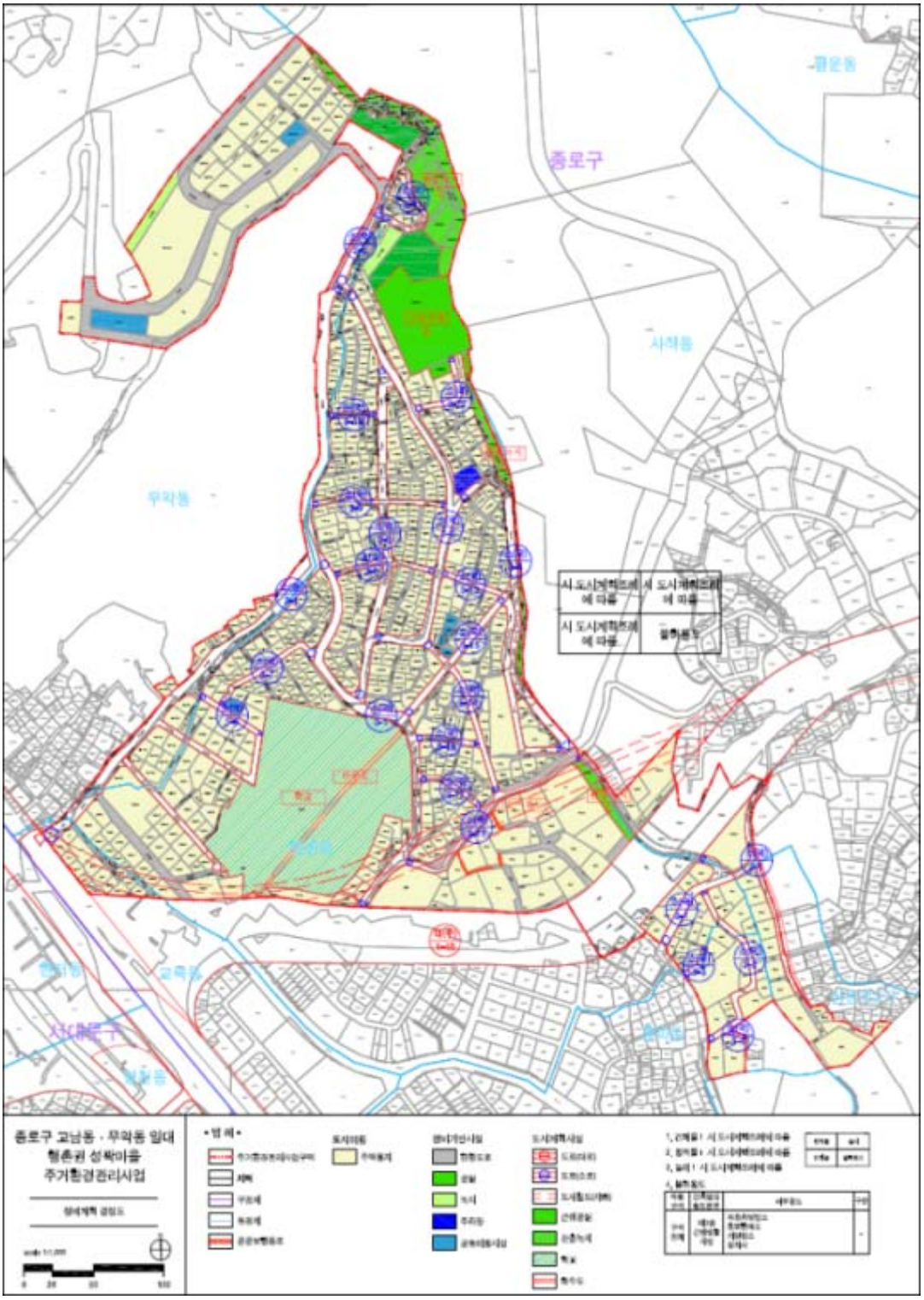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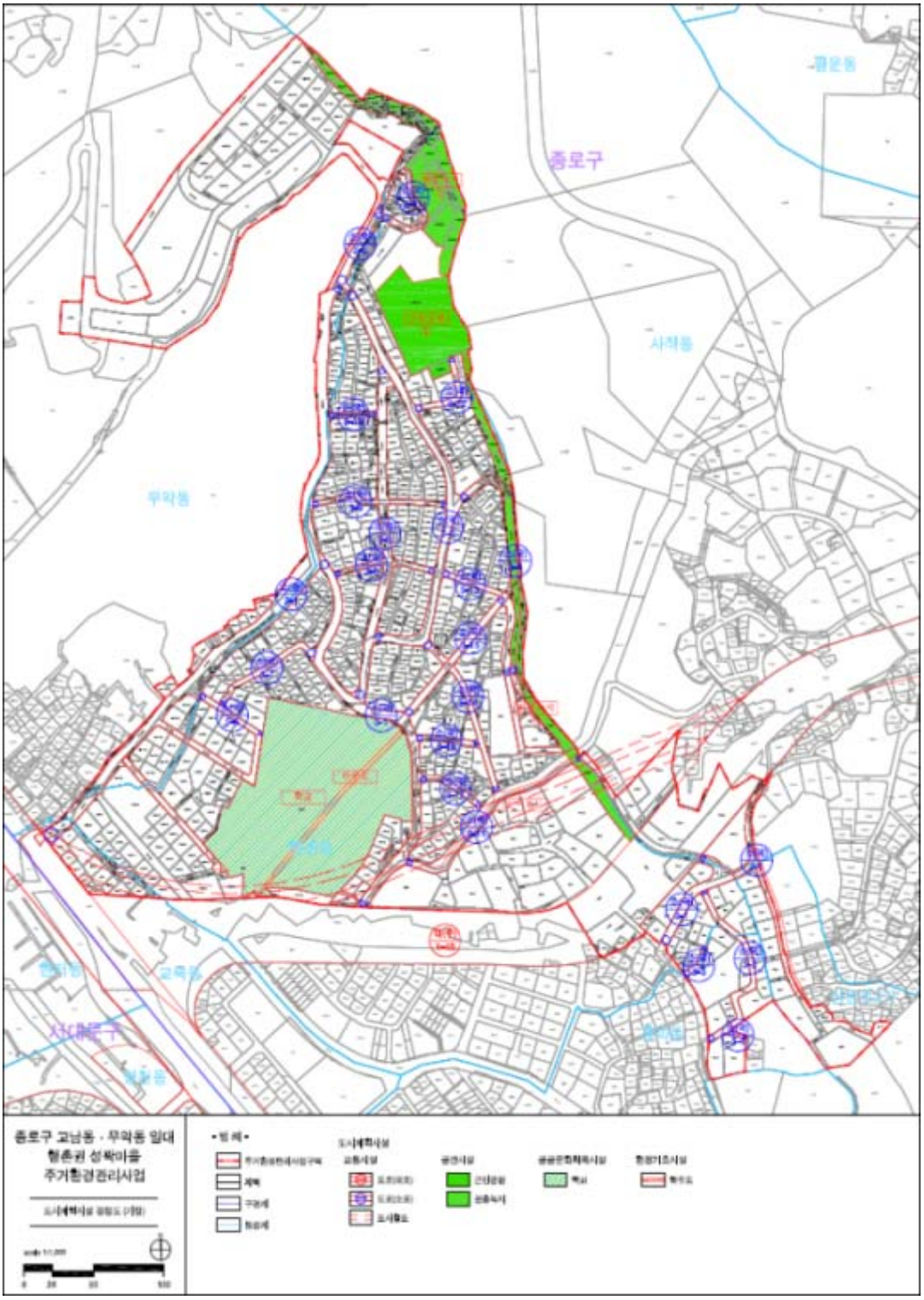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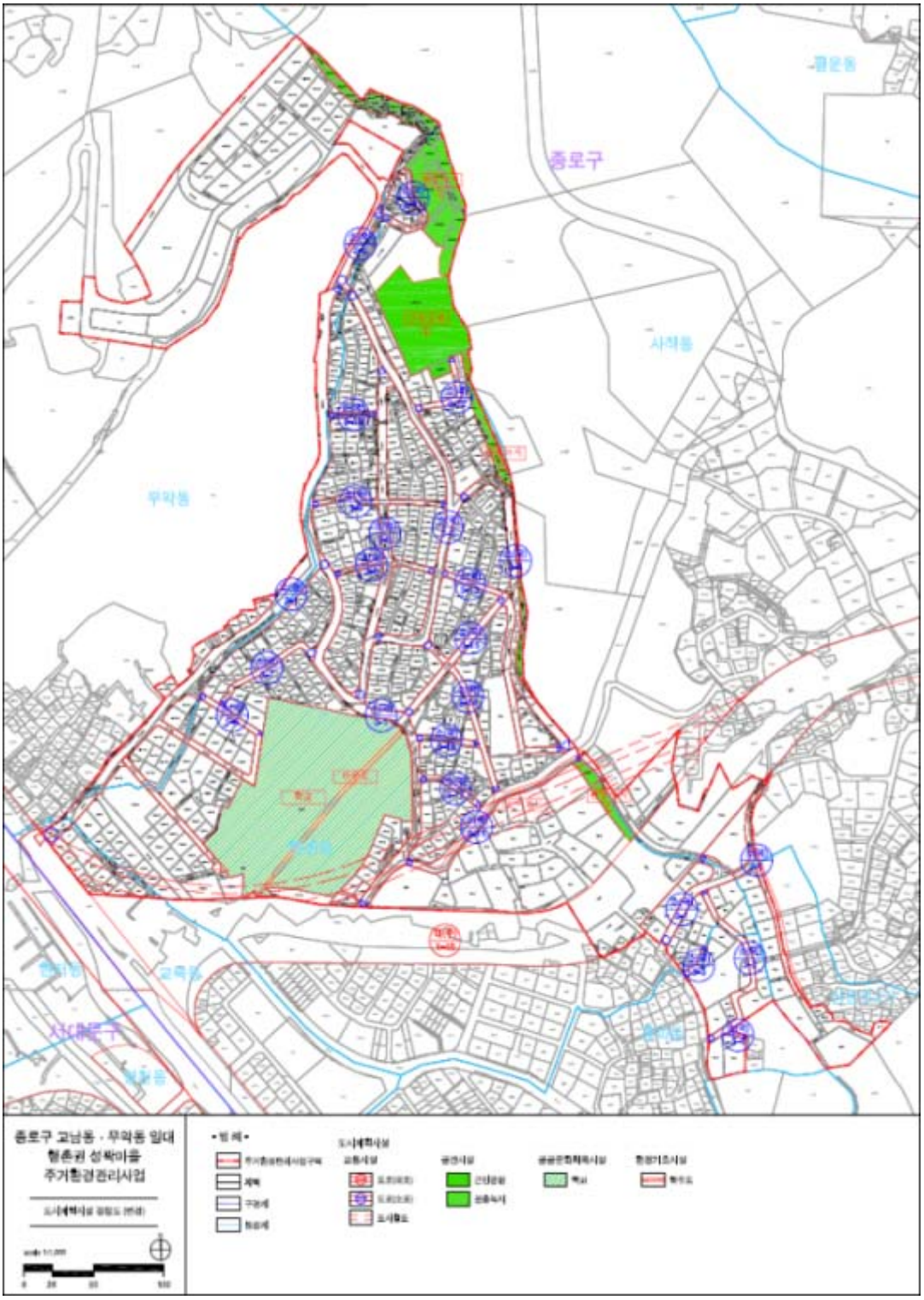

■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종합도

※ 상기 정비계획도는 추후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0호

도시계획시설(광장,주차장,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4호(2016.12.8.)로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 235(2017.7.6.)호로 실시계획 고시한 우리시 중구 예장동 4-1번지의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6항에 의거 같은법 제30조제5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었기에 같은법 제30조제6항,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결정(변경) 취지 : 실시계획 고시에 따른 경미한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1) 교통시설
가)도로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4	35~ 43	보조간선 도로	3,500	서울역앞 광장	신당동 광장	일반 도로	-	'36.12.26	퇴계로
변경	대로	1	4	35~ 43	보조간선 도로	3,500	서울역앞 광장	신당동 광장	일반 도로	-	'36.12.26	측량결과 반영
기정	대로	1	9	35~ 50	보조간선 도로	1,236	주자동5-1	장충동 타워호텔앞	일반 도로	-	'36.12.26	삼일로
변경	대로	1	9	35~ 50	보조간선 도로	1,236	주자동5-1	장충동 타워호텔앞	일반 도로	-	'36.12.26	측량결과 반영
기정	중로	1	38	8~ 20	국지 도로	2,177	남산동3가 6-3	남산광장 (주자동6-12)	일반 도로	-	'60.06.24	소파길
변경	중로	1	38	8~ 20	국지 도로	2,177	남산동3가 6-3	남산광장 (주자동6-12)	일반 도로	-	'60.06.24	측량결과 반영
기정	중로	1	A	22	집산 도로	99	예장동2-102	예장동2-102	일반 도로	-	'16.12.8	경관광장 중복결정
변경	중로	1	A	22	집산 도로	99	예장동2-102	예장동2-102	일반 도로	-	'16.12.8	측량결과 반영
기정	중로	1	B	24.5	집산 도로	118	예장동2-56	예장동4-7	일반 도로	-	'16.12.8	-
변경	중로	1	B	24.5	집산 도로	118	예장동2-56	예장동4-7	일반 도로	-	'16.12.8	측량결과 반영
기정	소로	2	A	7~10	특수 도로	32	남산동3가 6-3	남산동3가 6-3	보행자 전용도로	-	'16.12.8	-
변경	소로	2	A	7~10	특수 도로	32	남산동3가 6-3	남산동3가 6-3	보행자 전용도로	-	'16.12.8	측량결과 반영

■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4	대로 1-4	• 도로폭원 변경	• 측량결과 반영
대로 1-9	대로 1-9	• 도로폭원 변경	• 측량결과 반영
중로 1-38	중로 1-38	• 도로폭원 변경	• 측량결과 반영
중로 1-A	중로 1-A	• 도로폭원 변경	• 측량결과 반영
중로 1-B	중로 1-B	• 도로폭원 변경	• 측량결과 반영
소로 2-A	소로 2-A	• 도로폭원 변경	• 측량결과 반영
소로 2-B	소로 2-B	• 도로폭원 변경	• 측량결과 반영

나)주차장

■ 주차장 변경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4-1번지 일대	5,280.65	증)153.45	5,434.1	신규	• 중복결정 - 경관광장(5,434.1㎡)

■ 주차장 변경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 차장 면적 증가 - 면적 : 증)153.45㎡	• 측량결과 반영

2)공간시설

가)광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광장	경관광장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4-1번지 일대	14,514	증)289.4	14,803.4	’16.12.8 서고394호	• 중복결정 - 주차장(5,434.1㎡) - 도로(632㎡) - 공원(969.6㎡)

■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경관광장	• 경관 광장 면적 증가 - 면적 : 증)289.4㎡	• 측량결과 반영

다.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공재생과(☎ 2133-870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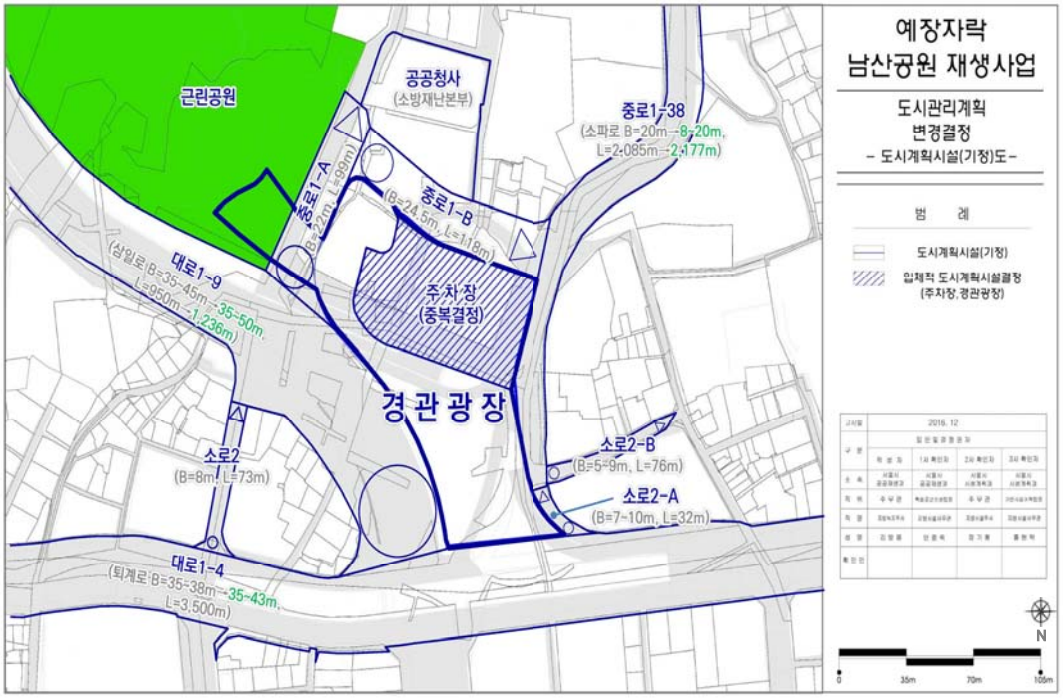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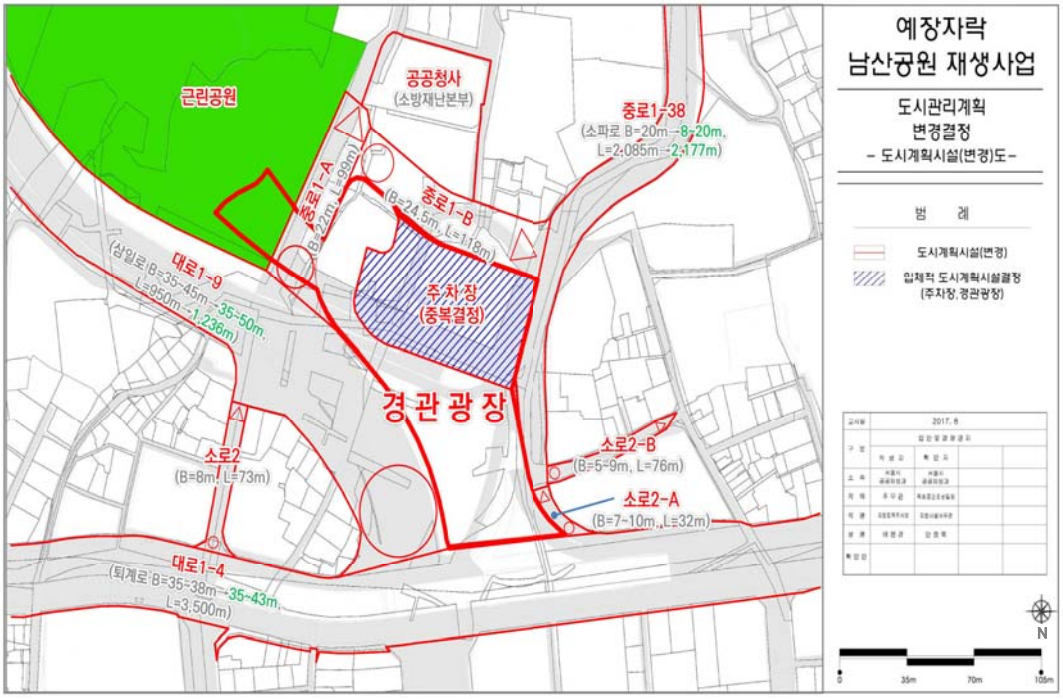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1호

무교·다동구역 제2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7호(1973.9.6)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다동)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07호(2012.8.2.)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무교·다동구역 제2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무교·다동구역 제2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없음)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무교·다동구역 제2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중구 다동 85번지	2,114.7	-	2,114.7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2)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3)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변경	무교·다동구역 제25지구	2,114.7	획지	2,114.7	중구 다동 85번지	1	-	1	-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무교·다동구역 제25지구	2,114.7	획지	2,114.7	중구 다동 85번지	업무시설	41-45	680-750	17층/5층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무교·다동구역 제25지구	2,114.7	획지	2,114.7		업무시설	49.38 이하	760.0 이하	67.7m 이하	
건축물 용적률 완화사항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 용적률 = 기존용적률 + 완화 용적률 = 742.87% + 17.13% = 760.00% (건축계획 용적률 : 756.09%) ► 기존 용적률 : 742.87% (기 완료 건축물) ► 완화 용적률 : 17.13% 적용 산식 연면적 완화에 대한 허용기준(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시) · 산출기준: (용도 도입면적/대지면적) × 기존용적률 × 보상계수(0.5) = (가로활성화용도 1,141.31㎡/2,114.7㎡)×742.87% × 0.5 = 200.46% → (적용) 17.13%									

5) 기타 정비계획 사항 : 변경없음

2. 변경사유
   ○ 1973년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1987년 5월 사업 완료 이후 30년이 경과된 구역으로서,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보행 활성화 등 가로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확대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정비기반시설 결정도(변경없음), 정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도서 참조

4.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2133-4633) 및 중구 도심재생과(☎3396-578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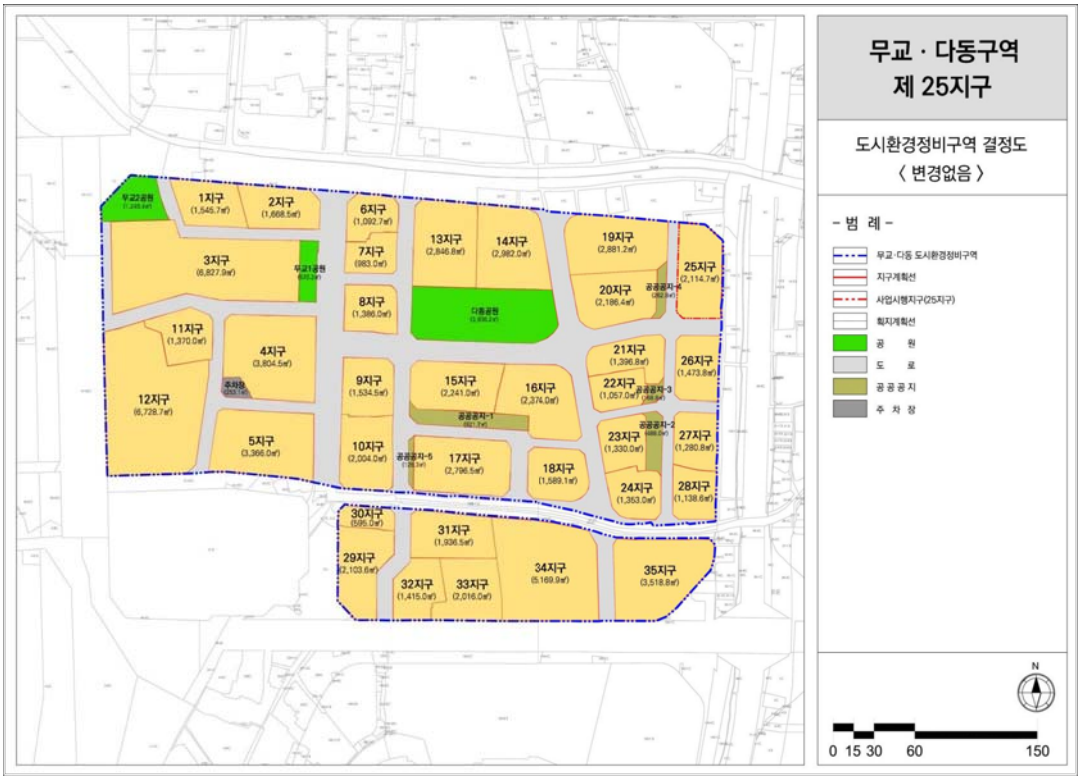
무교 · 다동구역
제 2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
- 범 례 -
무교·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지구계획선
사업시행지구(25지구)
획지계획선
공 원
도 로
공 공 지
주 차 장
N
0 15 30 60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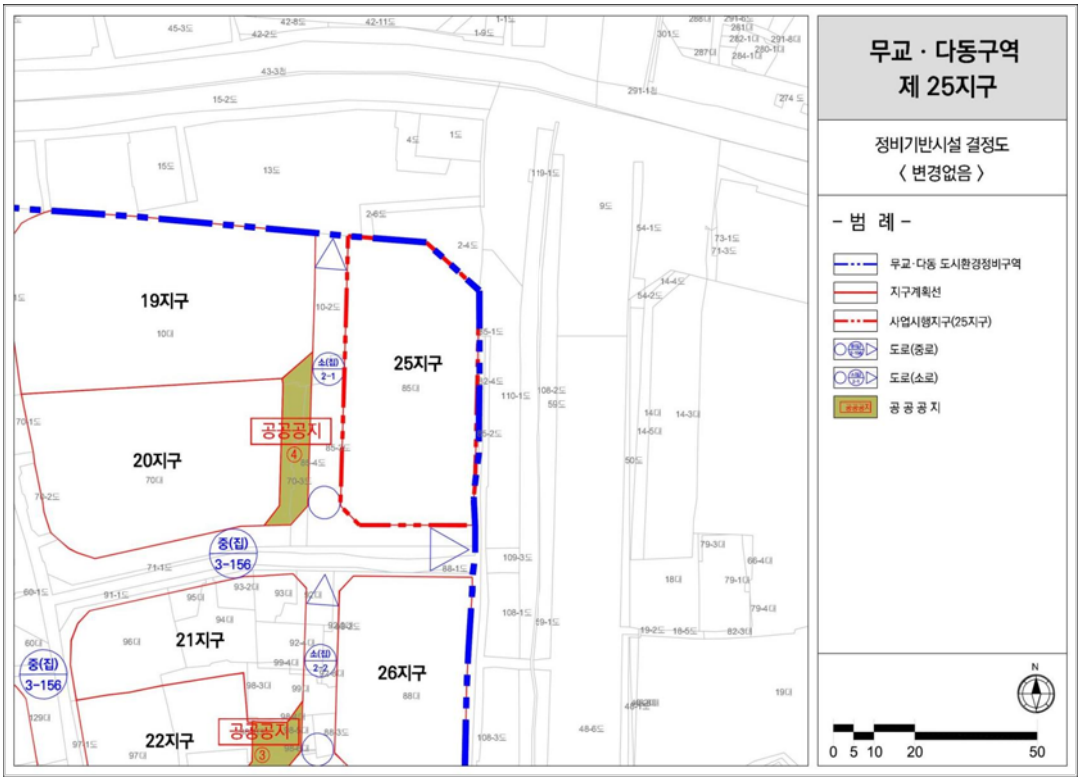
무교 · 다동구역
제 25지구
정비기반시설 결정도
〈 변경없음 〉
- 범 례 -
무교·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지구계획선
사업시행지구(25지구)
도로(중로)
도로(소로)
공 공 공 지
19지구
20지구
21지구
22지구
25지구
26지구
공공공지
N
0 5 10 2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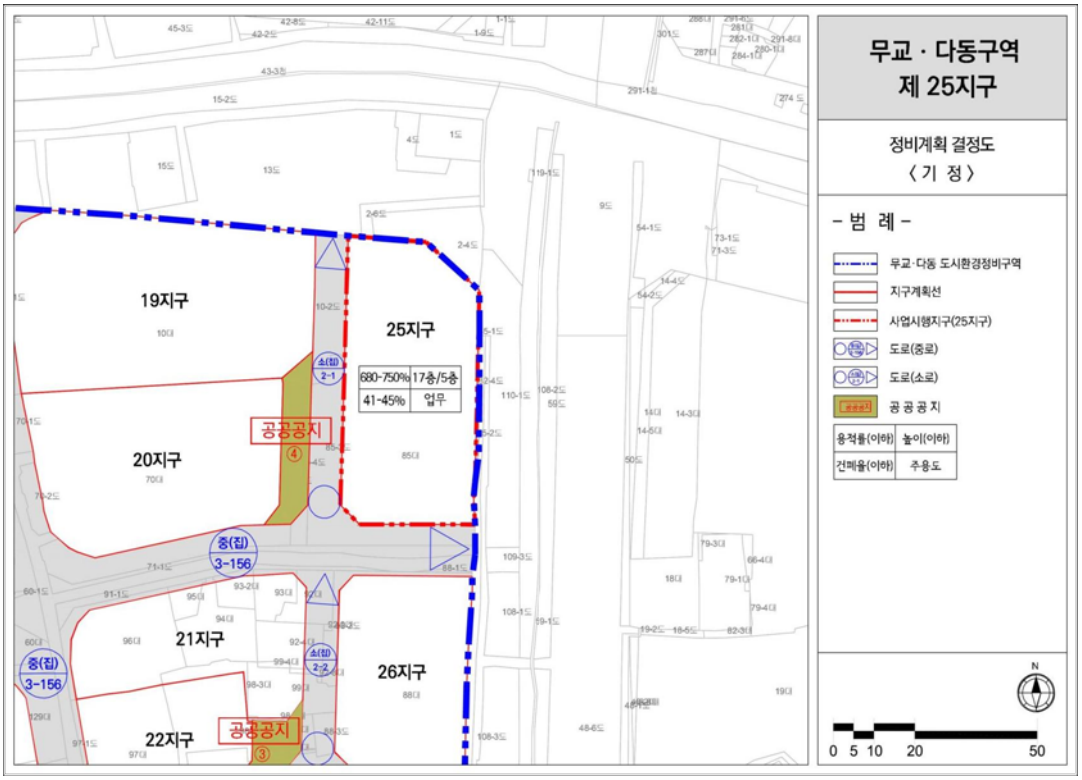
19지구
20지구
21지구
22지구
25지구
26지구
680-750% 17층/5층
41-45% 업무
공공공지
중(집) 3-156
소(집) 2-1
소(집) 2-2
무교·다동구역
제 25지구
정비계획 결정도
〈 기 정 〉
- 범 례 -
무교·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지구계획선
사업시행지구(25지구)
도로(중로)
도로(소로)
공 공 공 지
용적률(이하) 높이(이하)
건폐율(이하) 주용도
N
0 5 10 2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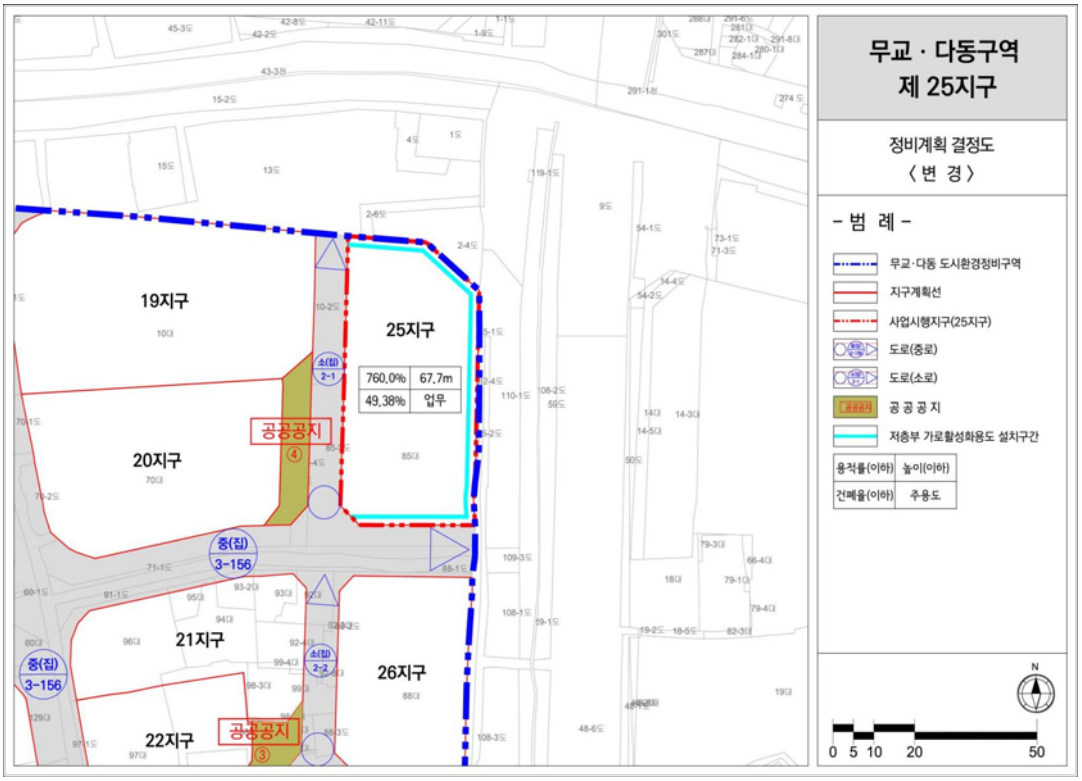
19지구
20지구
21지구
22지구
25지구
26지구
760.0% 67.7m
49.38% 업무
공공공지
중(집) 3-156
소(집) 2-1
소(집) 2-2
무교·다동구역
제 25지구
정비계획 결정도
〈 변 경 〉
- 범 례 -
무교·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지구계획선
사업시행지구(25지구)
도로(중로)
도로(소로)
공 공 공 지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
용적률(이하) 높이(이하)
건폐율(이하) 주용도
N
0 5 10 20 5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3호

도시관리계획[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992-729호('92.12.23.)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공고 제2000 -593호(2000.9.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된 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양천구 신정동 1268번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17년 제1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07.12.)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양천구 신정동 1268번지에 대하여 주변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계획을 변경하고, 양천구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신투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양천구 신정동 643-1번지 일원	179,785.6 (5,399.9)	-	179,785.6 (5,399.9)	최초결정 서고 제2000-105호 (2000. 5. 12)

※ ( ) 면적은 사업대상지 신정동 1268번지 면적임.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79,785.6	-	179,785.6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390.5	-	5,390.5	3.0
주거지역	소계	174,395.1	-	174,395.1	97.0
	제1종일반주거지역	30,632.7	-	30,632.7	17.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991.7	-	1,991.7	1.1
	제3종일반주거지역	141,770.7 (5,399.9)	-	141,770.7 (5,399.9)	78.9 (3.0)

※ ( ) 면적은 사업대상지 신정동 1268번지 면적임.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기정)

도면 번호	명 칭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위 치	면 적(㎡)
1	공동주택용지	1블럭	24,981.8	신정동 1259번지	24,981.8
		2블럭	16,108.2	신정동 1273번지	16,108.2
		3블럭	21,187.4	신정동 1276번지	21,187.4
		4블럭	23,168.6	신정동 1277번지	23,168.6
		5블럭	11,689.3	신정동 1258번지	11,689.3
	근린생활용지	1	1,964.5	신정동 1267번지	1,964.5
	종교시설	1	891.2	신정동 1271번지	891.2
		2	828.5	신정동 1257번지	828.5
		3	659.9	신정동 1262번지	659.9
	아파트형공장	1	5,596.4	신정동 1254번지	5,596.4
	의료시설	1	5,399.9	신정동 1268번지	5,399.9

※ 위치는 택지개발사업 완료후 변경된 지번으로 정정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도면 번호	명 칭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위 치	면 적(㎡)
1	공동주택용지	1블럭	24,981.8	신정동 1259번지	24,981.8
		2블럭	16,108.2	신정동 1273번지	16,108.2
		3블럭	21,187.4	신정동 1276번지	21,187.4
		4블럭	23,168.6	신정동 1277번지	23,168.6
		5블럭	11,689.3	신정동 1258번지	11,689.3
	근린생활용지	1	1,964.5	신정동 1267번지	1,964.5
	종교시설	1	891.2	신정동 1271번지	891.2
		2	828.5	신정동 1257번지	828.5
		3	659.9	신정동 1262번지	659.9
	아파트형공장	1	5,596.4	신정동 1254번지	5,596.4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용지	1	5,399.9	신정동 1268번지	5,399.9

※ 위치는 택지개발사업 완료후 변경된 지번으로 정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1)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

■ 지정·허용용도 계획

구분	명칭	도면표시번호	지정용도	허용용도	비고
기정	공동주택용지	공동주택 1,2,3,4,5	공동주택	-	변경없음
기정	근린생활용지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	
기정	종교시설	종교시설	종교시설	-	
기정	아파트형공장	아파트형공장	아파트형공장	-	
기정	의료시설	의료시설	의료시설	-	대상지
변경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용지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용지	의료시설 (전용면적 4,500㎡이상)	A	
기정	주차장	노외주차장	주차장	-	변경없음
기정	공용의 청사	파출소	파출소	-	
		동사무소	동사무소	-	
		우체국	우체국	-	
기정	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	
기정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	

■ 허용용도 계획표

허용용도 A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바닥면적 합계 2,000㎡ 미만),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바닥면적 합계 3,000㎡ 미만),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바닥면적 합계 3,000㎡ 미만)

■ 불허용도 계획

구분	명칭	도면표시번호	불허용도	비고
기정	공동주택용지	공동주택 1,2,3,4,5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변경없음
기정	근린생활용지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3, 4호 이외의 시설	
기정	종교시설	종교시설	관련법상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기정	아파트형공장	아파트형공장		
기정	의료시설	의료시설	관련법상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대상지
변경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용지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용지	관련법상 지정 · 허용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구분	명칭	도면표시번호	불허용도	비고
기정	주차장	노외주차장	관련법상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변경없음
기정	공용의청사	파출소		
		동사무소		
		우체국		
기정	학교	초등학교		
기정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2)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계획(변경)

■ 건폐율 및 용적률 계획

구분	명 칭	도면표시번호	용적률(%)	건폐율(%)	비고
기정	공동 주택용지	1	290이하	관계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변경없음
		2	300이하		
		3	290이하		
		4	265이하		
		5	290이하		
기정	근린생활용지	근린생활시설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변경없음
기정	종교시설	종교시설			
기정	아파트형공장	아파트형공장			
기정	의료시설	의료시설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대상지
변경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용지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용지	250이하	50이하	
기정	주차장	노외주차장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변경없음
기정	공용의 청사	파출소			
		동사무소			
		우체국			
기정	학교	초등학교			
기정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상가, 유치원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 및 조례에 의함

3) 건축물의 높이계획(변경)

■ 높이계획

구분	명 칭	도면표시번호	높이	비고
기정	공동주택용지	공동주택 1,2,3,4,5	고층	변경없음
기정	근린생활용지	근린생활시설	관련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허용되는 높이	변경없음
기정	종교시설	종교시설		
기정	아파트형공장	아파트형공장		

구분	명 칭	도면표시번호	높이	비고
기정	의료시설	의료시설	관련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허용되는 높이	대상지
변경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용지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용지	45m이하	
기정	주차장	노외주차장	관련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허용되는 높이	변경없음
기정	공용의 청사	파출소		
		동사무소		
		우체국		
기정	학교	초등학교		
기정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4)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공지 및 건축선계획 : 변경없음

■ 관련법규 및 서울특별시 및 양천구 건축조례에 의거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로 건축

5) 공공기여 계획

위치	공공기여 용도	공공기여 내용	세부계획	공공기여량	관리청
양천구 신정동 1268번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 제11호 노유자시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 대상지 건축물과 연계하여 공공기여 건축물 건립 후 관리청(양천구)에 기부채납	• 건축허가 전까지 공공기여 세부계획 (비용산정, 관리청 지원, 시설운영계획, 이행담보 방안 등)은 양천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 부지면적의 10.5%이상 [계획(안) : 11.73%]	• 양천구청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기준」 준용

Ⅲ.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조건부가결 사항('17.7.12.)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건축허가 전까지 접근성 및 환경적 측면(환기, 일조) 등을 고려하여 위치·형태를 우리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것

○ 의료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타시설의 이용동선 분리를 위해 코어분리 계획 필요

○ 조업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출입이 가능토록 경사로 및 주차장 높이 확보 필요

Ⅳ. 관계도면 : 붙임참조 (세부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 (그 외 세부 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열람장소

○ 양천구 균형개발과(☎02-2620-3531) 및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8)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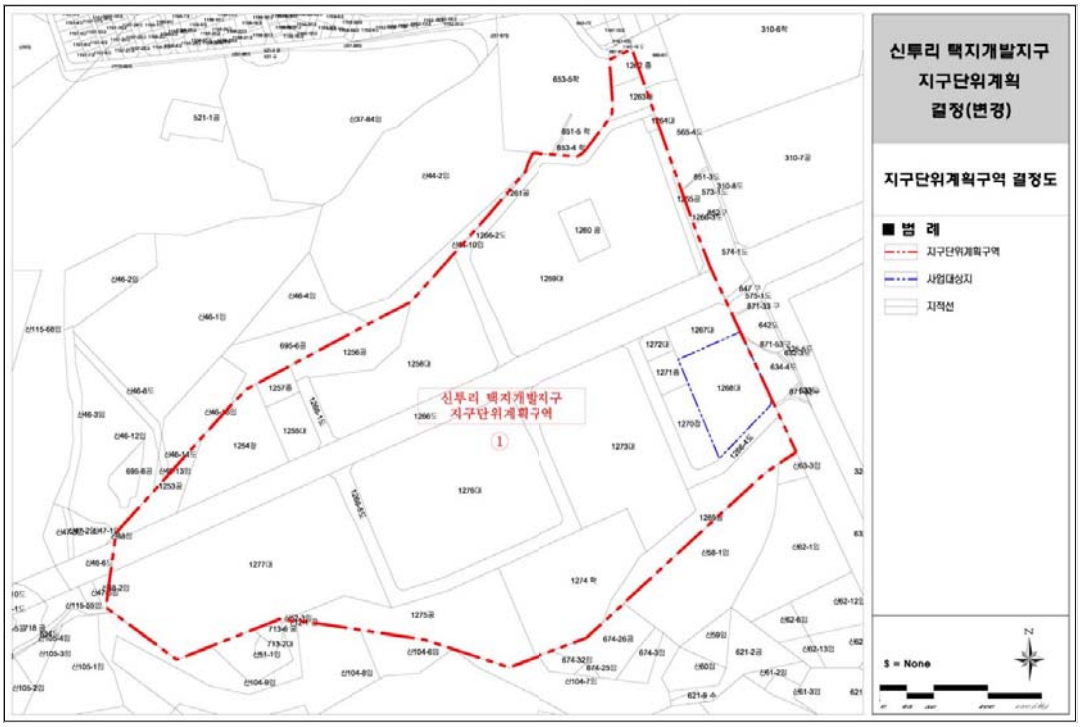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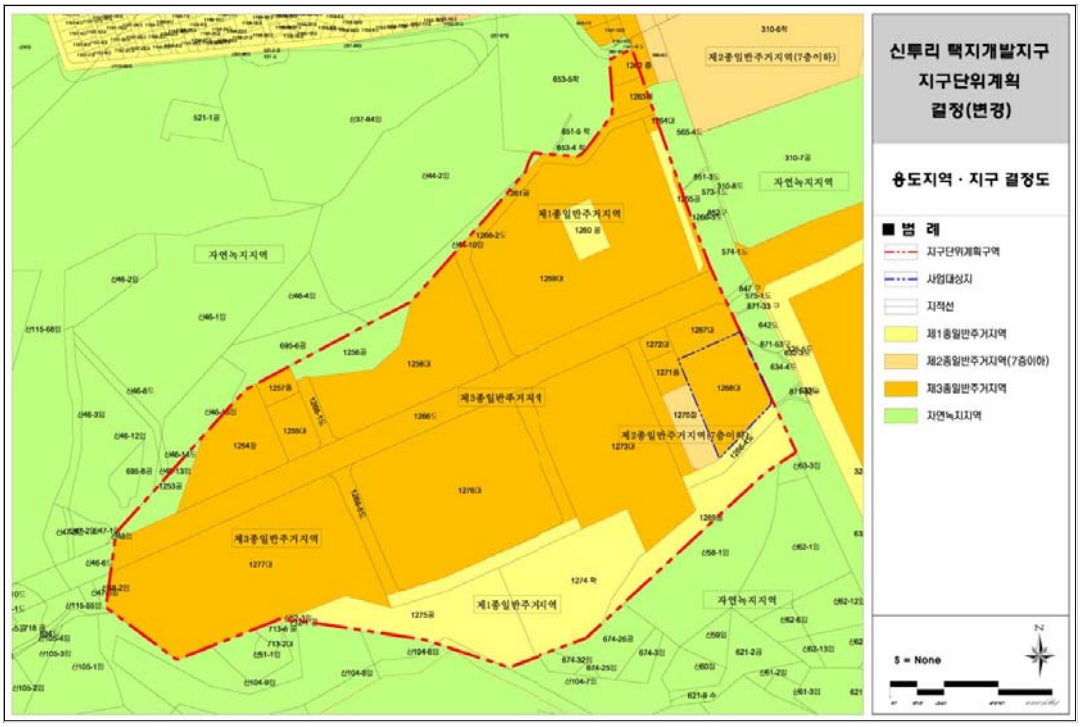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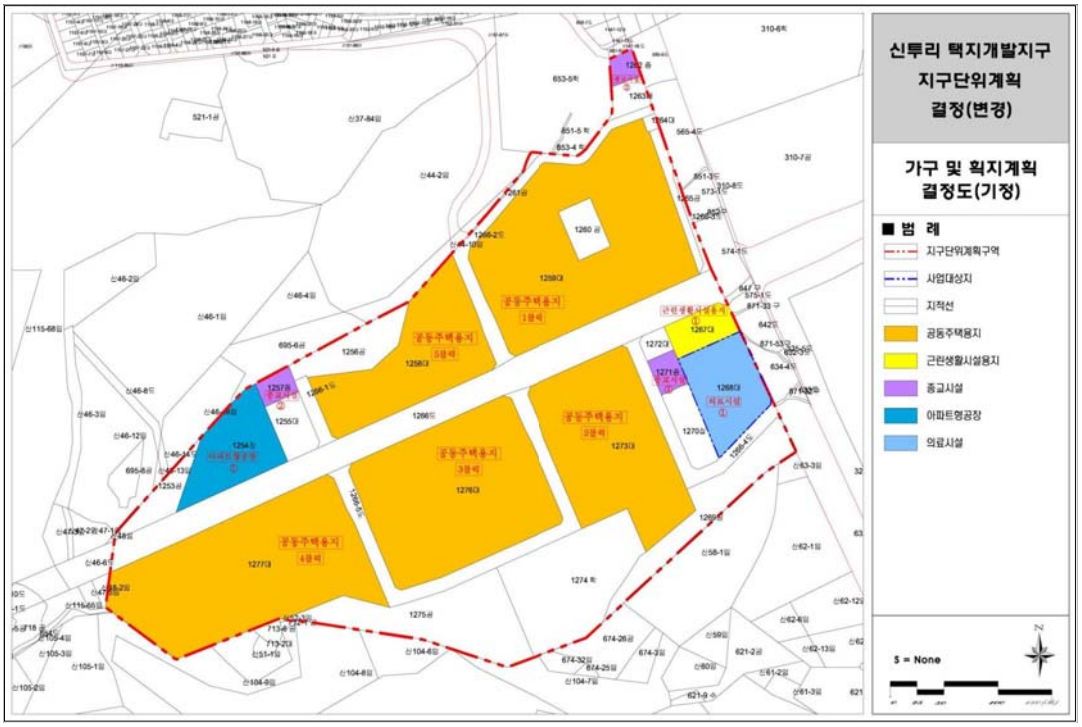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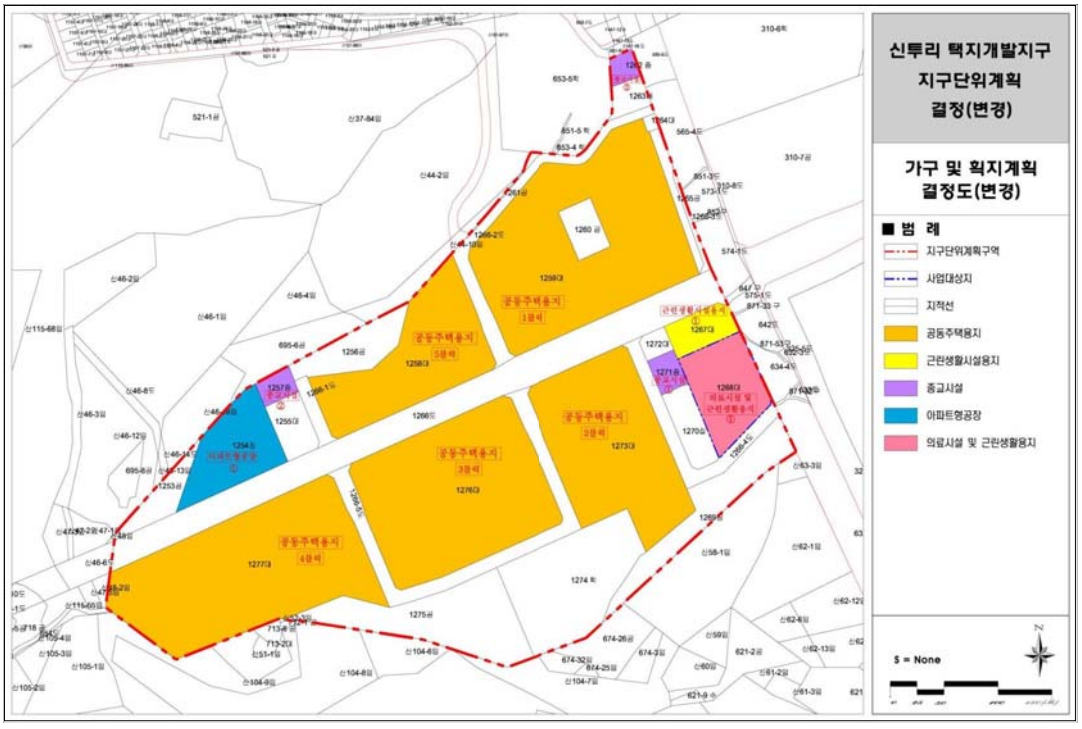

■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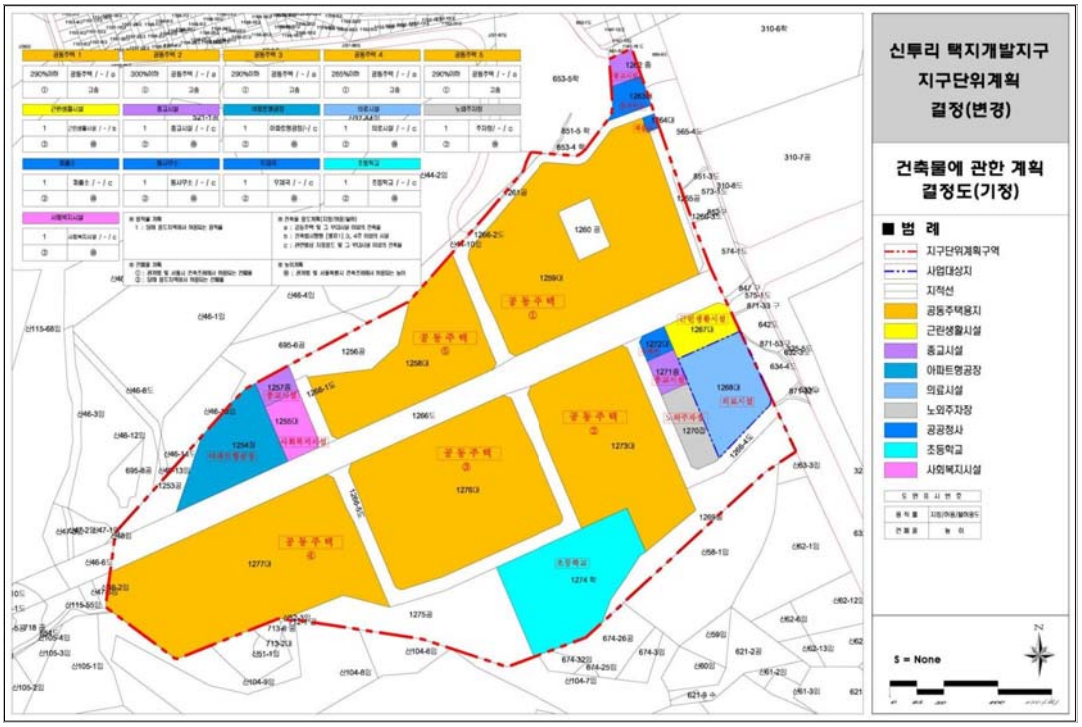

■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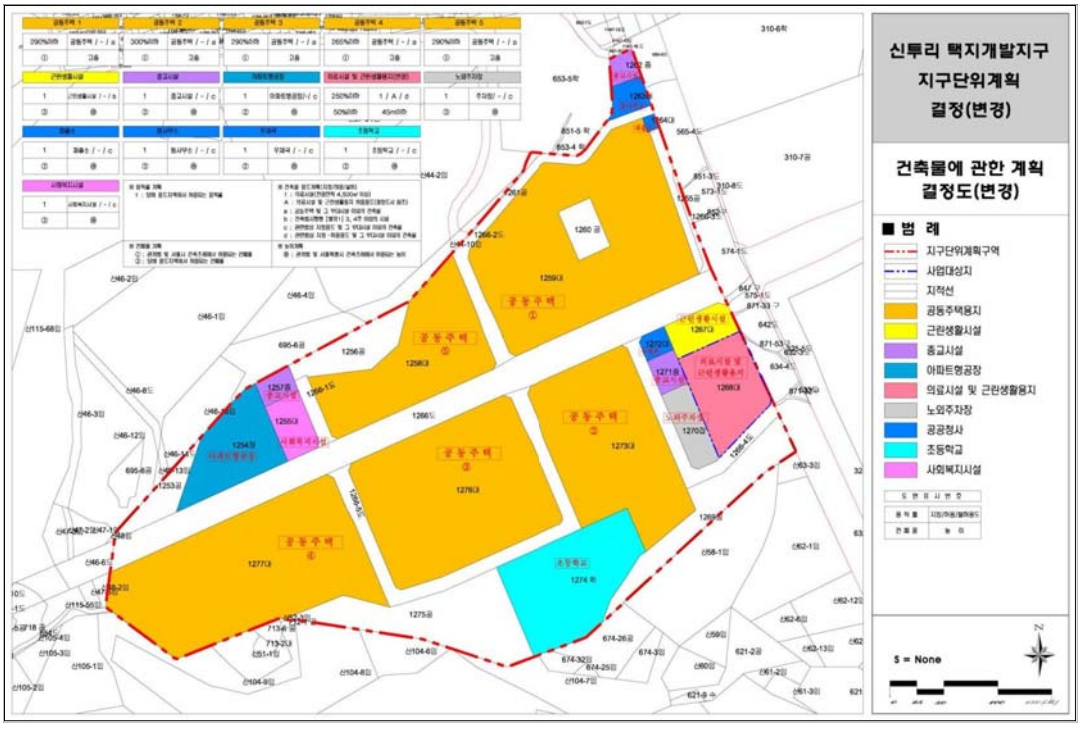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705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측량업 등록 신고사항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등록일자
일반측량업 (04-003782	㈜신길이앤씨 (206-81-82730	김용철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110, 300 (동보빌딩)	2017.07.2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토지관리과(☎ 02-2133-4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707호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지원 계획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동 조례 제 39조 및 제60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제27조,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5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 비용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신청 대상자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토지등소유자

2. 융자 용도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개량비 및 신축비용

3. 융자 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택개량비용			주택신축비용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융자한도	45	20 (최대 4가구)	20 (세대당)	90	40 (최대 4가구)	40 (최대 4가구)
	보증서, 담보			담보		
적용금리	0.7%					
융자조건	-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 융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 시공자에게 지급					

4. 2017년 융자예산 : 635,000천원
   -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5. 융자 조건
   가. 담보 및 보증서 융자
      - 융자대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담보 융자)
      - 보증기관의 보증서

   나. 융자실행
      - 주택개량비용 및 주택신축공사비
        ·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직접 분할 융자

구 분	계약금(공사 착공시)	중도금(공정률 50%)	잔금(공사 완공시)
보증서 융자	-	-	100% 지급
부동산 담보융자	50% 지급	-	50% 지급

   다. 융자신청인의 의무
      - 주택개량비용 융자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는 주택개량 공사 완공 이후 임대차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조건
        ※ 주택개량 공사완료 확인서 제출 : 자치구 융자담당부서

6. 융자 기간

주택개량비 및 신축 공사비 : 3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연4회)
※ 단, 해당 주택 매매시(권리변동)전액 일시상환

7.적용금리
-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 0.7%
※ 채권확보를 위한 감정평가비용, 담보설정비용, 보증료는 융자지원 수탁기관에서 부담

8. 융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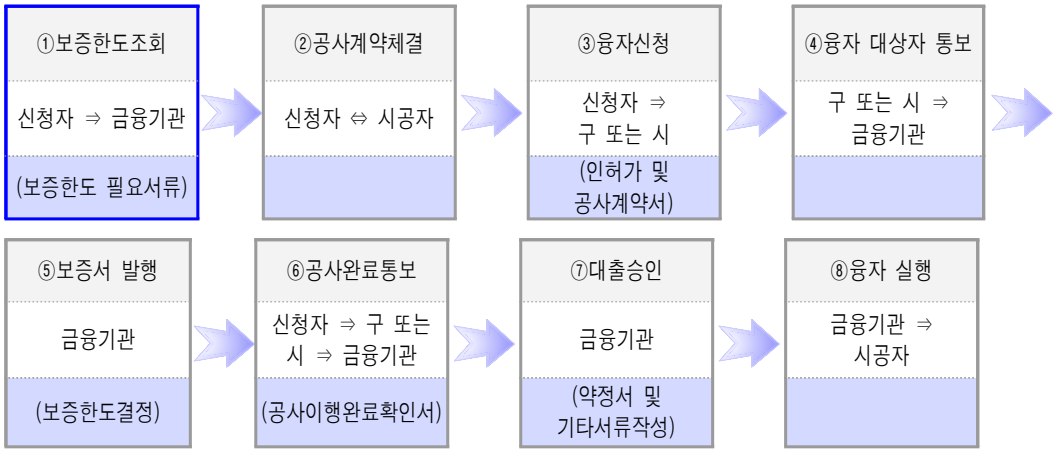

9. 융자업무 수탁기관 : (주)우리은행

10. 융자결정의 취소
가. 융자금을 주택개량자금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11.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 까지)

12. 신청서류
- 개량 : 융자신청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공사전 사진(공사완료 후 사진)
- 신축 : 융자신청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건축허가서류, 공사 착공계

13. 기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택개량 상담실(☎2133-1216) 또는 자치구 주택개량 융자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주택개량 융자 담당부서

자치구	부서	연락처
강북구	도시재생과	901-2564
강남구	주택과	3423-6075
양천구	균형개발과	2620-3502
광진구	주택과	450-7698
	도시계획과	450-7684
구로구	도시재생과	860-2272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3425-5996
영등포구	주택과	2670-3538
		2670-3537
은평구	주거재생과	351-7356
	건축과	351-7503
서대문구	주택과	330-1539
마포구	주택과	3153-9322
종로구	주택과	2148-2622
	도시개발과	2148-2687
중구	주택과	3396-5725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2199-7462
성북구	도시재생디자인과	2241-2793
동대문구	건축과	2127-4764
성동구	주거정비과	2286-6578
노원구	주택사업과	2116-3918
중랑구	도시개발과	2094-2202
	주택과	2094-2136
강서구	주택과	2600-6150
금천구	건축과	2627-1624
동작구	도시전략사업과	802-2886
도봉구	도시계획과	2091-3563
	주택과	2091-3513
관악구	도시계획과	879-6364
서초구	건축과	2155-6821
송파구	주거재생과	2147-288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708호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 이자지원 계획 공고

저층주거지 내 주민 스스로의 소규모 주택개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 이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 대상자 : 개량 및 신축을 하고자하는 토지등소유자

2. 융자 내용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개량 및 신축 건축 공사비

3. '17년 예산 : 37,500천원

4. 융자 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택개량비용			주택신축비용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
융자한도	45	20 (최대 4가구)	20 (세대당)	90	40 (최대 2가구)
	신 용			담 보	
	- 뉴타운 · 재개발 구역은 개량비용 융자한도의 1/2(조합설립 이전단계만 지원)				
융자조건	- 융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5. 융자 지원 시기
   - 개량 : 공사를 완공한 때에 융자금 전액을 융자
   - 신축 : 공사를 착공한 때 융자금의 50%, 완공한 때 융자금의 50%을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6. 융자 기간 : 5년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 단, 해당 주택 매매 시(권리변동) 전액 일시상환

7. 이자 지원 : 적용금리의 연2.0%은 서울시가 지원, 나머지 차액은 융자신청인 부담

8. 융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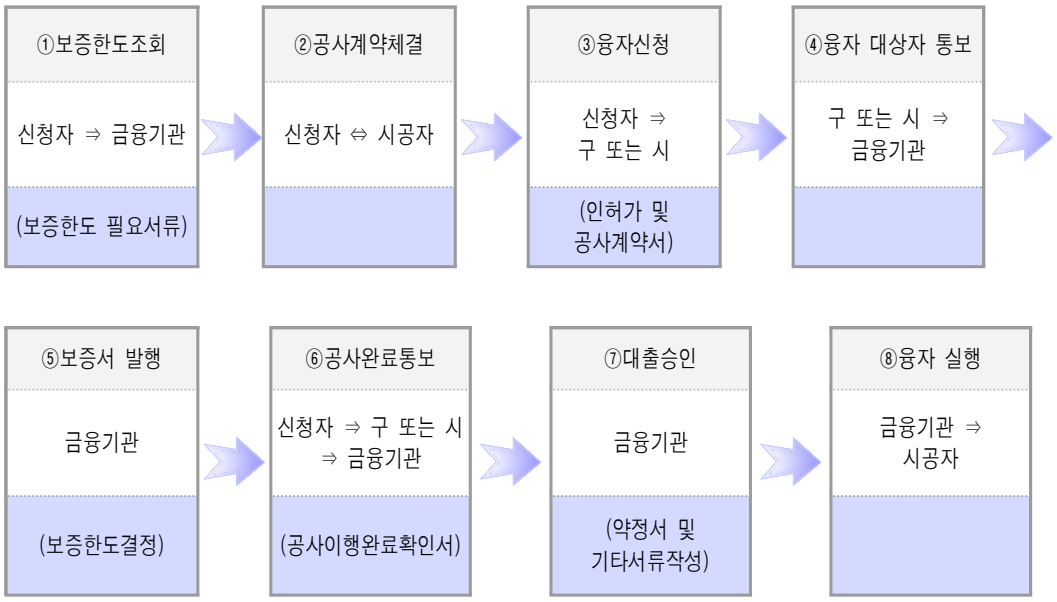

9. 융자업무 수탁기관 : ㈜우리은행

10.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 까지)

11. 신청서류
-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신청서, 공사계약서(견적서 포함)

1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시 도시재생본부 주택개량 상담실(☎ 2133-1216) 또는 자치구 주택개량 융자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주택개량 융자 담당부서

자치구	부서	연락처
강북구	도시재생과	901-2564
강남구	주택과	3423-6075
양천구	균형개발과	2620-3502
광진구	주택과	450-7698
	도시계획과	450-7684
구로구	도시재생과	860-2272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3425-5996
영등포구	주택과	2670-3538
		2670-3537
은평구	주거재생과	351-7356
	건축과	351-7503
서대문구	주택과	330-1539
마포구	주택과	3153-9322
종로구	주택과	2148-2622
	도시개발과	2148-2687
중구	주택과	3396-5725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2199-7462
성북구	도시재생디자인과	2241-2793
동대문구	건축과	2127-4764
성동구	주거정비과	2286-6578
노원구	주택사업과	2116-3918
중랑구	도시개발과	2094-2202
	주택과	2094-2136
강서구	주택과	2600-6150
금천구	건축과	2627-1624
동작구	도시전략사업과	802-2886
도봉구	도시계획과	2091-3563
	주택과	2091-3513
관악구	도시계획과	879-6364
서초구	건축과	2155-6821
송파구	주거재생과	2147-288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710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업 체 명: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2. 대 표 자: 성상록(1954. 2.10.)
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21호
6. 등록취소일자: 2017. 7.24.
7. 등록취소사유: 자진반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711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업 체 명 : 주식회사 지오그린21
2. 대 표 자 : 천정용(1972.11.01.), 이명재(1973.09.22.)
3. 영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901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22호
6. 등록일자 : 2017. 7.24.
7. 전화번호 : 02-6330-25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723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측량업 등록 신고사항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등록일자
일반측량업 (04-003783)	조은이엔지 (176-36-00311)	진범준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41길 91, 402호(시흥동, 태정빌딩)	2017.07.2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토지관리과(☎ 02-2133-4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724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업 체 명: ㈜아이지비컨설팅
2. 대 표 자: 박희일(1954. 2.10.), 이승용(1968.11.19.)
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2길 22, 2층 (서초동 서송빌딩)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82호
6. 등록취소일자: 2017. 7.26.
7. 등록취소사유: 자진반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731호

2017년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지원 조례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2017년 추가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업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대상기간 : 2016. 1. 1.~12. 31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사업 또는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 8대 신성장동력산업 :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

○ 지원조건
-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인 기업
- 2016년 신규고용으로 증가한 상시고용인원 증가분이 전년도(2015년) 대비10명을 초과한 기업(단, 2016년 신설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한 기업)※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내국인을 대상으로 함

<상시고용인원>

◆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인원(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②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 신청일 현재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비율은 제외함
-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2016년 신규 고용하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

□ 지원금액
○ 1기업 당 4억원 이내 (고용보조금 2억원 이내 + 교육훈련보조금 2억원 이내)
- 신규고용 10인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하, 최대 6개월분

○ 지원예산 : 172백만원
※ 예산액에 비해 신청 기업이 많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8. 3. ~ 8. 31.
○ 접수방법 : 방문, 우편(마감일 소인 유효) 또는 E-mail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전화번호 : 02-2133-5358 (보조금 지원 담당자)
- e-mail : 2sujin@seoul.go.kr
- 주 소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투자유치과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 별지 제2호 서식) 1부
- 상시 고용현황보고서(붙임 별지 제3호 서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 최근 5년 이내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입금확인서 사본 1부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15.1 월~12월분, '16.1월~12월분) 사본 1부
-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 1부(신청일 현재 www.ei.go.kr에서 출력)
- 사업장고용정보현황(고용현황, 퇴사자 2종류로 제출) 1부
(신청일 현재 total.kcomwel.or.kr의 사업장>정보조회>근로자고용 정보현황조회 (20103)에서 고용상태 유형별(고용/고용종료)로 출력)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각 1부(신청일 현재 www.4insure.or.kr에서 출력)
- 근로자명단('15.1 월~12월분, '16.1월~12월분) 사본1부
※ 입사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표시 요망
-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 1부
- 회사소개서[최근 5년 이내 외국인투자실적 및 향후 투자계획 (2019년까지) 포함]
- 건물사용권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교육훈련 실시내용 및 지출 증빙자료 1부
- 보조금 신청자의 인적사항
·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전화번호(휴대폰 등), 외국인등록번호
· 내국인 : 주민등록표(초본), 전화번호(휴대폰 등)
※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이행사항
○ 보조금의 수령 및 지출에 필요한 계좌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인건비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수령 기업은 보조금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은 보조금 신청 전년도(2016년도)의 상시고용인원 및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에 따른 보조금은 환수함

- 상기 지급조건 위반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받은 경우
- 사업장이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 기타사항

○ 자세한 문의 사항은 투자유치과 담당자(☏02-2133-5358, 2sujin@seoul.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신성장동력산업 표준 분류 1부.
2. 보조금지원신청서 1부.
3. 상시 고용현황보고서 1부.

[별표 2]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표준 분류

구분	업종코드 및 업종명
1. IT융합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2918 사무용 기계 및 장비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 및 구축서비스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2. 디지털콘텐츠산업	33402 영상 게임기 제조업
	58211 온라인,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구분	업종코드 및 업종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3910 뉴스제공업
	73901 매니저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공연단체
	90191 공연기획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3. 녹색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38110 지정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120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38130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38210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구분	업종코드 및 업종명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38301 금속원료 재생업
	38302 비금속원료 재생업
	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1224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42110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46791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 비즈니스서비스업	70 연구개발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2 비금융 지주회사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909 그 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57 교육지원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5. 패션·디자인	73201 인테리어디자인업
	73202 제품디자인업
	73203 시각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구분	업종코드 및 업종명
6. 금융업	64121 국내은행
	64122 외국은행
	64131 신용조합
	64132 상호저축은행
	64139 기타저축기관
	64201 자산운용회사
	64209 기타투자기관
	64911 금융리스업
	64912 개발금융기관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64991 기금 운영업
	64992 금융지주회사
	649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융업
	69400 무형재산권 임대업
	65110 생명 보험업
	65121 손해보험업
	65122 보증 보험업
	65131 건강보험업
	65139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65200 재보험업
	66121 증권중개업
	66122 선물중개업
	66191 유가증권관리 및 보관업
	66192 투자자문업
	66201 손해사정업
	66202 보험대리 및 중개업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구분	업종코드 및 업종명
7.관광컨벤션	55111 호텔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대행업
8. 바이오메디컬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86101 종합병원
	86102 일반병원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보조금 지원신청서

외국 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영문)			국적	
외국인 투자 기업	상호 또는 명칭	한글 :		대표자	
		영문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본사)		업 종		
	주 소	본 사	(전화:)		
		투 자 사업장	(전화:)		
	설립일자	년 월 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자	년 월 일	
※ 투자사업명					
총투자금액		원(USD 상당)			
외국인투자금액 및 신고(예정)일자		원(USD 상당), 년 월 일			
사업 또는 생산품목					

□ 고용보조금

전년도 상시 고용인원	명	전전년도 상시 고용인원	명	신규 고용인원	명
보조금 신청인원	명	보조금 신청액	원 (원 × 명 × 월)		

□ 교육훈련보조금

교육훈련기관		신규채용 교육훈련 인원	명	
보조금 신청인원	명	보조금 신청액	원 (원 × 명 × 월)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요령]

① 투자사업명란에는 “○○지역 사업장 신설(또는 증설)의 건”과 같이 기재합니다.

② 사업 또는 생산품목란에는 영위, 생산 또는 수행하는 사업 또는 생산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③ 보조금 신청인원은 내국인 신규 고용인원 또는 신규채용 교육훈련 인원에서 10명을 제외한 인원을 기재합니다.

※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그 금액은 추후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통보되기 전에 실행된 투자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구비서류

1. 회사 소개서(향후 투자계획 포함)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3.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입금 확인서 사본 1부
4. [별지 제3호] 상시 고용현황 보고서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3호에 해당하는 근무기간) 사본 1부
6. 근로자 명단(별지 제3호에 해당하는 근무기간) 사본 1부
   ※ 입사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표시 요망
7.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 (고용현황, 퇴사자 2종류로 제출) 1부
8. 교육훈련 실시내용 및 지출 증빙자료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해당)
9.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 1부
10. 건물 사용권 증명 서류 1부

[별지 제3호서식]

상시 고용현황 보고서

(단위:명)

<table>
<tr><td>외국인
투자
기업명</td><td colspan="2"></td><td colspan="2">사업등록일</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9">고용
현황</td><td rowspan="5">전전년도
상시
고용인원</td><td rowspan="4">월별 상시
고용인원</td><td>1월</td><td>2월</td><td>3월</td><td>4월</td><td>5월</td><td>6월</td><td>7월</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8월</td><td>9월</td><td>10월</td><td>11월</td><td>12월</td><td colspan="2">합계</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월평균 상시
고용인원</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4">전년도
상시
고용인원</td><td rowspan="3">월별 상시
고용인원</td><td>1월</td><td>2월</td><td>3월</td><td>4월</td><td>5월</td><td>6월</td><td>7월</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8월</td><td>9월</td><td>10월</td><td>11월</td><td>12월</td><td colspan="2">합계</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월평균 상시
고용인원</td><td colspan="7"></td></tr>
</table>

[작성요령]

※ 월별 상시 고용인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원으로서 내국인 근로자 수

※ 내국인 근로자 수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74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 록 번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 사용기간
2017-73	(재)한국소방복지재단 (대표 : 허수탁)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0가길 12	- 화재취약지역 화재예방, 대응장비 지원 및 소방관계인 복리증진 사업	1,000 (현금및물품)	전국	'17.7.27 ~ '18.6.30
						'17.7.27 ~ '18.12.31
2017-74	(재)홍진기법률연구재단 (대표 : 홍석조)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12	- 법학전반에 대한 조사와 연구활동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법학문화 발전 도모	500 (현금)	전국	'17.8.1 ~ '18.7.31
						'17.8.1 ~ '19.7.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741호

공인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11조(공고)에 의거하여, 공인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인 폐기
- ○ 공인폐기 사유 :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 개정에 따른 관용심사위원회 폐지
- ○ 공인폐기 일자 : 2017년 7월 27일

○ 공인폐기 내용

공인 명	규격	인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 관용심사위원회인	3.6㎝ × 3.6㎝		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743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정용철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63길 ** ***동 ****호 (이문동, *******아파트)	일시: 2017.05.18. 06:54 장소: 서대문구 남가좌동 연희IC (32톤) 내용: 총중량 36.55톤(4.5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6.27. 납기일: 2017.08.31.
조용국	서울시 성북구 보국문로16나길 *, *층 *호 (정릉동, **빌라)	일시: 2017.06.05. 16:23 장소: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 하늘공원앞 내용: 축하중 11.9톤(1.9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6.27. 납기일: 2017.08.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박광호	전라남도 순천시 왕궁길 55 ****동***호(조례동, **아파트)	일시: 2017.03.22. 06:51 장소: 용산구 한남동 남산1호터널앞 한남 제2고가(20톤) 내용: 총중량 23.95톤(3.95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4.26. 납기일: 2017.06.30.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17. 08.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자우편: bis8810@seoul.go.kr
      - 전화번호: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746호**

2017년 제1차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 공고

지방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차량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내지 제96조 규정에 따라 매각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매대상재산(차량) : 1대

순번	차량번호	차량명	감정평가액	소유자	주민번호	소유자주소
1	72저1145 (2001년식)	이스타나-롱 15코치	500,000	예**단 임*한	530624-1******	경기도 안성시 진촌진말길 **-** (삼죽면)

2.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17년 8월 15일(화) ~ 2017년 8월 21일(월) 16:00시
   ※ 입찰신청 후 은행 가상계좌 부여시간이 약15분 정도 소요되니, 입찰마감 30분전까지 입찰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입찰등록 기간 내에 입찰서 작성 및 입찰보증금 납부
   ※ 오토마트 전산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여 마감일시 : 2017년 8월 21일(월) 16:00시
4. 개찰결과 매각결정 일시 : 2017년 8월 22일(화) 14:00시 이후 (주)오토마트 홈페이지 발표
5. 유찰차량의 재공매
   가.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일정에 따라 재공매 합니다.

구분	회차	입찰시작일시	입찰마감일시	매각결정일시	발표 장소
재공매	1차	2017-08-29 09:00	2017-09-04 16:00	2017-09-05 14:00이후	오토마트 홈페이지
재공매	2차	2017-09-12 09:00	2017-09-18 16:00	2017-09-19 14:00이후	오토마트 홈페이지
재공매	3차	2017-10-03 09:00	2017-10-11 16:00	2017-10-12 14:00이후	오토마트 홈페이지
재공매	4차	2017-10-24 09:00	2017-10-30 16:00	2017-10-31 14:00이후	오토마트 홈페이지
재공매	5차	2017-11-07 09:00	2017-11-13 16:00	2017-11-14 14:00이후	오토마트 홈페이지

   나. 각 회차별로 매각예정가격은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 차감되어 진행되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차감되어도 매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회 진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 및 등록 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www.automart.co.kr) 입찰 등록 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나.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자격은 다음 계좌에 <u>입찰보증금을 매각예정가격의 10/100 이상을 입금</u>해야 부여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입금)계좌 : 입찰 신청 후 입금 계좌번호 자동부여
        (입찰신청 시에 [공매+입찰자명]으로 은행의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을 완료한 후 입찰보증금의 총합계액을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입찰보증금을 입금한 후에는 입찰기간 내에 차량의 추가입찰은 불가합니다**)

다.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과 입찰 후 개찰일시 전 공매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자의 입찰 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주의 : 입찰 신청 후 약 15분정도 지난 후에 입금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은행 업무시간외(휴일 및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에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입찰 신청 후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

※ **LPG차량 중 제조업체로부터 생산되어 일반인이 매입 가능한**(예 : 레조, 카렌스, 카스타, 싼타모, 카니발, 트라제, 싼타페 등) **차량을 제외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조된 LPG차량은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에 열거한 자에 한하여 취득가능하며, 입찰시 반드시 취득가능한 자 명의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7.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매각예정가액이 공매최저가격임

8. 낙찰방법

가.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일반경쟁입찰(단독입찰도 가능)방식을 적용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단, 국세징수법 제66조 입찰 제한)

나. 낙찰이 될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다. 공매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73조의2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하는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9.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1회 최고절차를 거쳐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10. 차순위 매수신고

가. 차순위 매수신고는 입찰참가시 차순위 매수신고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차순위 매수신고자는 입찰참가시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입찰가격(최고낙찰자의 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차순위 매수신고자의 공매보증금은 매각결정일에 반환되지 않으며 국세징수법 제77조에 따라 최고액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거나 차순위 매수신고 매각불허 결정이 될 때 반환됩니다.

※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후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차순위 매수신고자는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차순위 매수신고자의 매각결정은 최고입찰자의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합니다.

마. 차순위 매수자의 대금납부기간은 매각결정일로 부터7일 이내로 합니다.

바. 차순위 매수신고자의 매각결정이 이루어진 후 대금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1회의 최고절차를 거쳐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외수입 본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10.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첨부된 '물건정보'와 같습니다.

11. 배분요구 종기 : 2017. 08. 14(월)

12. 공매 배분기일 : 공매대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채권자에게 재통지 예정

13.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 하여야만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①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②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 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⑥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나. 위 가항의 채권을 가진 자의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14. 공매재산으로서 매수인으로서의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 오토마트에 공매 공고된 '물건정보'와 같습니다.

15. 공매재산명세서 비치 및 기간
 - 공매회차별 입찰시작 7일전부터 입찰 마감전까지 서울특별시청 38세금징수과에 비치합니다.

16.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등

가.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하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의 등록은 모두 말소됩니다.

나. 매각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잔금납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후 차량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다.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경락받은 경우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는 **건당 15,000원** 등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르는 제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17. 공매의 취소, 중지 및 매각결정취소

가. 체납세금의 납부, 이의신청 등의 사유가 있거나, 공매공고 내용이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에게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및 기타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중지 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①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법원에서 민사집행중인 재산을 우리시 공매에서 낙찰 받은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경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먼저 집행법원에 납부하는 경우

③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 위 나의 ①②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며, ③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중지 또는 매각결정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최고액 입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재산의 공유자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공유자에게 매각결정하고, 우선매수 신고한 공유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8. 주의사항

가. 공매물건의 하자, 외관상태 및 주행거리 표기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압류차량 보관소를 입찰자가 직접 방문하여 차량을 면밀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리인이 입찰자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인터넷 입찰마감 영업일전까지 우리시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각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하며, 낙찰자로 결정되더라도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상의 내용 외에 준수할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국세징수법등 관련법에 의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38세금징수과 세외수입 차량공매담당 이필승 조사관 (☎ 02-2133-3490) 또는 오토마트(☎02-6299-54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752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제117조제1항,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김상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일시 : 2017-03-29 15:07 장소 : 왕십리로(성수동) 내용 : 경기94사5708(트레일러) 차량 길이 2.0미터 초과	처분일 : 2017. 4. 25. 과태료 : 30만원 최초납기일 : 2017. 6. 30. 독촉일 : 2017. 7. 14.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7. 8. 31.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관허사업,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210-1521, 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755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선용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318번길 23, ***동 ****호 (가정동, 하나아파트)	일시: 2017-06-15 05:13 장소: 벌말로 차량: *****7609 내용: 제한 길이 2.9m 초과	과태료 30만원 부과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진술 안내
   가. 의견진술 기한: 공고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20일
   나.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서식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준용), 의견진술 시 의견진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 또한, 의견진술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나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진술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의견진술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759호

강서구 염창동 274-17 역세권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74-17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기간 : 2017. 8. 4. ~ 2017. 8. 17.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TF팀(☎02-2133-4945)

Ⅲ.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가양동, 공항동, 내발산동, 등촌동, 염창동, 화곡동 일대	439,779 (4,425.7)	2002.8.1. (서고 제2002-318호)	재정비(2009.9.17.) (서고 제2009-360호)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나. 최대개발규모 : 변경 없음
   다. 획지 및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E-5-a	4	274-17	274-17	4,043.8	4,425.7	공동개발 (지정)	-	○ 필지합병 (274-17,-19,-20) →274-17
		274-19		228.8				
		274-20		153.1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E-5-a	4	• 공동개발(지정) 해제 - E-5-a : 4 공공개발(지정) → 해제	• 가구 내 3필지가 1필지로 기 합병되어 공동개발(지정) 해제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층	1층	
용도	권장용도	3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업무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불허용도	B1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단,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는 전체 용적률의 15% 이상 적용]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창고시설 • 공장(아파트형 공장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 변경

구 분			전 층	비 고
용도	지정용도	A	•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 역세권 청년주택 • 청년커뮤니티시설 (지하1층, 101.53㎡ 계획)
	불허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정신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권장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주1 :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E-5-a 4	• 지정용도 신설 - 염창동 274-17 :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염창동 274-17 필지에 한하여 지정용도 신설

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건폐율	• 60% 이하	• 좌동	변경없음
용적률	• 기준용적률 : 300% • 허용용적률 : 360%	• 기본용적률 : 500%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
높 이	• 기준높이 : 60m 이하 • 최고높이 : 70m 이하	• 70m 이하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E-5-a 4	• 용적률 변경 - 기정 : 기준 300%, 허용 360% 이하 - 변경 : 기본용적률 500% 이하 • 높이 변경 - 기정 : 기준 60m, 최고 70m 이하 - 변경 : 70m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운영기준 준용

다.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신설)

사업조건 항목		내용	계획사항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임대주택 비율	• 기본용적률의 6%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제공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30.45% - 기본용적률의 6.1%	• 모든 항목을 충족할 경우 기본용적률 500% 부여
주택건설 비중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 공공임대주택 : 전용 18㎡ • 민간임대주택 : 전용 18㎡, 39㎡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E-5-a 4	• 용적률 완화항목 신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완화항목 변경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건축한계선	• 3~5m(간선도로변) • 1~2m(15m미만의 이면도로변)	• 3~5m(간선도로변) • 1~3m(15m미만의 이면도로변)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E-5-a 4	• 건축한계선 추가 지정 - 274-17번지 서측 보행자전용도로 변(3m)	• 보차혼용도로로 사용중인 염창동 274-17 필지 서측 보행자전용도로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한계선(3m) 추가 지정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대지내 공 지	전면공지	• 5m(간선도로변) • 1~2m(15m미만의 이면도로변)	• 5m(간선도로변) • 1~3m(15m미만의 이면도로변)	
	쌈지형 공지	• 용도지역·용적률 상향지역 - 건축연면적 3,000㎡이상 : 45㎡ + 대지면적의 1%이상	좌동	변경없음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E-5-a 4	• 15m미만 이면도로 전면공지 변경 - 274-17번지 서측 보행자전용도로 변	• 보차혼용도로로 사용중인 염창동 274-17 필지 서측 보행자전용도로 변 건축한계선(3m) 추가 지정에 따른 변경

나. 동선 및 주차 : 변경 없음

다. 환경친화적 요소 : 변경 없음

Ⅳ.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773호

서초구 양재동 1365-8번지 일원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외 7필지(1365-9, 1365-10, 1365-17, 1365-18, 1365-19, 1365-20, 1365-21)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8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17. 8. 4. ~ 2017. 8. 17.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TF팀 (☎02-2133-4945)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 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서초구 서초동 1365-8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구역	서초구 서초동 1365-8, 1365-9, 1365-10, 1365-17, 1365-18, 1365-19, 1365-20, 1365-21	-	증)2,805.1	2,805.1	•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초구 서초동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하고자 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805.1	-	2,805.1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805.1	감) 2,805.1	-	-	
일반상업지역	-	증) 2,805.1	2,805.1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비고
		기정	변경		
-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외 7필지(1365-9, 1365-10, 1365-17, 1365-18, 1365-19, 1365-20, 1365-21)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2,805.1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 가구에 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신규	A - 1	2,805.1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신 규	A - 1	서초동 1365-8,1365-9, 1365-10, 1365-17, 1365-18, 1365-19, 1365-20, 1365-21	2,805.1	공동개발 지정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A-1 공동개발 지정 - 신규 : 서초동 1365-8,1365-9, 1365-10, 1365-17, 1365-18, 1365-19, 1365-20, 1365-21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 지정

4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 용도

구분	도면표시번호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1	• 공동주택(주거복합)[주1)]	-
불허용도	A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위락시설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 장례식장	-

구분	도면표시번호	계획내용	비고
권장용도	a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사무소 • 의료시설 중 병원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한함(오피스텔 제외)

2.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 기본용적률 : 680%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최고높이	• 최고높이 80m이하	주변지역 고려한 최고높이 지정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신설)

사업조건 항목			지 침	계획(안)	완화내용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25% 이상 (701.28㎡ 이상)	= 701.28㎡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586.4㎡, 공공건축물 114.88㎡)	기본용적률 680% 부여
건축물 용도	비주거비율		• 10% 이상 ~ 20% 미만 (지상 1층 비주거설치 의무)	• 주거:비주거 = 80.01:19.99 • 공공임대:민간임대 = 25.49%:74.51% (135세대:335세대)	
	주거	주거비율	• 80% 초과 90% 이하		
		공공임대: 민간임대	• 25 : 75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 공공임대주택 : 전용 17.9㎡, 전용 26.9㎡ • 민간임대주택 : 전용 26.9㎡, 전용 39.9㎡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리모델리이 쉬운 구조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구분	상한용적률 산정식	비고
신설	•기본용적률 x (1+1.3x가중치xα) - α = 순부담 공공시설부지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 순부담 공공시설부지 면적 : 공공기여 의무비율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부지 면적 - 가중치 : 공공시설제공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남부순환로변 : 3m • 6m도로변 : 1m	
차량출입불허구간	• 남부순환로(40m)변 일부	

Ⅳ.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구 고 시

◈ 광진구고시 제2017-78호

도시관리계획(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1호(2012.05.03)로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광진구 능동 222-2호 등 2필지 지구단위계획(공동개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광 진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광진구 능동 222-2호 등 2필지 단독개발을 공동개발 계획으로 변경하여 합리적 토지 이용 및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2.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가구 및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필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E	능 동 222- 2호	302.5	• 단독개발
		능 동 222-15호	360.1	• 단독개발
변경		능 동 222- 2호	302.5	• 공동개발지정: 222-15
		능 동 222-15호	360.1	• 공동개발지정: 222- 2

3. 관계도면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450-768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군자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기 정	변 경

◈ 성북구고시 제2017-107호

도시관리계획(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3호(2013.11.28)로 결정고시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본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재생디자인과(☏2241-277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3일
성 북 구 청 장

가. 변경 취지 :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에 의거 필지분할 및 획지계획 변경하는 사항임

나. 도시관리계획(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1) 필지분할 및 획지계획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면적	성북동 330-139 : 3,352㎡	성북동 330-139-1 : 660㎡	옹벽의 구조, 교통의 진출입 및 건축 등 종합적인 사항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성북동 330-139-2 : 712㎡	
		성북동 330-139-3 : 660㎡	
		성북동 330-139-4 : 660㎡	
		성북동 330-139-5 : 660㎡	

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 경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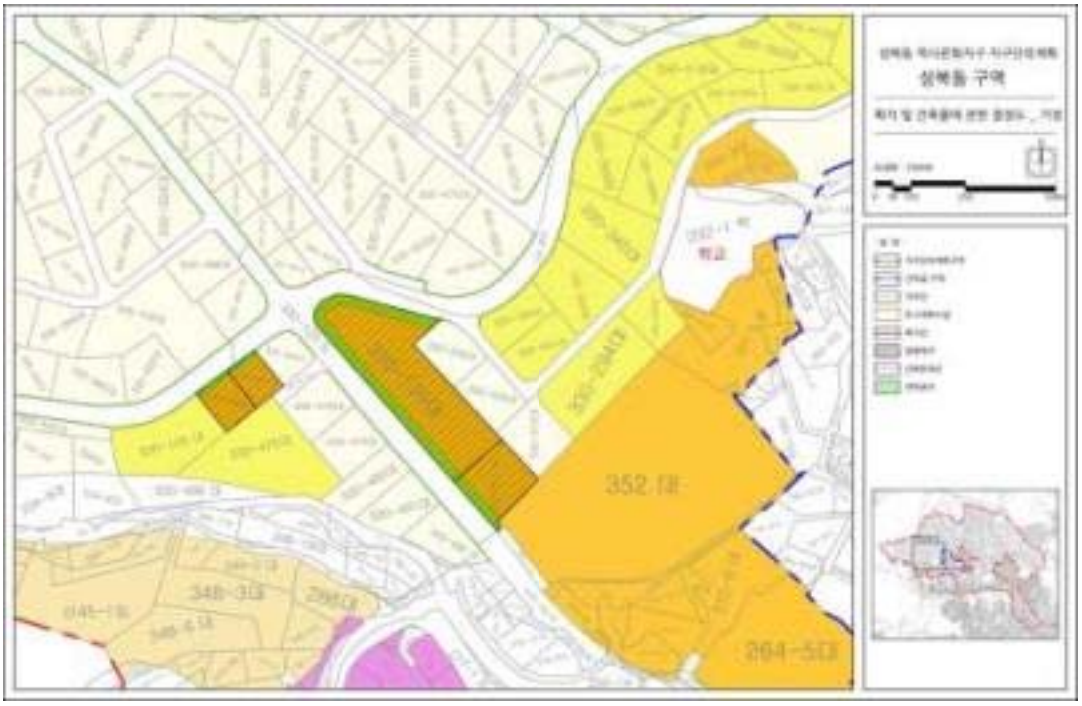

[변 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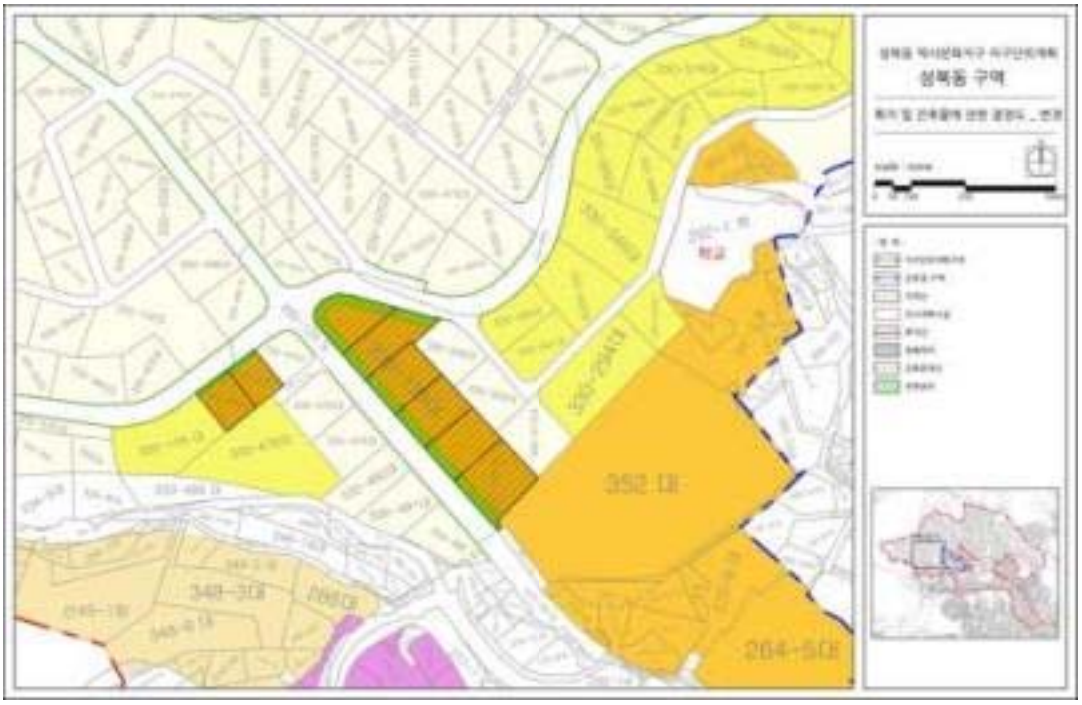

◈ 성북구고시 제2017-108호

도시관리계획(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3호(2013.11.28)로 결정고시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본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재생디자인과(☏2241-277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3일
성 북 구 청 장

가. 변경 취지 : 사적 10호 한양도성 경관개선과 탐방로에 대한 장기계획을 위하여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하는 사항임

나. 도시관리계획(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③	공공공지	성북동 113-60 일대	-	증) 57	57	-	한양도성변
신설	④	공공공지	성북동 113-72	-	증) 142	142	-	한양도성변
신설	⑤	공공공지	성북동 113-21 일대	-	증) 482	482	-	한양도성변

※ 사유재산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

다. 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신설	공공공지	신설 57 ㎡ 신설 142 ㎡ 신설 482 ㎡	본 부지는 사적 제10호 한양도성 인접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체계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유적 보호 · 유지 · 관리에 기여하며, 한양도성 경관개선과 탐방로에 대한 장기계획을 하기 위하여 금회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하고자 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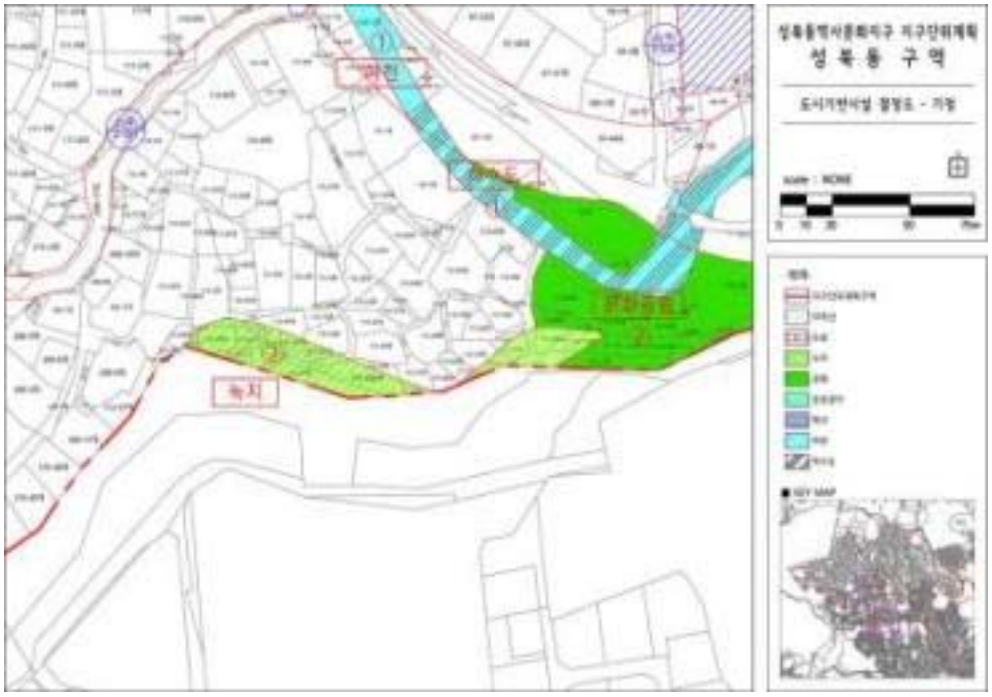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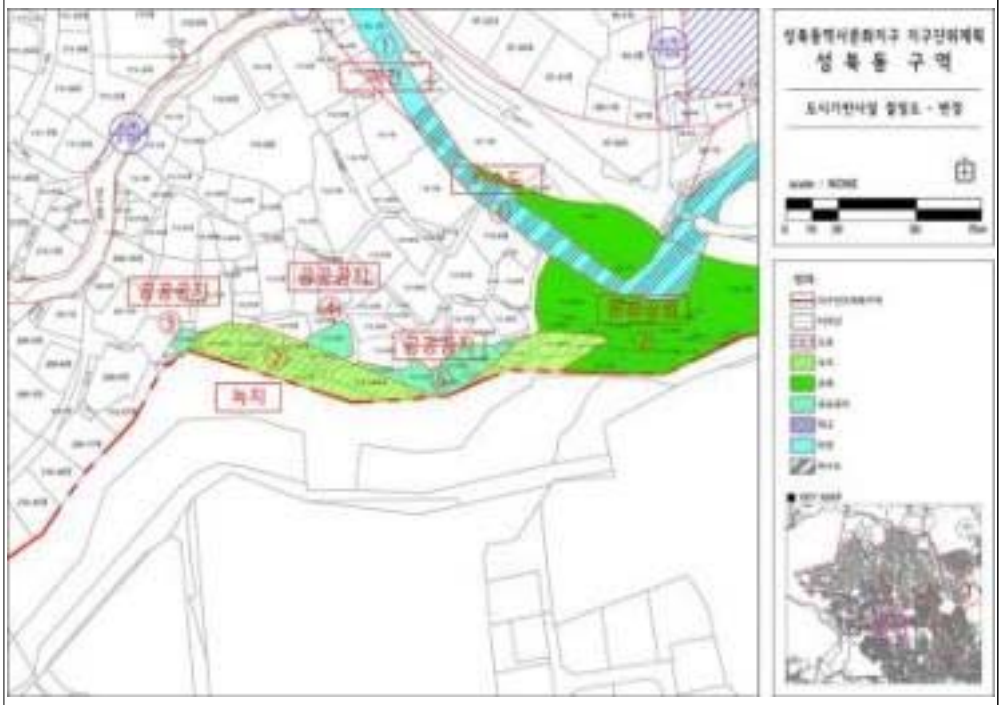

○ 해당필지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면적(㎡)
1	성북동 113-21	대	36	36
2	성북동 113-22	대	122	122
3	성북동 113-24	대	60	60
4	성북동 113-25	대	33	33
5	성북동 113-26	대	76	76
6	성북동 113-27	대	102	102
7	성북동 113-74	대	53	53
8	성북동 113-72	대	142	142
9	성북동 113-60	대	56	56
10	성북동 113-61	대	1	1

◈ 성북구고시 제2017-10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15호(1995.11.2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0-61호(2010.7.15.)로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1-2호 일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성 북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학교	대학(고려대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	성북구 정릉동 산1-2일대	36,611	감) 133	36,478	서고시 제1995-315호 (1995.11.24.)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변경	학교	○ 시설결정면적 - 기 정 : 36,611㎡ - 변 경 : 감)133㎡ - 변경후 : 36,478㎡	○ 학교법인 소유의 정릉동 산1-366 토지가 소유권이전 등기소송 결과 소유권이전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에 포함된 해당 부지(133㎡)를 해제하고자 함	

다. 건축물의 범위 결정 조서 〔변경없음〕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m)		건 축 제 한 완 화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30이하	30이하	120이하	120이하	5층이하	5층이하	-	

라. 지형도면의 작성

○ 성북구 마을재생기획단 도재생디자인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마.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성북구 도시재생디자인과(☎ 2241-276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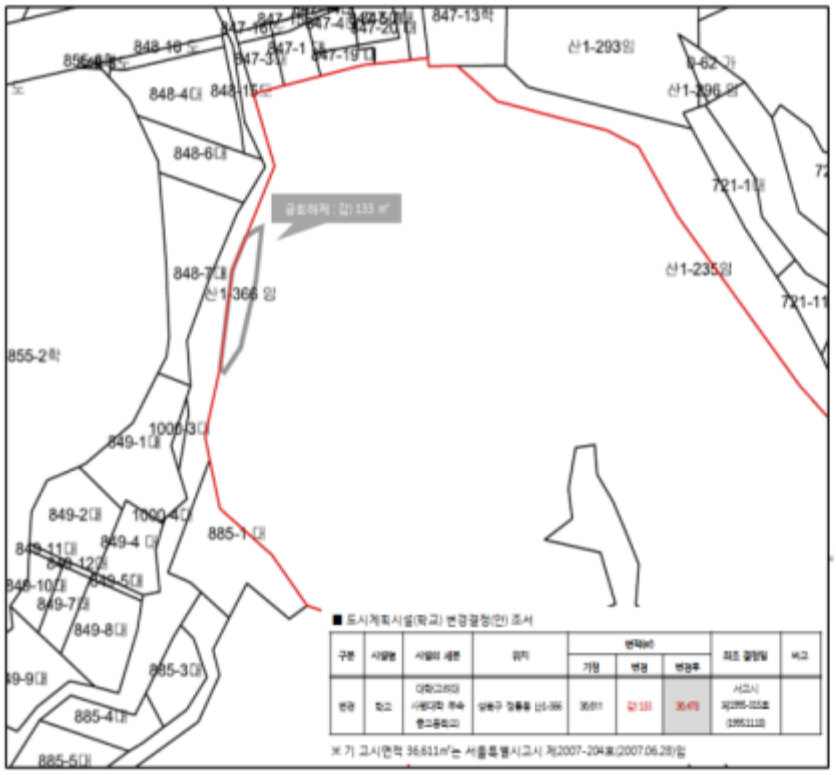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기 정 도

범 례

지 적 선

결정 고시선

공화해제 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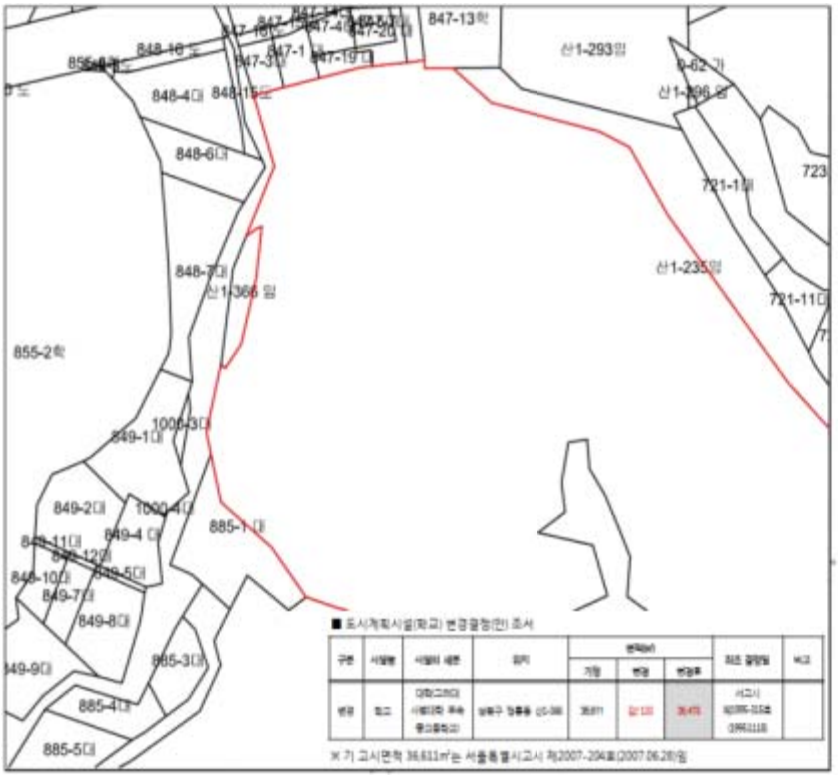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변 경 도

범 례

지 적 선

결정 고시선

◈ 도봉구고시 제2017-92호

도시계획시설[둘리(쌍문)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08.06.)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2호(2017.01.2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17-24호(2017.03.02.)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둘리(쌍문)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2091-37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3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산238-1 등 3필지
나. 사업시행자 (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변경 없음)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둘리(쌍문)근린공원 조성
라. 사업의 내용 및 규모(변경)
- 면 적 : 기정 22,651㎡
변경 9,286㎡
- 내 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의 보상
마. 사업기간 (변경 없음) : 실시계획 인가일 ~ 2019.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변경) : 따로 붙임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2091-3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변경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성명	이해관계인 주소	이해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합계	기정				22,651							
	변경				9,286							
1	기정	쌍문동 산238-1	임야	3,463	3,463	홍성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 , 12동 504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변경	쌍문동 산238-1	임야	1,733	1,733	홍성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 , 12동 504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	기정	쌍문동 산249	임야	13,785	13,785	박정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80길 6-23, 102동 702호(도봉동, 동아에코빌아파트)	1/3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도산로지점)	근저당권	
						이은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50길 50 , 211동 203호 (고덕동,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	1/3				
						임영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소래비로 416번길 118	1/3				
	변경	쌍문동 산249	임야	6,297	6,297	박정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80길 6-23, 102동 702호(도봉동, 동아에코빌아파트)	1/3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도산로지점)		
						이은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 리로 130,401동 206호 (답십리동,래미안위브아파트)	1/3				
						임영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소래비로 416번길 118	1/3	더케이저축은행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3(역삼동)	근저당권	
3	기정	방학동 산90-3	임야	5,403	5,403	전제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79 , 504-201 (상현동, 만현마을 5단지 아이파크)					
	변경	방학동 산90-3	임야	1,256	1,256	전제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79 , 504-201 (상현동, 만현마을 5단지 아이파크)					

◈ 노원구고시 제2017-81호

수락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70호(2013.3.14)로 결정 고시된 수락지구단위계획내 대지의 교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및 수락지구단위 민간부문지침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경미한 사항)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노 원 구 청 장

1. 변경취지
수락지구단위계획구역내 상계동 1119-16번지, 1119-22번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대지의 교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사항임

2. 수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내용

구역명	기 정		변 경		비고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수락	상계동 1119-16	366	상계동 1119-16	356	상계동 1119-16호에서 20㎡을 분할하여 상계동 1119-22호의 분할면적과 교환 후 합병
	상계동 1119-22	107	상계동 1119-22	117	상계동 1119-22호에서 10㎡을 분할하여 상계동 1119-16호의 분할면적과 교환 후 합병

※ 첨부된 지형도면[지구단위계획결정도(기정·변경)]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노원구청 도시관리과(☎2116-386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기 정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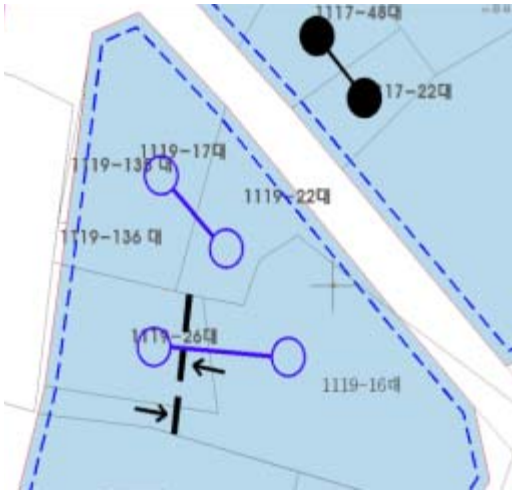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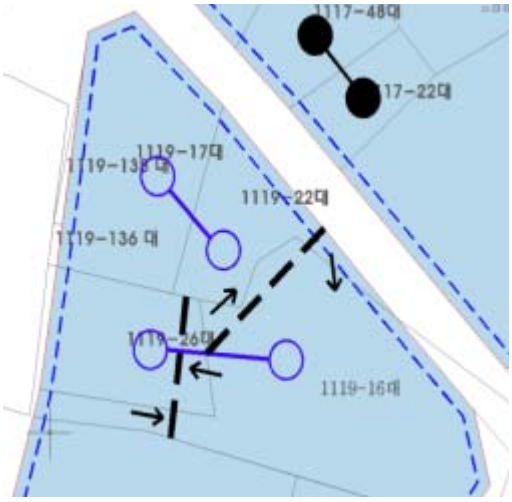

◈ 은평구고시 제2017-81호

도시관리계획(불광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07.05.)로 구역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05호(2001.06.25.)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3호(2011.04.28.)로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변경(재정비) 결정된 불광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공동개발)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별표4 제3호 라목 규정에 따라 정정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은 평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 결정조서 내용 상 공동개발 조서 면적과 공부(토지대장)면적이 상이한 토지(불광동 274-3)와,
- ○ 불광동 276-46(공공용지-구거) 내 필지분할가능선 지적측량 결과, 조서 상 면적과 상이한 부분을 올바로 표기하기 위하여 정정고시 하는 사항임.

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면적 정정)

구분	가구번호	위 치		지목	면적(㎡)	공동개발면적(㎡)	비 고
기정	A	불광동	274-3	대	105	157	공동개발 권장
			274-4	대	30		
			276-46	구거	22		
		불광동	274-7	대	202	243	공동개발 권장
			276-46	구거	41		
		불광동	274-10	대	195	1,255	공동개발 지정 : 274-10, 274-12, 276-34, 276-35 공동개발 권장 : 274-11, 274-12, 274-19, 276-46
			274-12	대	245		
			276-34	대	27		
			276-35	대	19		
			274-11	대	730		
			274-19	대	23		
			276-46	구거	16		
변경	A	불광동	274-3	대	104	147	공동개발 권장 ※ 274-3 공부(토지대장)상 면적과 상이 (105㎡ → 104㎡)
			274-4	대	30		
			276-46	구거	13		
		불광동	274-7	대	202	238	공동개발 권장
			276-46	구거	36		
		불광동	274-10	대	195	1,256	공동개발 지정 : 274-10, 274-12, 276-35 공동개발 권장 : 274-11, 274-12, 274-19, 276-46 ※ 274-12, 276-34 토지합병 ('11.03.30.) - 272㎡
			274-12	대	272㎡		
			276-35	대	19		
			274-11	대	730		
			274-19	대	23		
			276-46	구거	17		
		불광동	276-46	구거	13	-	자율적 공동개발

다.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불광동 274-12, 276-34 토지합병 사항 반영)

기 정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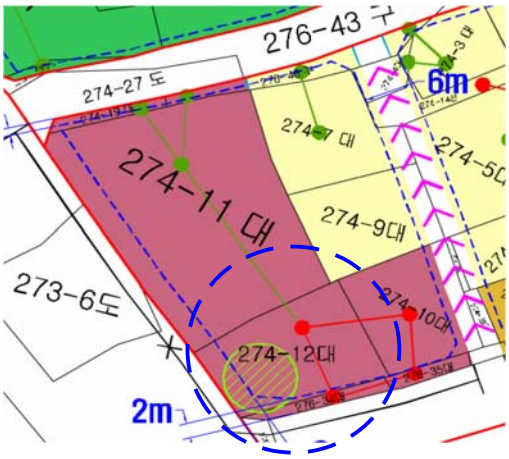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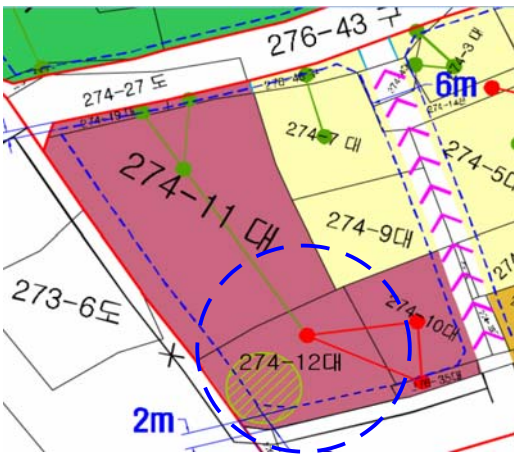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 변경내용 없음

마.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12, 741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서대문구고시 제2017-116호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2181호(1966.2.5.)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78호(2015. 3.19.)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된 백련근린공원과 관련하여,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7-773호(2017.7.20.)로 실시계획 열람공고된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기 보입니다.

2017년 8월 3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26-164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 사업

2) 사업의 명칭 : 백련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 1,90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대문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18.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조서참조
사. 사업의 주요내용 : 공원용지 보상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330-190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지적 (㎡)	편입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홍은동 산26-164	학	7,181	1,900	학교법인 명지학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2길 37	-	-	-	

◈ 서대문구고시 제2017-117호

도시계획시설(경의제2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서울시고시 제429호(1978.8.26.)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17-738호(2017.7.7.)로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된 도시계획시설(경의제2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3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2) 사업의 명칭 : 경의제2녹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 당 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2 등 32필지
○ 변 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5-5 등 4필지
다. 사업의 규모(면적)
○ 당초 : 5,000㎡ ○ 변경 : 158.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18.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없음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330-17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및 건축물 조서

□ 토지 현황 : (변경 전) 32필지 5,000㎡ → (변경 후) 4필지 158.7㎡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의권리내용
				변경전	변경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5-5	대	9.9	9.9	9.9	박영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24, 브라운스톤금호 102-1401			
2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5	대	28.8	28.8	28.8	박영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24, 브라운스톤금호 102-1401			
3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4-2	구	40.7	40.7	0	국토교통부				
4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5-3	도로	13.2	13.2	0	기획재정부				
5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5-4	대	36.7	36.7	0	기획재정부				
6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4	대	40	40	0	기획재정부				
7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9	도로	75	66	66	구유지				
8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9-24	도로	79.9	54	54	시유지				
9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2	도로	174.9	71.88	0	국토교통부				
10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2	철	5,961	3,468.18	0	국토교통부				
11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85	철	30.7	7.7	0	국토교통부				
12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84	철	91.9	91.9	0	국토교통부				
13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83	철	80.7	80.7	0	국토교통부				
14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82	철	57.5	57.5	0	국토교통부				
15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81	철	55.2	55.2	0	국토교통부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의권리내용
				변경전	변경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6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80	철	48.6	48.6	0	국토교통부				
17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79	철	36.4	36.4	0	국토교통부				
18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78	철	43	43	0	국토교통부				
19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77	철	53.9	53.9	0	국토교통부				
20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76	철	82	82	0	국토교통부				
21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75	철	37.4	37.4	0	국토교통부				
22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74	철	6	6	0	국토교통부				
23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73	철	7.9	7.9	0	국토교통부				
24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72	철	51.9	51.9	0	국토교통부				
25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9-26	구	59.7	5	0	시유지				
26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9-23	철	47.1	10	0	시유지				
27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0-3	철	939.2	383.54	0	국토교통부				
28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0-9	철	42.6	42.6	0	국토교통부				
29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0-8	철	35.7	35.7	0	국토교통부				
30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0-7	철	15.9	15.9	0	국토교통부				
31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0-6	철	14.2	14.2	0	국토교통부				
32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0-5	철	3.6	3.6	0	국토교통부				

□ 건물(지장물) 현황 : (변경 전) 6동 → (변경 후) 2동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실제이용상황	건축물관리 대장면적 (㎡)	현황측량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변경			변경내용	비고
							성 명 (변경전→변경후)	주 소 (변경전→변경후)	성명	주소	권리의 내용		
1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8-11	주택/점포	목조	주택/ 점포(공감)	32.23	69.5	권용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0다길 72 (삼선동1가)	김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99-4	세입자 (점포)	보상대상에서 제외	
		장독대	콘크리트	장독대	-	12							
2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5-5	점포 (횟집)	세멘조	점포 (자갈치횟집)	39.6696	110.6	신문대 → **박영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17번길 28, 202호(내유동, 용진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24, 브라운스톤금호 102-1401**	양금순	서울특별시서 대문구 충정로3가 155-5	세입자 (점포)	소유자 변경	
3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2	점포 (분식집)	세멘조	점포 (철길떡볶이)	-	39.7	허덕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2				변경없음	
4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2	점포 (철물점)	목조	점포 (신성종합상사)	49.587	67.9	홍준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965, 1513호 (다가동, 아트빌아파트)	신진철	서울특별시서 대문구 충정로3가 120-2	세입자 (점포)	보상대상에서 제외	
5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2	점포 (고물상)	목조	점포 (고물상)	79.3392	(미측량)	최진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0번지	오성철	서울특별시서 대문구 충정로3가 120-2	세입자 (점포)	보상대상에서 제외	
6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2	가건물 (주차관리)	콘테이너	가건물 (주차관리)	-	3.2	동아 일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보상대상에서 제외	

□ 영업권조서 : (변경 전) 6개소→ (변경 후) 2개소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상호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변경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1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8-11	영업권	공감	점포 (음식점)	김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99-4	보상대상에서 제외	
2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5-5	영업권	세멘조	점포 (음식점)	양금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5-5	변경없음	
3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2	영업권	세멘조	점포 (음식점)	허덕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2	변경없음	
4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2	영업권	목조	점포 (철물점)	신진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2	보상대상에서 제외	
5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2	영업권	목조	점포 (고물상)	오성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2	보상대상에서 제외	
6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0-2	영업권	콘테이너	가건물 (주차관리)	동아일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보상대상에서 제외	

◈ 강서구고시 제2017-58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2호(2016.3.31)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되고, 「건축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협의 처리 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 의제처리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980-27,15,28,30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 명 칭 : 서울강서경찰서 신축공사

다. 사업의 규모

구분	내용	비고
대지면적	7,352.8㎡	
건축면적	2,933.52㎡	
건축연면적	20,183.39㎡	
용적률	168.16%	
건폐율	39.90%	
규모	지하2층, 지상8층(3개동)	
주차계획	205대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주소
경찰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마. 사업기간 : 2017. 6. ~ 2019. 5.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권·권리권자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리청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화곡동 980-27,15,28,30	대	7,352.8	국		경찰청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타 관계도서 : 강서구청 건축과(☎ 2600-6865)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강서구고시 제2017-69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6호(2000.02.11)로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강 서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조서

위 치	지목	면적(㎡)	내 용	
			기정	변경
		543.0		
공항동 45-14	대지	152.0	공동개발	공동개발
공항동 45-15	대지	106.0		
공항동 45-71	대지	56.0		
공항동 45-69	대지	60.0	단독개발	
공항동 45-70	대지	116.0	단독개발	
공항동 45-110	대지	53.0	단독개발	

2.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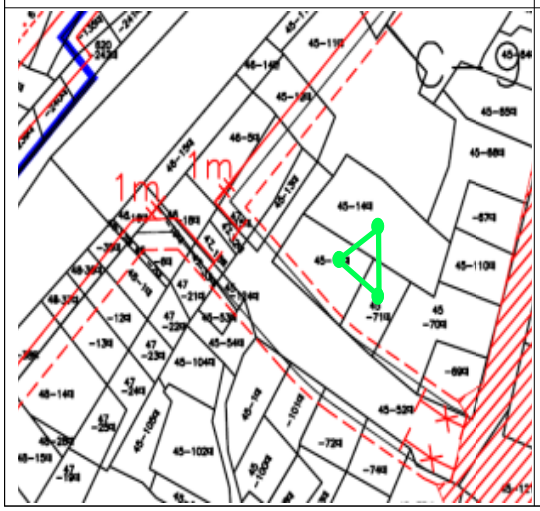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서구 도시계획과(☏ 2600-638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강서구고시 제2017-7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22호(2006.12.14.)로 결정된 강서구 까치산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강 서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 획지단위 공동개발(변경)

가구번호	지번	면적(㎡)	내용		비 고
			기정	변경	
C3 (화곡동)	343-51대	385.8	획지	획지	획지단위 공동개발 해제
	343-50대	331.9		-	

○ 공동개발(변경)

가구번호	지번	면적(㎡)	내용		비 고
			기정	변경	
C3 (화곡동)	343-77대	152.1	공동개발	공동개발	획지단위 공동개발 해제에 따른 맹지화 해소
	343-49대(분)	151.7			
	343-49대(분)	0.7		공동개발	
	343-50대	331.9	-		

2. 지구단위계획결정도(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서구 도시계획과(☏ 02-2600-665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강서구고시 제2017-72호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7호(2013.11.21)로 결정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강 서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조서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변경 결정 조서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등촌동	505-13	150.1	공동개발(지정)	단독개발	
	505-14	10.6		공동개발(권장)	
	505-1	312.7	획지	획지	
	505-2	2,733.8			

2.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84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관악구고시 제2017-55호

도시관리계획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1호(2015.4.30.) 및 제2017-181호(2017.5.25.)로 결정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중 토지분할 및 획지계획 변경(공동개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관 악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림동 1431-30호 외 2필지의 토지분할 및 획지계획 변경(공동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table>
<tr><th colspan="4">기 정</th><th colspan="4">변경(안)</th><th rowspan="2">비고</th></tr>
<tr><th>대지위치</th><th>면적(㎡)</th><th colspan="2">획지계획</th><th colspan="2">대지위치</th><th>면적(㎡)</th><th>획지계획</th></tr>
<tr><td rowspan="2">신림동 1431-30대</td><td rowspan="2">281.0</td><td rowspan="4">공동개발(지정)</td><td rowspan="5">권장</td><td>신림동 1431-30대(ㄱ)</td><td>228.1</td><td rowspan="2">243.3</td><td rowspan="2">단독개발</td><td rowspan="4">대지분할 가능선</td></tr>
<tr><td>신림동 1431-32대(ㄴ)</td><td>15.2</td></tr>
<tr><td rowspan="2">신림동 1431-32대</td><td rowspan="2">239.4</td><td>신림동 1431-32대(ㄱ)</td><td>224.2</td><td rowspan="2">277.1</td><td rowspan="2">단독개발</td></tr>
<tr><td>신림동 1431-30대(ㄴ)</td><td>52.9</td></tr>
<tr><td>신림동 1431-33대</td><td>107.8</td><td>-</td><td colspan="2">신림동 1431-33대</td><td>107.8</td><td>단독개발</td><td></td></tr>
</table>

3. 지형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세부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5. 열람 및 열람 장소
○ 세부내용은 관악구 도시계획과(☎02-879-6361)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시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신림동 1431-30, -32, -33호]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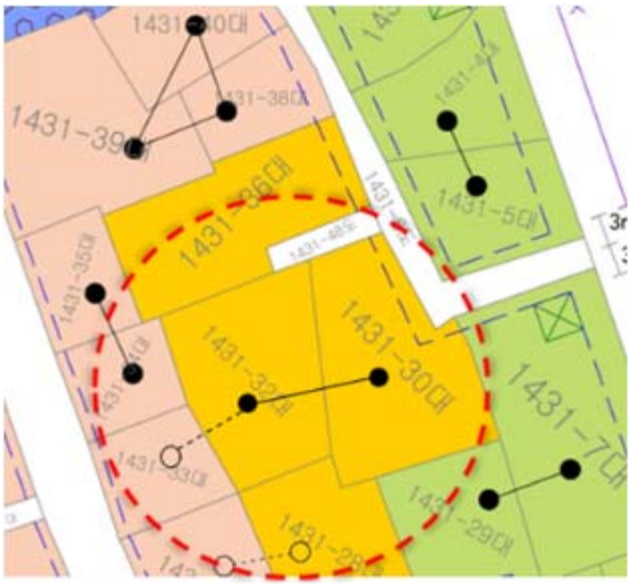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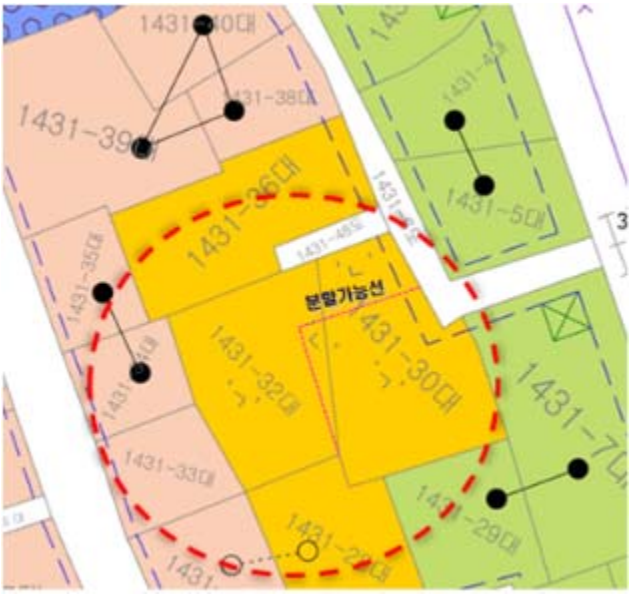

◈ 관악구고시 제2017-56호

도시관리계획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1호(2015.4.30.) 및 제2017-181호(2017.5.25.)로 결정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중 획지계획 변경(공동개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관 악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림동 1421-43호 외 2필지의 획지계획 변경(공동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경(안)			비고
대지위치	면적(㎡)	획지계획		대지위치	면적(㎡)	획지계획	
신림동 1421-43대	143.5	공동개발 (지정)	권장	신림동 1421-43대	143.5	단독개발	
신림동 1421-44대	120.3			신림동 1421-44대	120.3	단독개발	
신림동 1421-42대	130.9	-		신림동 1421-42대	130.9	단독개발	

3. 지형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세부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5. 열람 및 열람 장소
   ○ 세부내용은 관악구 도시계획과(☎02-879-6361)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시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신림동 1421-42, -43, -44호]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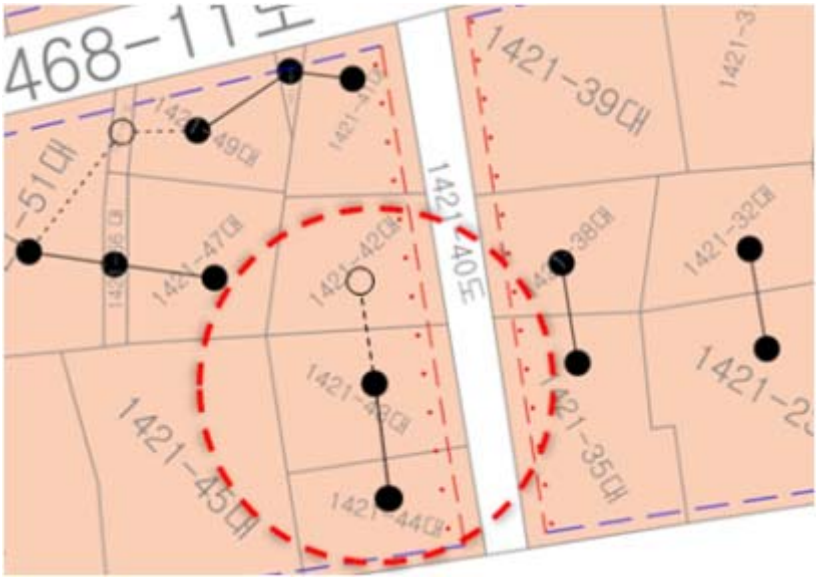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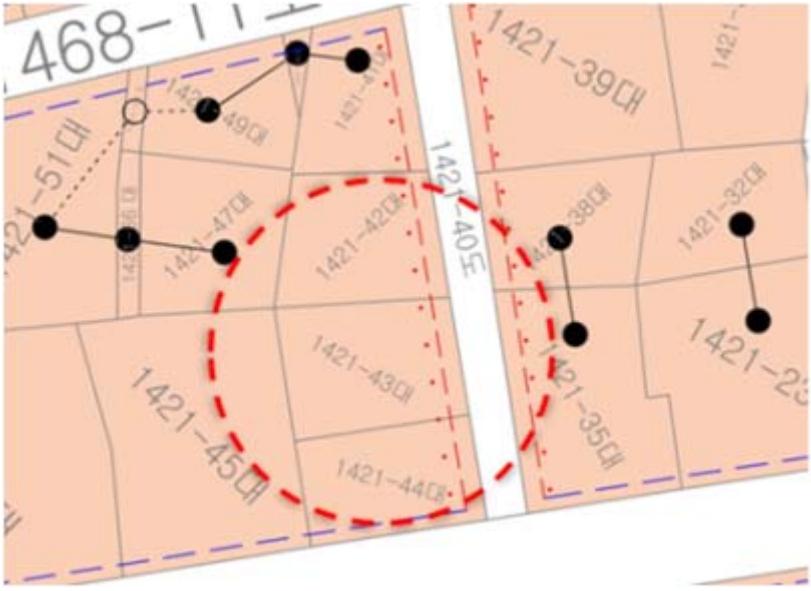

◈ 관악구고시 제2017-57호

도시관리계획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1호(2015.4.30.) 및 제2017-181호(2017.5.25.)로 결정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중 획지계획 변경(공동개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관 악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림동 1433-106호 외 1필지의 획지계획 변경(공동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경(안)			비고
대지위치	면적(㎡)	획지계획	대지위치	면적(㎡)	획지계획	
신림동 1433-105대	138.2	공동개발 (지정)	신림동 1433-105대	138.2	단독개발	
신림동 1433-106대	150.1		신림동 1433-106대	150.1	단독개발	

3. 지형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세부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5. 열람 및 열람 장소
   ○ 세부내용은 관악구 도시계획과(☎02-879-6361)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시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신림동 1433-105, -106호]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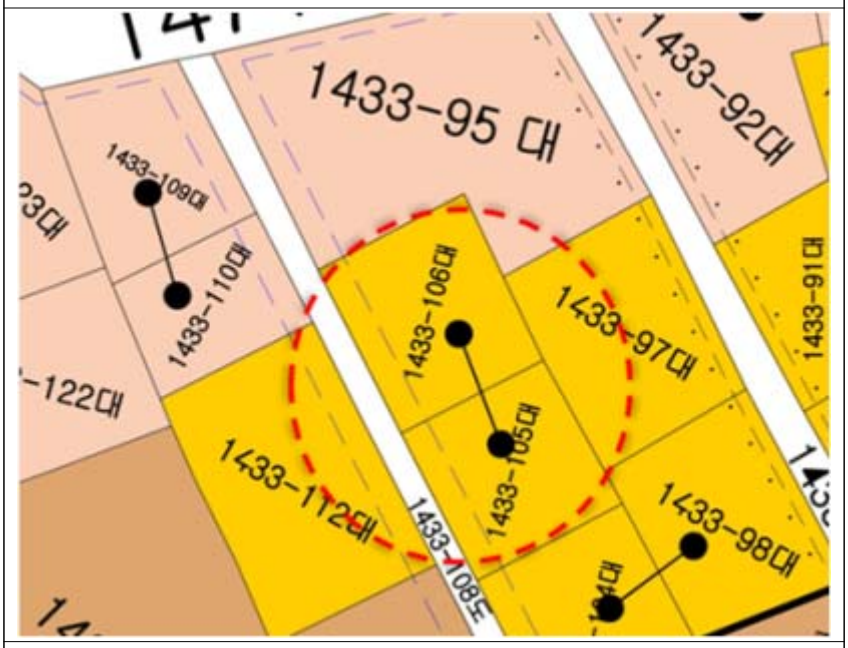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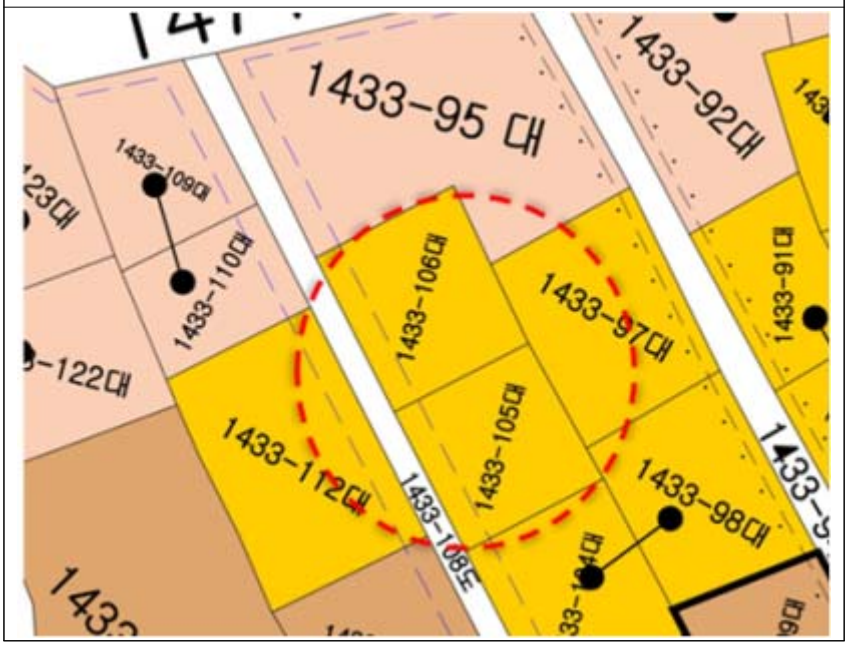

◈ 관악구고시 제2017-58호

도시관리계획 [서울대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89호(2008.8.28.)로 결정된 「서울대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중 획지계획 변경(공동개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관 악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서울대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림동 246-52호 외 1필지의 획지계획 변경(공동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서울대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비고
지번	면적(㎡)	획지계획	지번	면적(㎡)	획지계획	
신림동 246-52호	172	공동개발 (지정)	신림동 246-52호	172	단독개발	
신림동 246-53호	162		신림동 246-53호	162	단독개발	

3. 지형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세부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5. 열람 및 열람 장소
   ○ 세부내용은 관악구 도시계획과(☎02-879-6361)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시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신림동 246-52, -53호]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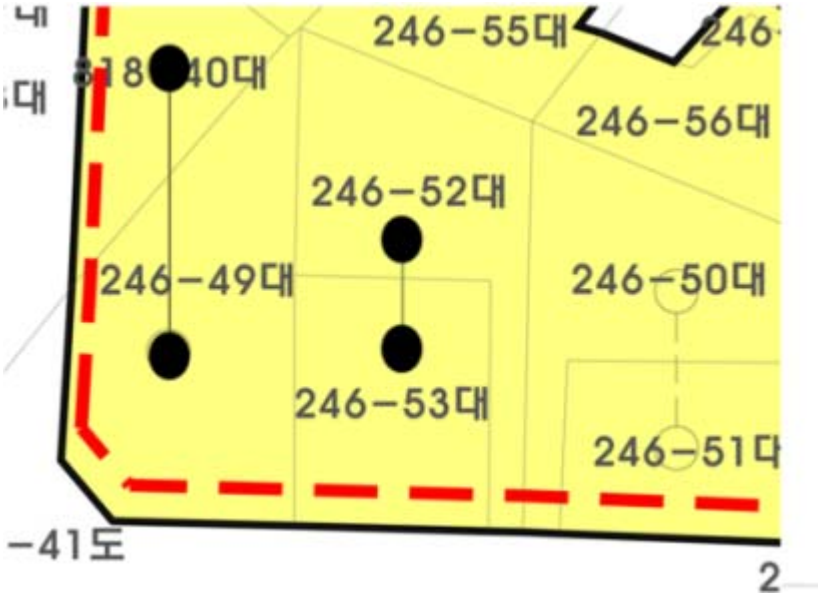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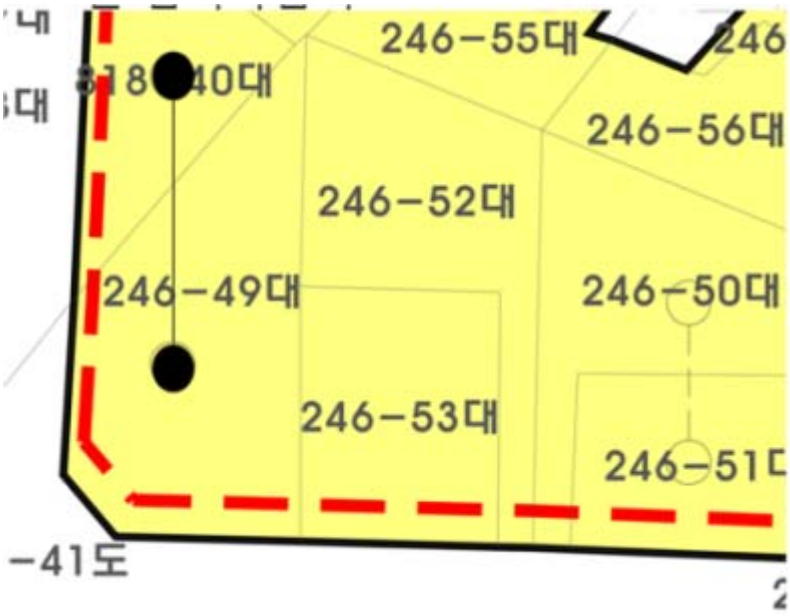

구 공 고

◈ 중구공고 제2017-558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3371호(2016. 9 .22)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지역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3일
중 구 청 장

가. 열람내용
1)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지역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 사업
나) 명 칭 : 서울 중구·종로구지역 전기공급시설(세종로-운니) 사업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가) 규 모 : 터널형 전력구 Φ2.8m×2L : 1.035m, 수직구 1개소(Φ6.6m×H:30.8m)
나) 면 적 : 2,922.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 조환익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7길 5
5) 인가 신청일 : 2017. 7. 19.
6) 인가 신청의 요지 : 서울시 중구, 종로구지역 전력부하급증에 따른 정전예방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
7)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개월 內
나) 준공 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4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따로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습니다)

나. 열람기간 : 2017. 8. 3. ~ 2017. 8. 17.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 중구청 도시관리국 도심재생과(☎3396-575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공사명 :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지역 전기공급시설(세종로-운니) 사업

토지조서 총괄표

1) 지목별 토지조서 총괄표

구 분	계	하 천	도 로	비 고
지적면적(㎡)	40,690.5	3,014.9	37,675.6	
편입면적(㎡)	2,922.8	92.2	2,830.6	
수 직 구(㎡)	62.0	-	62.0	
1 구 간(㎡)	1,725.1	-	1,725.1	
2 구 간(㎡)	1,135.7	92.2	1,043.5	
필 지 수	48필지	2필지	46필지	

2) 소유자별 토지조서 총괄표

구 분	계	국 유 지				사유지	비 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토교통부		
지적면적(㎡)	40,691	29,478.9	819.4	3,853.5	6,538.7		
편입면적(㎡)	2,923	2,478.9	95.6	125.2	223.1		
수 직 구(㎡)	62	19.0	43.0		-		
1 구 간(㎡)	1,725	1,627.5	14.1		83.5		
2 구 간(㎡)	1,136	832.4	38.5	125.2	139.6		
필 지 수	48필지	34필지	3필지	4필지	7필지		

3) 시설별 토지조서 총괄표

구 분	계	도시계획시설(전력공급)	비 고
편입면적(㎡)	2,922.8	2,922.8	
수 직 구(㎡)	62.0	62.0	
1 구 간(㎡)	1,725.1	1,725.1	
2 구 간(㎡)	1,135.7	1,135.7	
필 지 수	48필지	48필지	

◈ 성동구공고 제2017-670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3일
성 동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성동구청 도시계획과 (☎02-2286-5553)
다. 도시관리계획(안)
○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20~23	보조 간선	400	금호동1가 527-1	금호동2가 1006-1	일반 도로	-	서고 254호 (2006.07.20.)	
변경	중로	2	(1)	20~23	보조 간선	470	금호동1가 506-3	금호동2가 1006-1	일반 도로	-	서고 254호 (2006.07.20.)	도로 시점 변경 (L=70m)

▶ 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1)	• 도로 시점 변경 [연장 400m → 470m (증70m)]	• 도로폭 협소한 구간 폭원 확장을 위해 도로 시점 변경

라. 관련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기타 사항
o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안)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 도시계획과(☎02-2286-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최종결정 사항이 아니며, 향후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성북구공고 제2017-973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67.12.18)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56호(2006.7.27)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에 대하여,
2. 조성계획 변경(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3일
성 북 구 청 장

가.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6-259일대(북악산도시자연공원)
나. 공원면적 : 971,719㎡
다. 공원조성계획 변경내용(북악산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26-259일대
- 규 모 : 15,000㎡
- 주요시설 : 청소년 체험시설, 휴게시설, 산책로 등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마.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성북구청 공원녹지과(☏2241-3663)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원구공고 제2017-66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7-63호(2017. 6. 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미리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2. 토지 ·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공고일(시보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 내에 노원구청 토목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3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개요

사업위치	사업의 명칭	사업규모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비고
노원구 상계동 963-28~ 상계동 1035-10	상계동 963-28-1035-10간 도로개설사업	B = 10m L = 60m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7-63호 (2017. 6. 22.)	

다. 사업시행자

○ 성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701-1)

라. 사업 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9.12.31.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바. 공고 방법 : 시보 및 구청 홈페이지

사. 열람공고 기간 : 시보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토목과(전화 2116-4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사업의 명칭 : 상계동 963-28~1035-10간 도로개설사업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실제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1	노원구 상계동 963-28	답	498	359		김연환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1 미주아파트 4동1116호				
2	노원구 상계동 963-5	답	246	178		신동혁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45-14 현대빌라 204호	능서농업협동조합	경기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803-2	근저당권	
						신동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45-14 현대빌라 204호	능서농업협동조합	경기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803-2	지상권	
3	노원구 상계동 1035-10	전	217	137		신동혁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45-14 현대빌라 204호	능서농업협동조합	경기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803-2	근저당권	
						신동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45-14 현대빌라 204호	능서농업협동조합	경기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803-2	지상권	

물 건 조 서

사업명 : 상계동 963-28~1035-10번지간 도로개설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노원구 상계동 963-5	건축물	세멘조	59㎡		윤종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963-5				
2	노원구 상계동 963-5	주차장	철골조	24㎡		윤종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963-5				
3	노원구 상계동 963-28	하우스	철골조/비닐	25㎡		윤종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963-5				
4	노원구 상계동 963-5	창고	철골조	1식		박동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963-5				
5	노원구 상계동 963-5	휀스		1식		박동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963-5				
6	노원구 상계동 963-28	컨테이너		27㎡		안재근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752 광덕아파트 101동102호				
7	노원구 상계동 963-28	간판		5식		안재근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752 광덕아파트 101동102호				
8	노원구 상계동 1035-10	휀스		1식		유재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963-5 한덕자원				

□ 위치도 및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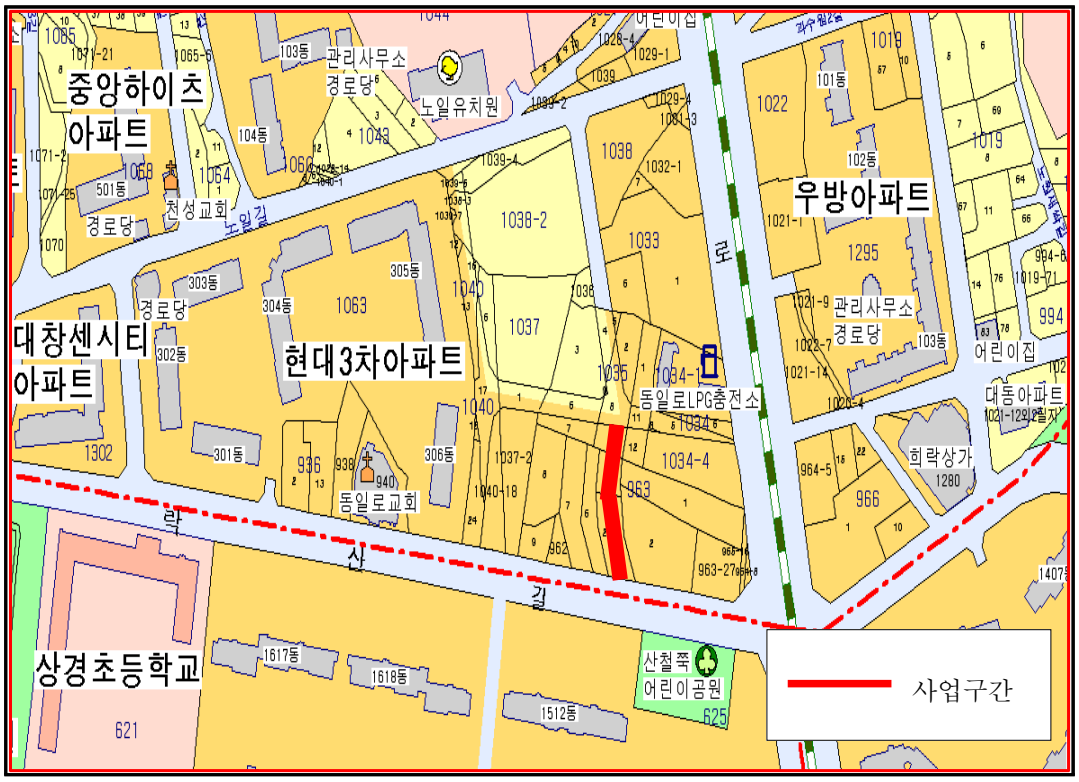
중앙하이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로당
노일유치원
천성교회
노일길
경로당
대창센시티
아파트
현대3차아파트
동일로교회
동일로LPG충전소
우방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대동아파트
희락상가
상경초등학교
산철쭉
어린이공원
사업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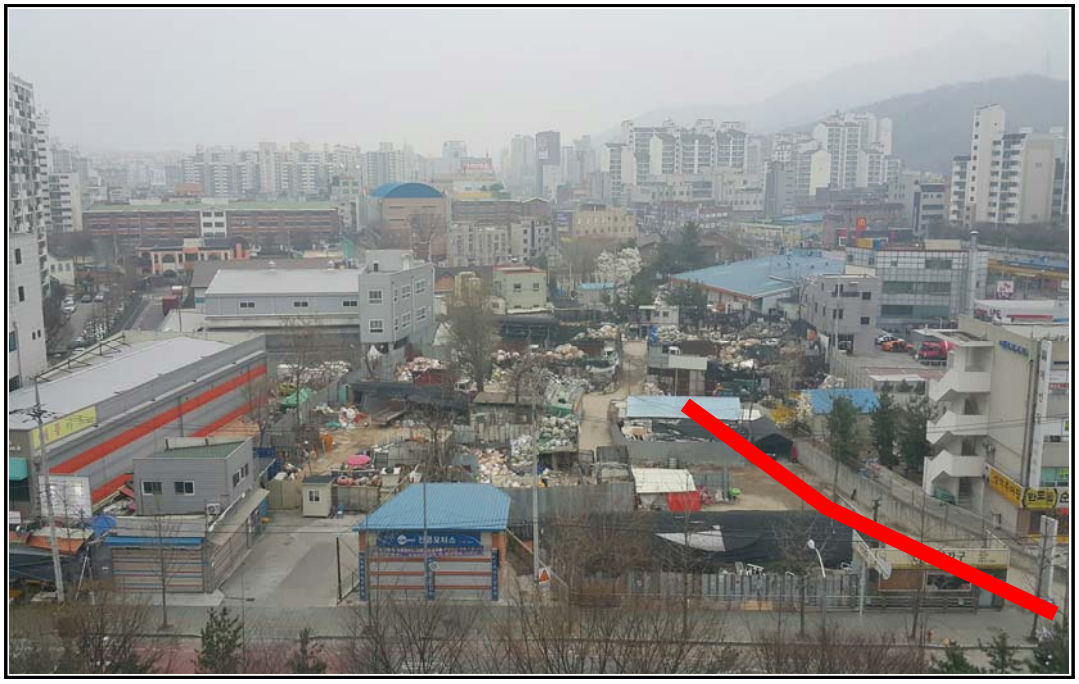

◈ 은평구공고 제2017-97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안) 재열람 공고

1. 은평구공고 제2017-58호(2017.1.19.)로 열람공고한 고양지축 지구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3일
은 평 구 청 장

가. 재열람사유
- 은평구공고 제2017-58호(2017.1.19.)로 열람공고한 고양지축 지구외 도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도로의 기능(주간선도로 → 보조간선도로) 변경
  - 대로3-2호선은 주간선도로(국도1호선)와 지축지구 내 집산도로 및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고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로서 도로의 위계상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함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 도시관리계획(안)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 (m)								
기정	대로	3류	2	25-31	주간선도로	1,178	대로3-1	동측 지구계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1-464호 (2011.08.22.)	
변경	대로	3류	2	25-31	보조간선도로	1,937	대로3-1	대로3-55	일반 도로			· 창릉천(하천2)과 중복결정 · 서울특별시 구간:27m(신설)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사유서 : 변경사항 없음

라.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마.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03)

◈ 양천구공고 제2017-93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조성)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09호(2009.8.13.)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된 온수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실시계획 변경 인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3일
양 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양천구청 공원녹지과(☎02-2620-3574), 양천구청 홈페이지(http://yangcheon.go.kr → 고시·공고)
다.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양천구 신월동 산174-1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온수도시자연공원(시설지구 외) 조성
3) 사업의 규모 :
○ 변경 전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14필지 23,933㎡
○ 변경 후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15필지 24,078㎡
4)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사업 시행자 ┌성 명 : 양천구청장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신정동)
5) 사업 착수 · 준공 예정일
○ 변경 전 : 실시계획 변경인가일로부터 2017. 12. 31까지
○ 변경 후 : 실시계획 변경인가일로부터 2018. 12. 31까지
6) 사용 ·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등의 조서 : 따로 붙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기 정 변 경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지분	소 유 자 성명	소 유 자 주소	이해관계인 성명	이해관계인 주소	비고
1	기 정	신월동	답	227	227		SH공사	강남구 개포동길 621			
	변 경	728-12	답	227	52						
2	기 정 변 경	신월동 728-14	임	144	144		SH공사	강남구 개포동길 621			
3	기 정 변 경	신월동 728	답	98	98		유 겸	미국이주	유진해 유수연	동작구 등용로4길 142	자녀
4	기 정	신정동 728-29	임	2,225	2,225	24/10	유 환	동작구 등용로4길 142			
						24/1	유정혜	용산구 이태원로27길 31-4			
						24/6	유 영	동작구 등용로14길 60			
						24/1	유정선	중구 다산로20길 41			
	변경					24/4	유 겸	미국이주	유진해 유수연	동작구 등용로4길 142	자녀
						24/1	유민화	서초구 사평대로20길 76, 15동301호			
						24/1	유선자	서초구 사평대로12길 55,4A호			
5	기 정 변 경	신월동 728-1	답	1,253	1,253		유정선	중구 다산로20길41(신당동)			
6	기 정	신월동 728-4	임	1,269	1,269	24/10	유 환	동작구 등용로4길 142			
						24/1	유정혜	용산구 이태원로27길 31-4			
						24/6	유 영	동작구 등용로14길 60			
						24/1	유정선	중구 다산로20길 41			
	변 경					24/4	유 겸	미국이주	유진해 유수연	동작구 등용로4길 142	자녀
						24/1	유민화	서초구 사평대로20길 76, 15동301호			
						24/1	유선자	서초구 사평대로12길 55,4A호			
7	기 정	신월동 산174-1	임	1,402	1,402	10/5	원송희	강서구 강서로15길 52			
						10/1	김길완	강서구 등촌로 113,103동1201호			
	변 경					10/2.5	경규홍	양천구 목동중앙서로3길 22,3층			
						10/1.5	유형주	동작구 만양로 26,106동1410호			
8	기 정 변 경	신월동 728-7	임	410	410		합명회사삼하사	동작구 등용로14길 60			
9	기 정 변 경	신월동 728-15	임	1,050	1,050		합명회사삼하사	동작구 등용로14길 60			
10	기 정	신월동	전	-	-		합명회사삼하사	동작구 등용로14길 60			
	변 경	728-16	전	1,027	320						
11	기 정 변 경	신월동 728-31	전	3,177	3,177		합명회사삼하사	동작구 등용로14길 60			
12	기 정 변 경	신월동 728-17	임	1,575	1,575		합명회사삼하사	동작구 등용로14길 60			
13	기 정 변 경	신월동 728-18	임	384	384		합명회사삼하사	동작구 등용로14길 60			
14	기 정	신월동 728-8	임	12,422	3,421		유제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5번길 106,20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압류	
	변 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압류	
									국(동수원 세무서)	압류	
15	기 정 변 경	신정동 1321-11	공원	7,298	7,298		양천구	양천구 목동동로 105			

○ 물건조서

연번	기 정 변 경	지번	지목	물건종류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기정	신월동 728-1	답	토지(임차) 비닐하우수9동,주거용비닐간이공작물1동 관정4개, 경운기4대,관리기2대 물탱크3개,물통2개,자두나무17주,매실나무14주 오디뽕나무 14,대추나무2주,무궁화1주,감나무2주 엄나무2주,단풍나무3주,느릅나무1주,오가피1주,연시감나무1주,보리수3주. 등나무3주, 천도봉숭아나무3주, 꽃사과13주,노지머위1주.바닥아나방철판100개,냉장고10개,동력분무기2대,예초기2개,장독항아리 54개,콘크리트배수로 1조경석16개,평상3개,개집6개,개7마리,거름2.5t 6차분, 수중양수기2대,전선,.화목5ton 10대분, 평조경석1개,보온자재솜54장,차광망10, 원예용분재 5t 3차분,원예용하우스철자재 20t 1식, 고추지추철 500개,이동식화장실1. 재래식용웅덩이 1. 순수레 6개, 양액비료6통,원예용자재1식포장거름150포,하루수내소형철자재1,500개, 육모용트레이 1,000개, 채소박스4,000개, 배수로평석콘크리트및자연석 80개, 원예용항아리90개, 원예용화초및화분5t11차분, 고양이40마리, 물통22개, 양수기8대,열풍기팬1대,콤프레샤1대,창고이전물량5t3차분, 기타이전물량5t7차분,상토분쇄기 1개, 원예용파이트70개, 철판1개,보온솜30롤,왕겨100포,소석회60포,원예용포트3,000개,육묘포트10,000개, 육모판8개,원예용인공토양7포,보온휠타 30개,배추망1,000개,온열판1개,온열선2롤,온열판콘트롤박스1개,온열선콘트롤박스2개,대형선풍기 2대, 고압호스8롤,미생물거름36포,콘크리트배수관4개,배수관3개,바닥고무판8롤,하우스용카페트5롤,	박선규	양천구 신월동 728-1			
		신월동 728-4	임						
	변경	신월동 산174-1	임						
2	기정 변경	신월동 728-31	전	토지(임차),주말농장경작(임대), 비닐하우스3동, 관정2개(모터포함), 넝쿨대1식, 오가피나무6주, 관리기1대, 모과나무1주, 자두나무1주, 전신주3주	유진봉	양천구 신정동 1316 신정이펜하우스 314동 705호			
3	기정 변경	신월동 728-7,15,17,18 신월동 728-31	임 전	느티나무 30주, 은행나무10주	합명회사 삼하사	동작구 등용로14길 60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6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장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계내 한강 (행주대교)	선박 2척	행주대교 보수공사	2017.08.01.~ 2017.08.31.	2017. 7.27.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6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8길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96-119	선박 27척 (기선 9척, 부선 18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2017.08.01. ~ 2017.08.31.	2017. 7.27.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6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도로시설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시계내 한강 (아차산교)	선박 2척	아차산교 보수공사	2017.08.01.~ 2017.10.31.	2017. 07.27.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6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7	강서구 개화동 174-1	선박 2척 (기선1, 부선1)	정박대기	2017.08.01. ~ 2017.08.09.	2017. 07.27.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7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7	강서구 개화동 174-1	선박 2척 (부선 2척)	정박대기	2017.08.01. ~ 2017.08.31.	2017. 07.27.

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41 **문의 : ☎120**